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무연고사와 공영장례

- 서울시 공영장례를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김수지

무연고사와 공영장례

- 서울시 공영장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정 원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김 수 지

김수지의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_____ 김 재 석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강 정 원 _____ (인)

위 원 _____ 김 시 덕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영장례로 무연고사가 기려지는 현황과 맥락 및 의미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2018년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생긴 후 5년째 서울시립승화원에 위치한 빈소에서 치러지는 서울시 공영장례는 전국에서 무연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의 공영장례이며 형식과 체계 면에서 다른 지자체의 공영장례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는 서울시 공영장례 빈소에서의 현장연구와 관계자 및 빈소 방문자들과의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죽음관과 죽음 의례를 포괄하는 죽음 문화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공영장례의 문화적 맥락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영장례 현장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드러내는 공간이자 기존의 혈연 중심 죽음 의례 및 법제도와 새로운 사회관계 및 장례 문화에 대한 지향 간의 긴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서 위치시킨다.

의례를 거치지 않아 사후세계에 안착하지 못한 자의 영혼이 산 자를 해칠 수 있다는 관념은, 조상신으로 승화하지 못했다고 여겨진 고인들을 위한 별도의 죽음 의례로 이어졌다. 조선시대에 정기제로 설행된 여제(厲祭)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때 두려움의 대상은 ‘의례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자(死者)’로, 오늘날 공영장례가 지원되기 이전의 ‘무연고사망자’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공영장례 존립의 근거는 원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죽은 자의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에 의해서든 죽은 자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조로 민간의 실천이 이루어졌고, 이 실천이 제도에 의해 수용되며 공영장례는 체계화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래, 무연고사는 시신 처리에 관한 법적 문제에 국한하여 다루어졌다.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죽음 의례의 부재와 직장(直葬) 관행은 인식조차 되지 않았으며, 2010년대부터 무연고사가 증가하면서 비로소 문제시되었다.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에서는 상장례의 전통성보다도 의례의 수행 그

자체가 중요해지며 ‘창안된’ 의례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장례식과 달리 서울시 공영장례는 3시간가량 소요되며, 고인 예식과 운구 후 종교 예식, 화장 및 산골 혹은 봉안의 과정이 합동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영장례에는 관계자 외에도 자원봉사자와 요일별 종교봉사자들이 함께하곤 한다. 이로 인해 공영장례 현장에는 여러 종교적 특성이 혼재하기도 하며, 고인과 생전 인연이 없던 자원봉사자가 상주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영장례 고유의 특성들이 생긴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지만 주로 무연고사망자를 기리게 된다. 무연고사망자라는 범주는 법률혼과 혈연관계 중심의 ‘연고자’ 개념에 의해 파생된다. 무연고사는 시신을 인수할 친족 여부 및 이들의 시신 인수 의향을 행정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확정된다. 이 때문에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사망 후 최소 14일가량의 시간 동안 장례식장에서 안치되며,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의 경계성(liminality)은 증폭된다. 장사법 상의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는 경우 무연고사망자가 되며, 장사법 상의 연고자가 아닌 이들은 직접 장례를 치르고 싶더라도 고인을 무연고사망자로 보내야 했다. 장례를 가족이 치러야 한다는 당위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규범으로 공영장례의 제도화 이후에도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한국의 친족 구조인 종족조직이 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 집단이라는 점에서부터 유래하며, 근대 이후 죽음 문화의 변동과 사회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계승되어 공영장례의 확대를 우려하는 입장의 기저가 된다. 공영장례는, 가족에 의해서건 아니건 그 누구라도 죽음의 국면에서 의례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성립된 만큼 죽음 의례의 새로운 가치를 체현하며 사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례가 지닌 힘을 증명해 낸다.

서울시에서 공영장례 조례가 생기기 이전부터, 누구나 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논하며 공영장례의 제도화와 장례복지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온 비영리 단체의 지향은 구체적으로 빈소의 운영 방식에 반영되어 왔다. 기존 장사법이 규정하는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연고자 개념이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한 검토와 개정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영장례는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죽음 의례의 부재라는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도인 동시에, 장사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면서도, 이의 시정과 변화를 확인시키는 역동적인 현장이다.

공영장례 현장에는 공영장례로 기려지는 이들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영정사진이 빈소에 놓이는 경우는 드물고 고인의 생전 내력 역시 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영장례의 지향은 무연고사망자들을 개별자로서 추모하는 것임에도 고인과 생전 인연이 없는 이들은 개체로서 고인을 마주하기보다 죽음 혹은 무연고사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고인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참석하는 경우 공영장례 현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 간의 연대 의식과 상호부조가 드러나는 곳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공영장례는 종족 이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념을 주조하고 이를 드러내는 죽음 의례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관계의 변화는 ‘체계가 승인하는 관계망’에 의해서만 성립 가능한 장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장례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공영장례는 죽음 문화의 변화를 드러내고 추동하는 현장으로서 자리매김한다.

주요어 : 무연고사, 공영장례, 죽음 의례, 죽음 문화

학 번 : 2021-21531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7
1. 죽음 의례와 문화	8
2. 무연고사망자 및 공영장례	16
3. 논문의 구성	21
제 3 절 연구대상 및 방법	23
제 2 장 죽음관 및 죽음 의례와 무연고사	27
제 1 절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의 조건들	28
제 2 절 소외된 망자를 위한 의례	34
제 3 절 관리의 대상이 된 무연고사	40
제 3 장 공영장례 현장에서의 죽음 의례 실천 양상 44	
제 1 절 공영장례를 구성하는 현실	45
1. 서울시 ‘그리다’ 빈소	45
2. ‘무연고’라는 범주와 공영장례	65
3. 빈소 바깥의 현장들	76
1) 시신이 안치되는 장례식장	77
2) 다른 현장에서의 추모	82
3)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86
제 2 절 공영장례 현장의 특성	90
1. 공영장례를 구성하는 요소들	90
2. 리미널(liminal)함이 증폭되는 무연고사망자의 몸	99
3. 공영장례에서 드러나는 체계와 의례의 특징들	106

제 4 장 공영장례와 죽음 문화	113
제 1 절 사회관계와 죽음 문화의 재구성	114
1. 공영장례와 새로운 죽음 문화	114
2. 공영장례 현장에 존재하는 다른 입장들	118
제 2 절 공영장례의 표상	126
1. 개별성이 약화된 존재로서의 무연고사망자	126
2. 공영장례가 그려내는 사회관계	130
제 5 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2
Abstract	146

그림 목 차

[그림 1] 제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15
[그림 2] 서울시립승화원 1층에 있는 ‘그리다’ 빈소 표지판	51
[그림 3] 빈소 앞 ‘그리다’ 빈소에 대한 안내 입간판 및 현판 ...	51
[그림 4] ‘그리다’ 빈소에 대한 안내 현판	52
[그림 5] 1365 자원봉사포털에 게재된 장례절차에 대한 안내 사진	
54	
[그림 6] 서울시 공영장례 빈소 안 전경	57
[그림 7] 빈소 뒷벽에 붙어 있는 고인에게 보내는 인사의 글들	
58	
[그림 8] 승화원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위치한 유택동산	
61	
[그림 9] 산골 전 유택동산에 놓인 위패와 유골함	61
[그림 10] 유택동산에서 산골이 이루어지는 모습	63
[그림 11] 시신 발생 시 행정절차 흐름도	75

일러두기

- 본 연구에서 피면담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명과 구술자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민속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 현장을 통해 죽음을 겪는 개인 및 사회의 현실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수년 간 자체적으로 공영장례를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온 비영리단체 K가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역할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았으며 2023년 2월 27일 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이 2022년 2월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후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영장례의 대상이 되는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혈연의 가족이 아니어도 치를 수 있도록 장사법이 개정되었다.¹⁾ 연구자가 처음 공영장례를 접한 2018년부터, 참여관찰을 마무리한 2023년 3월²⁾에 이르기까지, 공영장례 제도와 법 역시 격변한 셈이다. 이러한 변화 속 공영장례 현장은 ‘죽음 의례의 근간이 되는 사회관계의 변화로 급변하는 죽음의 발생 양상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장’이자, ‘죽음이 비가시화된(엘리아스 2012) 오늘날, 죽음에 대한 소통을 여러 층위에서 촉발시키는 장’이기도 했다. 서울시 공영장례 빈소 ‘그리다’를 중심으로 한 현장들에 대한 참여 관찰 및 관계자 및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공영장례 현장을 구성하는 현실을 고찰하고, 공영장례 현장이 기존의 죽음의례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봄으로써 공영장례 현장이 고유하게 노정하는 사안들과 의미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박진옥은 ‘장례복지’와 더불어 ‘공영장례’라는 개념과 용어가 확립되어

-
- 1) 이승배(서울경제), “與홍석준 발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법’ 국회 통과”, 2023. 02.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XC1YREJ>
 - 2) 본 연구를 위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은 IRB 승인이 이루어진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있지 않다고 논한다(박진옥 2022:46). 공영장례 조례³⁾에서는 공공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장례지원을 행하는 것을 공영장례라 일컫는다. 즉, 공영장례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조건 하에서 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일 경우 장례를 치를 연고자의 건강과 경제 상황에 따라 시신을 위임하지 않고도 공영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김민석 2023) 공영장례의 대상자 다수는 무연고사망자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연고사’라는 현상에 집중하여 이를 위한 죽음 의례로서의 공영장례의 의미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죽음 의례⁴⁾는 ‘그것이 상(喪)이든 장(葬)이든 제(祭)든 죽음을 수용하고, 주검을 추스르고, 죽음을 마음에 담는 일련의 몸짓’(정진홍 2011:14)이며 ‘문화 전체의 죽음의 의미를 축조하는 틀’(ibid.:15)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연고자가 없는 시신에 대한 공영장례 조례가 부재하여 시신이 화장장으로 직행되어 처리되는 지역의 경우부터 공영장례 조례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장례가 치러질 수 없는 경우, 전통 의례의 형식을 압축하여 3시간 내에 합동장 방식으로 치러지는 낯선 죽음 의례(박진옥 2022)로 구체화되는 서울, 수도권 외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공영장례의 현실은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져 있다. 이렇게 단일하지 않은 공영장례의 현장들을 논하는 동안 연구자는 공영장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에서 한 걸

3) 2018년 3월 22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6826호에 따르면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고, 아래 정의를 지닌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4) 상장례를 비롯하여 죽음과 관련해 수행되는 종교의례, 세속의례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죽음 의례’를 칭한 송현동(2006)의 논의에 따라 ‘죽음 의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음 물러나고자 한다. 대신 장례가 ‘죽음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 죽은 자에 대한 물질적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2015)’이라는 데 착안하여 구체적인 현장의 양상과 여기 참여하는 개인들의 인식이, 공영장례의 존립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를 겪는지 살피고자 한다. 공영장례는 사망진단과 연동된 죽음 이해, 주검의 해체에 대한 관념, 장례의 근간이 되는 규범의 변화, 죽음 이후에 대한 상상력과 같은 죽음관 및 죽음 현상의 근원적 변화와 이해의 충돌을 집약하여 드러내는 현장이다. 따라서 공영장례의 필요성 혹은 전통적인 방식의 장례 형식에 준하는 공영장례의 복원을 역설하는 대신 지금의 공영장례의 현실을 통해 죽음의례를 수행하는 단위의 변화 및 국가의 개입, 특정한 죽음 의례의 형태가 권위를 상실하게 된 현황, 죽음의미를 생성하고 수용하는 여건과 양상의 변화, 공영장례 현장이 생성해내는 표상과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타인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죽음에 대한 사회적 선언인 죽음 의례를 통해 죽음과 공존하는 시간을 축적해나간다. 죽음이 살아있는 주체의 인식에 포섭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관리되고 통제되는 형태의 죽음을 장례식을 통해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죽음은 죽음으로 인정받기 힘들다(이창익 2020). 이에 따르면 오랫동안 장례를 거치지 않고 화장되거나 의과대학 시체 해부 실습 대상이 되었던 무연고사망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여기서 인정의 주체는 오늘날 어떻게 상정될 수 있는지, 죽음 후에 ‘무연고사망자’라고 정체성을 부여받는 이들의 존재는 무엇을 지시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연구자로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개념에 접근하고 자료들을 접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연구에 대해 전달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했던 설명은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무연고사와 고독사는 큰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임종을 맞고 수일이 지난 후 주검이 발견되는 경우를 일컫는 고독사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지만 주검 인수

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일컫는 무연고사망자 판별 기준⁵⁾은 분명히 다르다. 무연고 사망자라고 할지라도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 고독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고독사한 이들 모두가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맺고 있던 사람이라도 호적상 혈연이 없다는 이유로 무연고사망자가 될 수 있으며 임종 시 혼자였는지, 시신이 방치된 시간이 긴가의 여부와, 무연고사망자라는 정체성은 상관이 없다(김진선, 2019:3). 즉 오랜 기간 '연고'를 맺어온 지인 곁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도, 이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부재하거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호에 의거해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과 법률혼 배우자,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과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한정된다.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제도적 연고자'⁶⁾가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전국 무연고사망자 3,603여 명 중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가 70%.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30%였다.⁷⁾ '무연고사망자'란 결국 행정 절차에서 협소한 연고자 개념에 의거해 사후에 덧입혀지는 정체성인 셈이다.

이렇게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등치시켜 받아들이는 현상은 '연고(緣故)'라는 어휘가 곧 '인연', 즉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상황 및 사물과의 '관계'와 상동하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광의의 '연고'라는 개념은 '관계'와 호환이 가능한 것인데, 이 '관계'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죽음이라는 것은 곧 고독사와도 같다고 인식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통상적 인식과 한국의 장사제도가 규정하는 '연고자(緣故者)' 개

5)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의 규정에 기재된 기준이다.

6) 이소윤(2022)은 망인의 유체 및 분묘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 법적 주체를 '제도적 연고자'로 지칭하고 이 '제도적 연고자' 개념이 법제도와 사회구조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과 이로 인해 '무연고 상주'들의 존재와 경험의 주변화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7)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는 무연고사망자 현황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박진옥 2022: 38) 국회의원이 발표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년 간의 괴리 때문에, 그리고 2023년 현재 시점의 무연고사망자 대부분이 고독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연고사망자의 증가⁸⁾ 문제가 ‘고독사 예방 정책’ 와 함께 제시되고, 언론에서 ‘무연고 사망’을 ‘고독사’와 비슷한 사안으로 접근하여 레토릭(rhetoric)⁹⁾들을 동원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실제로 장사법상의 ‘무연고’ 사망자의 정체를 인지하게 되는 단계에서 ‘진짜’ 무연고 사망자와 ‘가짜’ 무연고 사망자의 구분을 행하고, 시신을 위임한 ‘제도적 연고자’에 대한 비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¹⁰⁾. 공영장례에 고인의 배우자와 자식 등 가족이 참석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해 “진정한 무연고자는 잘 없는 것 같다”는 말이 공영장례 의전을 담당하는 업체의 직원이나 공영장례에 참여하는 자원 활동가의 입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의 근간에는 장사법이 규정하는 연고자 개념의 문제가 놓여 있다. 2023년 2월, 연고자 외 지인의 장사 주관이 가능하도록 장사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연고자 개념이 전격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¹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는 폭증하게 될 것이다.

무연고사가 고독사와 등치된 개념으로 거론되어온 현상이 기존 장사법에 의해 규정되는 ‘무연고’ 범주가 내포한 문제성을 비가시화해온 맥락을 드러내는 움직임과 연구들은 무연고사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하는 길

8) 2023년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565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000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렇게 10년간 3배로 늘어난 무연고 사망자의 통계는 흔히 고독사 예방 대책과 함께 거론된다.

9)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한 최근의 주목할 만한 탐사 보도로는 2019년 국민일보에서 11개월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370명의 죽음을 전수조사해서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연재한 “빈곤의 종착지 무연고 죽음-370명의 기록”과 2021년 한겨레 21 1384호에 실린 “투명인간의 죽음 서울 무연고 사망자 1216명 리포트”가 있다. 무연고 사망자들과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이 기사들은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구별을 간단히 행하긴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라는 범주 자체가 가진 문제성에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들이 ‘홀로’ 죽은 이들이라는 전제 위에 고인들의 생애 말기의 담화들을 전달해내고 있다.

10) ‘진짜 무연고’ 사망자, 절반도 안된다? 언론 보도 유감, 박진옥, 오마이뉴스 2022.03.0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4596

11) 통계 출처: 2023년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을 터준다. 현재 서울시 공영장례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공영장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영리단체 K는 기존 장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족 대신 장례’ 운동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후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죽음을 앞둔 이의 장사주관자 결정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임규철 2020)이 있었으며, 현재 장사법에서의 ‘연고자’ 개념이 한국의 부계혈연주의, 가제도 및 정상가족주의에 입각하여 고안된 것임을 드러내고 그 의미화를 가시화하며, ‘무연고 상주’들의 장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여다본 연구(이소윤 2022)가 있었다.

제도적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는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사망자와 관계가 단절되어온 경우 일어난다. 본래 가족이 없는 사람이 드문 만큼, 가족이 확인된 무연고사망자가 평균 70퍼센트에 달하지만 병원비 및 안치료 장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박진욱 2019).

무연고 사망자 시신은 장사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매뉴얼’ 및 각 시·군·구의 조례에 의거해 처리되어 왔다. 대부분 장례 없이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하는 직장의 형식으로 처리되어오다가 무연고사망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다. 2007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단체 9곳과 기초단체 49곳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70% 이상이 최근 4년 내에 제정되었는데 서울의 공영장례 시스템이 가장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구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의 성립에는 2011년 결성된 후 자체적으로 공영장례를 실천하고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쳐온 사단법인 K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조례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시신을 의례 없이 화장 처리하고 있으며 조례가 존재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곳도 많다. 2018년에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발의되었지만 2022년이 되어서야 한 주무관의 노력에 의해 최초로 공영장례의 실천이 이루어진 청주에서의 사례¹²⁾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례만 존재하고 몇 년째 실질적으로는 공영장례가 치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2022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별빛버스 운영사업’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위탁해 출범시켰다. 공영장례 조례가 없는 지역에 한해 간이빈소가 마련된 버스에서 장례의식을 진행하고 화장시설 운구, 유골보관까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별빛버스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장례업계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2023년에는 별빛버스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운영 실정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죽음문화를 이루는 죽음관와 죽음 의례에 대한 검토와 공영장례의 현장 연구로 구성된다. 위에서 기술한 공영장례가 딛고, 드러내고 있는 문제적 현실들을 포착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공영장례가 고유하게 드러내는 의미와 표상을 현장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동인하는 연구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생긴 후 5년째로 접어든 시점의 공영장례 실재는 어떠한가? 현재 공영장례 현장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과 사회적 현상을 확인해본다.
2. 공영장례 현장은 죽음 의례와 연동된 사회 및 관념 변화의 어떠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가? 죽음의 국면에서조차 배제되었던 이들에 대한 의례의 요청, 현재 의례의 작동을 추동하는 힘, 그리고 공영장례 현장이 고유하게 의미화 시키는 바들을 체계와 민속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본다.

제 2 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2) 최영덕(충청일보), “청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김가현 주무관 최우수상”, 2022.10.18.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328>

1. 죽음 의례와 문화

상장례¹³⁾를 포함하여 죽음 이전 단계에 대한 인식과 대처, 담화, 죽음 사건이 일생관념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도 포괄하여 ‘죽음 문화’라 칭하고 죽음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죽음 의례가 집전되는 양상이 사회 관계의 변화로 인해 달라진 점을 짚어본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상장례를 수행하는 중요한 단위로서의 종족조직의 연원과 의미도 살피고자 한다.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을 거치며 죽음 문화가 달라진 점을 논한다(엘리아스 2012). 중세 사회에서는 죽음이 공개되어 있었으나 인간 생활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생물적·사회학적 위협인 만큼, 다른 동물적 측면과 함께 사회생활 밖으로 쫓겨났다. 이 때문에 오늘날 죽음은 그 언급조차 회피 대상이 되며 ‘비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아리에스가 중세의 죽음이 더 ‘평화로웠던’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좋았던 과거, 불행한 현재’라는 클리셰(cliché)에 입각해 발생한 오류라고 지적한다. 엘리아스는 중세 사람들이 죽음과 친숙했던 것은 폭력과 전쟁이 일상이었고, 식량 부족과 전염병, 불결함으로 고통 받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불어 문명화 과정에 동반된 세속화로 인해, 의례가 마련해주었던 죽음과 같은 삶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말과 행동은 개인이 알아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으며 수명이 늘고, 폭력이 진정되고, 의

13) 김시덕은 도시에서의 상장례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상례 과정이 대거 생략되고 시신을 처리하는 장사葬事가 부각된 현대사회의 현상을 기술하기에 ‘장사와 상례’의 복합어로서의 ‘상장례喪葬禮’라는 조작적 용어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용어가 아님에도 채택하겠다고 밝힌다(김시덕 2005). 실록의 용례를 살펴볼 때, ‘장례’라는 용어는 조선 시대에 최초로 등장하고, 시신을 처리하고 매장하는 절차 기술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다. 반면 상례는 고인의 죽음처리를 포함하여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전 과정을 일컫는다. 상장례의 간소화 과정에서 처음 역할을 한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에서는 소상, 탈상까지를 ‘상례’라 일컫고 있다.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조선시대의 ‘장례’ 혹은 ‘장사’의 용례에 해당하는,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만 국한해 ‘상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장례’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상례’라는 용어는 문헌 고찰 시에만 논의되는 용어가 되어버렸으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을 일컫는 ‘장례’와 시신 처리 과정을 포함해 이후 행해지는 과정을 포함해 죽음을 처리하는 전체 의례를 지칭하는 ‘상례’를 구분해 사용할 것을 김시덕은 제안한다(김시덕 2010: 438-439).

학이 발전해 죽음이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불멸성을 확신하는 별개의 존재로서의 개인만이 남게 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생의 의미를 획득하는 개인에 대한 상(像)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간혀있는 인간(Homo Clausus)’이라는 에토스는 죽음을 인간의 표상에 끌어들이는 때 비로소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 엘리아스는 전망한다.

한국에서의 죽음 문화 변동은 엘리아스가 논한 문명화 및 세속화 외상장례 전통의 이념과 직결된 한국의 친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야 한다. 근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근래의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transition)¹⁴로 인해 대가족 혹은 안정된 핵가족,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생애 말년의 돌봄과 의례의 실천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친족조직과 직결된 상장례 전통의 이념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광규는 한국의 직계가족들로 이루어진 친족구조가 종족조직으로 ‘특정한 조상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조상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집단’이라 정의내린 바 있다(정향진 2018). 레드클리프 브라운의 입장을 계승한 포르테스와 머독의 구조 기능주의적 이론의 영향 아래 이광규가 규명한 한국의 전통적 친족 및 가족이라는 사회제도에서는 ‘제사’라는 의례가 중심점이 된다.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전통가족이 구성원 수가 많다는 이유로 확대가족으로 규정되어온 것에 반박하여 한 세대 내에 혼인한 부부가 하나만 있는 ‘직계가족(stem family)’의 형태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했다. 종족은 이러한 가족과 당내 문중 등을 포함하는 부계혈연집단이라고 규정한다. 종족조직은 가례를 통해 실천윤리를 구축하고 조선조 국가이념인 유교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왔는데 ‘혈연을 주축으로 하는 종족과 더불어 지연을 주축으로 하는 공동체’가 한국의 전통문화 이해에 필수라고 한다. 지연 공동체

14) 2020년, 한국에서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초과했다.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늘어난다는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2045년에는 34만 명, 2070년에는 51만 명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전체 가구중 31.2%)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 2021)

특징으로는 호혜성, 상호부조, 친목을 꼽을 수 있다. 실리적인 목적으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친목/상호부조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문중으로 대표되는 종족체계의 위계적 성격과 대비를 이룬다. 이광규는 사회적 관계가 갖는 의미와 상징 및 제도화된 체계를 ‘문화’, 사회적 관계 자체를 ‘사회 체계’로 나누어 살핀다. 이를 통해 ‘조상을 통해 자기의 혈연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웃에의 신용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한국문화의 본질’이 종족체계와 공동체체계로 표현되어 있다고 정리한다(이광규 1989:50).

김은희는 한국의 본관 제도의 독특성을 규명하며 인류학에서의 출계이론의 분석틀을 비판한다. 씨족(clan)을 중앙화된 국가 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 기능을 하는 자연발생적 단위로 전제해온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동성동본집단은 이러한 문제적 출계이론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씨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김은희 2018). 한국의 본관 제도는 중앙의 관계에 진출해서 성공했던 조상을 자신들의 시조로 인정하고 그 시조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본관을 그 대로 고수했다. 이렇게 먼 과거에 생존했던 ‘공통의 조상’을 상징하는 것은 그의 후손이라는 씨족의식을 통해 좁은 지역사회의 범위를 벗어나 더 큰 공동체, 즉 국가에 기여한 먼 조상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체계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에 대한 충성과 친족집단에 대한 충성은 배치되는 게 아니었으며 본관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다. ‘과’는 공동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지역화된 부계종족인데 조선시대 중기 이후 유교의 종법제도가 사대부 계층에 확산되면서 출현했다. 종법제는 조상의 제사를 공동으로 지내는 친족집단을 구분하는 제도로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도하에서 성립했는데 종법제도에 따르면 부계친족집단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형성되며 이론적으로 남자 형제가 둘 이상 되면 4대가 지난 후에 분절되었다. 종법제도는 유교에서의 생명관 및 ‘혼’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유교에서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인 ‘기(氣)’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으며 딸은 조상의 기를 물려받지 못

한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여 갑자기 사라지거나 다른 세계에 가지 않고 죽은 자의 혼은 공중에 떠돌다가 서서히 사라지는데 이 떠도는 혼이 사라질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 기간이 대체로 4대손까지이고 그 후에는 제사를 폐지한다.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고조 4대의 제사를 지내게 되어 4대 봉사라고 일컬어 왔으며 고조 위의 조상들은 남계 후손들이 1년에 한 번 묘소에서 시제를 지내게 된다. 시제를 지내는 남계 후손들은 당내친(8촌)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서로 촌수를 따지지 않고 ‘중친’으로 부르며 먼 조상의 같은 자손이라는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위토를 조성하게 되면 부계친족집단인 문중이 조직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사대부 계층에서도 4대 봉사는 잘 지켜지지 않았으나 정점이 있는 조상과 그 후손들이 중앙정부의 정치이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분과가 일어났고 양반의 관습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김은희의 분석은 본관, 파, 종법을 통해 계승되는 양반의 법도가 생득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이도정은 20세기 이후 진도 지역에서의 죽음 민속 변화 양상에서 유교 민속의 현대화 뿐 아니라 조상의 집합적 재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 자들과의 연결성 역시 재편되었음을 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도는 인구가 유출되는 주변화된 공간이 아니라, 조상들과의 연결성을 의례적 변천에 맞게 재편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뒤에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이도정 2022).

무연고사가 가족 해체의 문제인 것처럼 재현되곤 하지만 ‘누가 연고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정상가족주의에 기초한 법제도와 사회구조가 무연고사를 양산한다(이소윤 2022:25). 또한 가계-혈통과 관련이 있는 성별화된 최근친 집단 중에서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장남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기에 상제(喪制: 상중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위계는 여전하다(이소윤 2022:29). 장례식은 이성애주의에 입각한 젠더 질서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생애단계별 인사말 및 염려 섞인 담화가 오가는, ‘규범적 슬픔’이 펼쳐지는 장이기도 하다(루인 2013). 여기서 ‘정상가족주의’로 지칭되는 문제적 이념은 실로 조상숭배를 통해

비로소 개별성의 초월을 획득할 수 있는, 한국의 종족집단의 구성 원리가 표면적 죽음문화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무연고사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흔히 고독사와 혼동되어 논의되곤 하며, 가족의 해체 및 개인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소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연고사’라는 범주의 발생은 혈연 관계를 우위에 놓는 ‘연고자’ 규정의 문제에서 파생된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적 상장례 문화는 조상 숭배를 통해 개별성을 초월한 영속성을 추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문화의 근간이 되는 종족이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도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교적 죽음 의례 수행이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금기시되었던 ‘화장’은 오늘날 보편화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삼국과 고려시대에는 보편적이었던 불교식 화장이 송유역불 정책에 의해 금지되면서 시신을 매장하게 했고, 제사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장묘법과 의례의 수행 환경면에서 다시 한 차례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유교문화 해체와 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12년 총독부령 제 123호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이 공포되고 이로 인해 조선 성종 1470년에 제정했던 ‘화장금지법령’이 폐지되었으며 공동묘지제도가 도입되었다(송현동 2018). 그러나 일본에 의한 화장제도의 유입이 한국인들에게 순순히 수용되지는 않았다. 20세기 초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간주되었고 강고한 유교 장례 문화의 영향으로 화장 기피 현상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화장이 이루어졌다.

해방 후 다시 매장이 늘었으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시신 처리 방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변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화장률은 1954년 3.6%에서 1991년 17.8%, 2000년 33.7%로 급속하게 증가했고 근래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 52.6%, 2011년 71.1%, 2020년 89.9%, 2022년 91.6%(추계)에 육박하는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 전환 정착을 꾀하며 화장시설 등의 장사

시설 확충을 추진해온 국가의 정책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다. 이렇게 장법의 급변에 따라 '봉안奉安'과 '산골散骨'이 새로운 장례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김시덕 2005). 더구나 2023년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사망률 증가를 감안하여 화장로를 신설하고,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으로, 화장한 유골을 산, 바다, 또는 특정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근대 이후 장례문화는 인구 변화 및 국토의 활용과 관련한 국가 제도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가족과 친족, 지역공동체를 근간으로 집행되었던 상장례가 이웃관계를 형성하기 힘든 도시지역의 여건과 1973년부터 의례식장업과 도구 대여업이 허가제로 공식화되며 바뀌었다는 점도 주요한 변화다(김시덕 2005). 1973년 「가정의례준칙」에서 3일장을 법률화하면서 장례식장이 등장한 것은 상례 변화의 촉진제가 되었다. 장례식장이 출현하게 된 것은 도시의 환경 때문이다. 집단 주택이 대부분인 도시 환경 속에서 가정 내 상례는 불가능해졌다. 3일장동안은 염습과 성복·상식·조석·전·영결식·발인만이 가능하다. 더구나 발인을 하는 순간부터 화장 후 삼우제를 지내며 탈상하는 절차까지는 장례식장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상주의 몫으로 남는데 의례에 대한 지식이 전승되지 않는 상황속이라 의례의 본래 의미를 살린 집전은 어려워졌다. 장례식장은 시신의 처리와 장소임대, 장례용품 등에서만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발달했으나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¹⁵⁾는 의례서비스보다 도우미 역할에 치중해 일을 수행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전에는 가족 혹은 공동체의 의례였던 상장례가 이러한 변화 때문에 '개인의 의례'로 변모하게 되었다. 전통상례는 망자를 위한 의례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의례, 조상신

15) 장례식장과 상조업이 활성화되면서 장례지도사 양성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학교들이 생겨났는데 커리큘럼이 의례에 대한 교육보다는 염습 등의 시신위생처리 같은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전통 상례에서 축관의 임무를 맡은 사람과 같이 접수부터 삼우제까지 '의례 집례'를 대행하고, 사망신고서 작성방법부터 봉안당이나 공원묘지 신청 방법까지 유족들에게 안내하는 행정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이 행해져야한다고 김시덕은 지적한다(김시덕 2010: 453-456).

을 위한 의례, 상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한 의례로 구성되어 있고, 고인의 시신처리 뿐 아니라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고 상주와 공동체 성원들이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의례였는데 시신처리 외의 다른 기능은 소거되어 버린 것이다(김시덕 2010: 437-444).

객사한 경우 집안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성주신에게 죄를 짓는 행위이므로 시신을 집에 들이지 못하게 했고, 객귀에 대한 사고로 말미암아 객사를 금기로 여겼던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고 때문에 전통적으로 죽음은 집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1993년 장례식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병원의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인정되어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면서 병원장례식장이 보편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996년에는 장례식장의 용자사업지침이 마련되어 설치가 권장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병원에서의 임종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한국인의 죽음관에서의 규준까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드러낸다. 객사와 더불어 ‘사람으로서 마땅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를 거치지 못해 정상적인 조상이 되지 못’한 죽음 역시 대표적으로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분류되었다(이용범 2013). 시신을 위임할 ‘연고자’가 없다는 의미의 ‘무연고사망자’라는 명칭이 지시하는 정체성 내에는 ‘제사 받을 수 없는 고인’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무연고사는 위의 전통적 한국의 죽음관에 입각해 볼 때 ‘비정상적 죽음’이라고 위치지어 볼 수 있다.

앞서 산분장의 도입과 관련해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사시설수급 종합계획(‘23~’27)」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례 복지’라는 용어를 공공 문서에서 처음 사용하기도 했다. 더불어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를 보다 활성화,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死後)복지’선도 사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1] 제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계획은 강정원의 ‘체계세계’와 ‘민속세계’ 개념을 동원해 설명 가능하다. 세계는 생활세계, 자연세계, 초월세계로 세계는 구성되고, 여기서 생활세계는 체계세계와 민속세계로 이원화된다. 국가와 시장을 통해 발현되는 체계세계와 생활집단이 겪는 현실 속에서 발현되는 민속세계는 기능적으로 상호 중첩되며 행위자의 행위, 그 결과물인 행위체를 통해 드러난다(강정원 2020). 이러한 도상 안에서 위 계획은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인구학적 변화 및 사회관계의 변화, 즉 생활세계에서의 변화를 반영한 ‘체계’에서의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민속’과 ‘체계’의 성격은 행위 뿐 아니라 사물이나 물질에도 적용해 살필 수 있다(강정원 2023). 위치나 만들어짐, 쓰임에 따라 사물과 물질도 각각 민속성과 체계성을 각각 지닐 수가 있는 것이다. 적합성과 반복성, 동일성, 물질성, 완전성, 수단성 등이 체계성에, 일상성과 전통성, 공동체성 등이 민속성에 해당한다. ‘체계성’으로 묶인 속성들, 즉 적합성, 동일성, 반복성, 완결성 등은 체계에서 법제도가 관할하는 시신이 처리되는 과정에 적용해 사고할 수 있다. 공영장례 역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된 이후에는 ‘체계세계’ 내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체계성의 성격들을 띠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무연고사망자¹⁶⁾ 및 공영장례

기존의 연구들은 공영장례현장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무연고 시신’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만이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영장례 제도가 생긴 후 여전히 노정하는 한계에 대한 분석으로 정리된다. 공영장례가 성립된 지 오래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공영장례 제도 자체의 변화보다는 공영장례 현장이 성립된 과정과 ‘무연고 시신’이라는 범주가 어떠한 제도적 이념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주되게 이루어져왔다.

강정원과 이도정은 공동묘지와 무연고묘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를 통해 도시화·근대화 과정에서 무연고시신 처리 문제가 배제되었음을 밝히고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의례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한다(강정원·이도정 2017). 시신처리를 경제와 위생 문제로만 치부하고 개인의 죽음을 가족 등의 연고에만 연결시키는 국면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출발한 이 연구는 공공 영역이 죽음에 대처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묘지 제도의 변화를 살피고, 도시와 촌락에서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며, 현재의 묘지정책이 경제성과 시체의 위생적 처리에만 함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일제강점기의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해방 후의 「매장등묘지등에관한 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를 통해 묘지제도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도시화로 인해 공동묘지가 외곽으로 밀려가는 과정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임야 소유권 자료를 분석한다. 도시와 촌락 문제를 비교하여 개발 문제와 연관이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의 공동묘지, 무연고묘의 실태를 살피기 전 한국의 전통적 죽음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최길성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적 죽음관은 정상적 죽음과 그렇지 않은

16)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연고 시신’이라 칭하는 대상을 일컫는다. 즉 법률상의 용어로는 ‘무연고 시신’-2015년 용어순화 차원에서 변경되기 전에는 ‘무연고 시체’-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식적 명명이라 할 수 있다(박진옥 2022: 27).

비정상적 죽음으로 나뉜다. 비정상적 죽음이 무속의 영역에서 처리되어 왔다는 관념은 정상적 죽음만이 유교적 의례로 치러졌다는 관점에서 성립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기에는 그 도식을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

공동묘지와 무연고묘의 문제는 도시화와 함께 부각되었다. 무연고사 역시 도시화로 인해 촌락을 지탱하고 있던 공동체성의 붕괴와 함께 보아야 하는 현상이다. ‘무연고묘’라는 용어는 1912년 제정된 「묘지규칙」에 등장한다. 일제는 묘지 관리자가 소유자를 모르는 분묘로 1년 이상 신고하여 고시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분묘를 ‘무연고묘’라고 규정했으며 이 개념의등장이 일제 통치 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던 분묘를 공식적으로 정돈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지금의 ‘무연고사망자’라는 용어의 연원을 살필 때 토지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무연고묘’라는 명명이 고안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공동묘지 규칙 및 법률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가 관건이며 전통 촌락에서는 망각될 수 있었던 무연고묘와 달리 공원묘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도시에서 관리비의 정기적 납입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고,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는 분묘가 무연고묘화 되었다는 지점은 무연고사망자 가운데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 연고자의 시신 위임에 의한 무연고사망자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김진선은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통해 무연고사에 대한 장례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살피며 장례의 의미를 고찰하고, 공영장례 운동을 2011년부터 개진해온 비영리단체 K의 활동과 전력 전반을 총괄하여 제시한다(김진선 2019). ‘무연고사’가 일제 강점기부터 어떻게 재현되어왔는지를 살피고 공영장례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 무연고사망자가 직장 처리 되어온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단체 K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장례를 요청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다룬다. 법제도의 면에서 ‘무연고사망자’와 유사한 존재는 ‘행려사망자’라 할 수 있으며 ‘행려사망’이라는 용어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1990년대 공문서에서까지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행려사망’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처리가

크게 달라진 시기를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초까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신원미상 사망자, 인수자가 없는 사망자들에 한정하여 ‘행려사망자’가 정의되었고, 이후 2000년대 전까지는 처리할 사람이 불분명한 시신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정의되었으며 2000년 장사법 개정 이후 ‘무연고 시신’과 관련하여, 시신을 인수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시신인수자가 없을지라도 장례 의례는 고인의 존엄성을 위해 당위적으로 요청됨을 역설하며 이러한 당위가 단체 K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장례를 치르는 단위에 대한 제도와 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으로써 공영장례가 논의되기도 한다(이소윤 2022, 박진옥 2022). 이소윤은 ‘무연고사망자’를 규정짓는 ‘연고자’라는 범주와 시신 위임이라는 의무권리 및 포기에 대한 설명의 책임을 둘러싼 맥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연고자의 개념이 혈연과 혼인의 기초에 직계가족만으로 협소하게 정의되는 상황 자체를 문제화한다. 장사법의 연고자 조항이 죽음과 장례를 둘러싸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무연고 상주’들의 공영장례 참여 양상에 집중함으로써 여전한 규범으로서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정상가족주의에 기초한 법 제도와 사회구조는 한국가족법의 체계 속에서 제사주사자에게 묘지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온 배경(ibid.: 29)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장사법 제정이전부터 존속되어온 부계혈연주의에 기초한 장사법 제2조 제16호는 연고자 범주를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범위’를 규정한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개념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3) 배우자로 한정하는데 이렇게 민법에서는 친족으로 인정하는 며느리나 조카마저도 장사법은 배제하고 있다. 이토록 장사법의 협소한 가족 정의, 혈연과 혼인을 기준으로 가족을 규정하는 법제도와 사회구조의 한계가 무연고라는 죽음 현상을 부상시킨다. 동성(同性) 생활동반자, 돌봄 공동체 일원 및 혈연과 혼인을 통하지 않은 인연은 모두 연고자에서 배제되고 ‘제도적’ 연고자와 위계화 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연고자로 분류¹⁷⁾되고,

‘제도적’ 연고자와 달리 장사 주관 및 시신 인수를 위해서는 행정적 과정에서 인정 투쟁에 봉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연고자 안에서도 공영장례라는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가족’, ‘복지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가족’이라는 경계를 생산한다는 점도 드러낸다(*ibid.*:36-47). 여기서 시신을 포기한 가족에게 시신처리위임서를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절차 자체가 “연고자답지 않음”을 시인하게 만드는 규범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 역시 논의된다(*ibid.*:42).

박진옥은 공영장례 현장 참여자 가운데 무연고사망자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비혈연 관계 지인’들의 경험을 들여다본다(박진옥 2022). 법률혼과 혈연중심의 법과 제도 때문에 고인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이들이 장례할 권리, 애도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과 이에 맞서는 저마다의 방식을 심층면담을 통해 기술하는 이 연구는 이소윤의 분류에 따르면 ‘나머지’ 연고자로 칭해질 수 있는 대상의 사례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영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으로서 장례복지 제도가 되어야 함이 논의된다. 현재 한국의 장례는 상업화되어 있고 장례의 영역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나 돈이 없는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 대응과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무연고사망자를 만들어낸 고립을 제어하는 방편으로써 기존 혈연중심의 가족 전통으로의 회귀하는 대신, 법률혼 중심적 사회시스템의 대안을 인정하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무연고사망자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박진옥은 논한다.

동자동 주민들의 공영장례 경험과, 공동체 내 지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에 대한 정택진의 인류학적 접근(2021)은 무연고사와 빈곤의 상관관계를 드러낸다. 단체 K의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 실천이,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무연고사망자의 존재에 주목하게 하고, ‘우리과 함께 있었던 공동존재임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김미영의 분석

17) 제도적 연고자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머지’ 연고자들의 범주가 ‘무연고 상주’-동거기반 생활수반자, 느슨한 돌봄공동체, 지역사회 상호부조-로 구성된다고 정리한다(이소윤 2022: 118)

(2021)은 공영장례가 사회관계의 새로운 구상을 위한 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영장례 빈소는 무연고사망자와 고인의 지인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장례의전을 행하는 이들, K 활동가들까지 잠시나마 한 자리에 모이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형성되는 현상이 된다.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의 쪽방촌이라 할 수 있는 ‘도야’ 주민들이 고립사하고, 쿠보야마 공공묘지에 무연고사망자로 안치되는 것이 산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한 김지은의 연구 역시 무연고사 현상이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Kim 2016). ‘도야’ 거리란 본래는 값이 싼 간이 숙박업소를 뜻하는데 고토부키의 ‘도야’거리는 일본의 3대 도시빈민가 중 한 곳이다. 여기서 죽어나가는 이들은 보통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고 유골은 다른 시신들과 함께 공공묘지에 안장된다. 도야 거리에서 고립사한 이들의 시신이 산 자들의 돌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산 자들의 관념에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을 김지은은 ‘죽음사회성(necrosociality)’이라 명명한다. 여기서 ‘죽음사회성’이란 폴 래비노우가 제시한 ‘생명사회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연구자가 창안해 제시하는 것이다. 고립사한 이들과, 무연고사망자 시신의 경로는 ‘사람다움(personhood)’을 상징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정의 가능하게 한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자기 관리에 능한 개인이라는 주체, 성실한 노동자로서의 주체, 출산을 통해 재생산에 복무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사람다움을 획득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규범에 균열을 내기 때문이다. 또한 고토부키에서 고립사한 시신의 유골들이 묻힌 곳의 기념비가 ‘수직적’, ‘부계혈통’ 가계의 영속과 번영을 위한 조상 관념에 균열을 가하는 표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강정원·이도정과 김진선의 연구는 여러 지자체에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즈음, ‘무연고사’가 사회 문제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그 죽음 현상 자체를 수면 위로 올리고, 이 죽음의 계보를 다루며 이들에 대한 죽음 의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소윤과 박진옥은 2023년 1월 무연고사망자의 비혈

연 지인도 장례 주관이 가능하도록 장사법이 개정되는 등의 공영장례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변화 속 행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침예한 문제 제기를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무연고사를 둘러싼 ‘문제적’ 지점들을 훑아 본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근래 공영장례를 둘러싼 법과 제도의 신속한 보완들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는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생기고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도화된’ 공영장례가 드러내고 있는 사회와 죽음 의례에 대한 인식, 현장이 추동하는 변화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진행된 김진선의 연구와 차별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장사법이 개정되기 전의 이소윤, 박진옥의 연구에서는 기존 장사법이 지닌 문제를 조명하는데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 공영장례 현장의 실제 자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식과 문화 규명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조명되지 않은 시신의 물질화와 이것이 확인되는 현장에 대한 민족지 기술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선행연구들이 예리하게 가시화해온 ‘제도적’ 한계와 그 근간에 대한 지적들은 이 연구에서 자원으로 기능할 것이다.

3. 논문의 구성

연구는 크게 죽음관에 대한 검토와 공영장례의 현장 연구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죽음 의례’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공영장례 역시 죽음 의례라는 맥락 속에서 관찰될 것이다. 공영장례가 무연고사망자를 위해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무연고사망자라는 존재, 이 죽음을 구성하는 현실과 공영장례가 표상하는 현실이 무엇인지 살피고자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II장 “죽음관 및 죽음 의례와 무연고사”에서는 오늘날의 무연고사와 공영장례에 대응할 수 있는 영혼관과 죽음의 조건, 죽음 의례의 전통들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살핀다. 특정 조건의 죽음들은 조상으로 제사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없다고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의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행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제도적으로 이러한 죽음들에 대처해온 방식의 변화들을 살핌으로써 죽음 현상과 시신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볼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무사귀신이 이승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거라는 민간의 의식인 국가 차원의 여제 및 별여제의 설행을 추동했다. 근대 이후 의례는 간소화되었고 전통적 영혼관은 명맥이 끊어졌다. 또한 발전주의적 기획 하에 국가 주도적으로 장묘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연고 시신은 철저히 물질화되었고 체계의 ‘처리’면에서 가장 용이한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Ⅲ장 “공영장례 현장에서의 죽음 의례 실천 양상”에서는 서울의 공영장례 빈소 안팎의 현장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들이 기술된다. 서울의 공영장례는 서울시립승화원에 위치한 빈소 뿐 아니라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과 행정주체,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공영장례지원상담센터 등 여러 주체들의 연계 속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빈소 외 공간들에서 무연고사망자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지, 공영장례가 제도로서 존립하는 데 어떠한 노력들이 작용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서울시 공영장례 빈소 바깥에서 무연고사망자를 추모하는 공간도 소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영장례의 주된 대상이 되는 ‘무연고사망자’라는 범주가 문제적인 지점을 검토 해본다. 공영장례 현장은 일반적인 장례와 다른 특징들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지점에서 비롯되고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도 정리할 것이다. 이로써 공영장례는 제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체계의 속성들을 지니게 되지만 동시에 일반 장례에서 포착되지 않는 공영장례만의 고유한 민속성과 특징들을 담지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Ⅳ장 “공영장례와 죽음 문화”에서는 공영장례가 지시하는 죽음 문화의 새로운 국면과 사회관계의 변화를 규명해본다. 공영장례는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의례가 약화되었다는 정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성립 배경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으로 의례를 강제하는 힘이었던 관념이 계승되지 않음에도 사람들이 왜 무연고사망자의 의례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답을 언어화하는 과정은 사람들의 삶에서 의례의 위치를 재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영장례 현장은 사회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변화상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로서도 설명 가능하다. 이는 공영장례 현장을 작동시키고 ‘무연고사’라는 범주를 생성해내는 장사법 및 장사업무안내와 마찰을 일으키는 현실의 양상, 빈소에서 확인이 가능한 관계망의 형성, 빈소가 만들어내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념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Ⅲ장을 통해 현 시점의 공영장례 현실이 전달된다면 Ⅱ장에서는 공영장례의 ‘제도’로서의 현실이 어떠한 문화적 제도적 맥락 위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 드러낸다. Ⅳ장은 Ⅲ장에서 기술된 공영장례의 실체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한다. 이로써 ‘새로운 이념에 의해 행해지는 의례’로서의 공영장례라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본 연구는 접근한다.

제 3 절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참여 관찰, 그리고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죽음 의례와 죽음관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및 통시적 연구를 수행해 나온 논문과 서적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연구자는 공영장례 빈소와 공영장례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또한 공영장례 실무자들 및 공영장례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은 공영장례 현장과 연계하여 재검토해야할 죽음문화와 죽음의례의 현상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분석한 바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역할을 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실험이나 서베이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의 폐쇄적인 구조에 비해 개방적인 구조를 가진 만큼(강정원 2011: 26) 문헌

조사를 통해 잠정적인 의미 도출을 했을지라도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필요하다면 선행 단계로 돌아가 자료 분석을 다시 행하고 가설을 수정했다.

스프레들리의 참여 유형은 개입의 정도에 따라 개입이 없는 비참여부터 적극적 참여 까지 다섯 단계의 스펙트럼으로 나뉜다(강정원 2011: 41). 여기서 연구자는 공영장례 및 업무와 관련한 일상생활에 참여함과 동시에 관찰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중간 정도의 참여’ 관찰을 수행했다. 또한 심층면담 시 준비된 문항을 통해 일정정도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다 면담 대상자의 구술에 맞추어 임의의 질문들을 추가하는 비구조적 면담을 병행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가고자 했다.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시는 2019년, 공영장례 제도화를 위한 운동을 개진해온 K와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2020년부터는 상조회사 A를 의전업체로 지정 위탁했고 서울시립승화원 2층 유족대기실 중 하나를 ‘그리다’ 빈소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그리다’ 빈소에서 행해지는 장례에 연구자는 19회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3회의 의례에서는 고인의 상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공영장례 업무와 현장이 성립하게끔 지원하는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 대한 참여 관찰을 1회 진행했고, 서울시의 공영장례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무연고사망자 추모식을 추진해온, 예절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S의 추모식에도 1회 참여했다. 서울 외 다른 지자체에서의 공영장례 현장 참여는 2023년 1월 중순 안양에서 1회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공영장례 실무자 및 자원 활동가, 공영장례로 모셔진 고인의 지인들, 무연고 사망자 시신들이 ‘관례적으로’ 안치되는 장례식장의 실무자들, 마을장례를 행하고 있는 동자동 협동회의 이사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2명과는 대면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2명과는 이메일 면담을 함께했고, 1명은 줌과 이메일을 통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단체 K의 상임이사와의 대면 인터뷰는 2회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되기 전부터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실천해온 단체 K의 활동은 2011년 위안부 피해여성 장례 지원에서 시작되었다. 공영장례 조례가 생긴 후 단체 K는 공영장례 현장을 주관할 뿐 아니라 혈연 및 법률혼 관계로 한정된 연고자만이 장례주관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가족 대신 장례’ 운동을 펼쳐왔고, ‘내 뜻대로 장례’가 가능하도록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고 유언, 후견제도 신탁법을 통해 자신의 사후를 설계할 수 있는 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을 외치는 운동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2019년 3월부터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는 무연고사망자 관련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기 위한 독거노인, 가까운 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문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행정 처리 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르는데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한 이후 가족 등 연고자를 찾고 주거지·거리 등 ‘병원 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는 경찰이 사망현장에서 병사 및 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며 검안의사로부터 검시소견이 있는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행정절차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사업무안내」에 따른다. 우선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무연고 시신을 인수한 시장 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여부를 재확인하고 확인되는 경우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하지만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있어도 시신 위임 포기하는 하는 경우,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조회사 A의 공영장례팀이 운구 및 염습을 실시하며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화장과 산골이 실시된다. 무연고시신은 화장 후 서울시립승화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되거나 5년 동안 무연고추모의 집에 봉안하고 봉인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해야 한다. 이렇게 병원 혹은 경찰, 무연고 시신이 안치되는 장례식장, 행정주체인 시청, 구청, 상조 회사, 서울시립승화원이라는 다양한 단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공영장례가 성립된다. 이 때문에 하나의 의례를 성사시키기까지 수많은 서류와 연락이 오가며, 이 과정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바로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다. 무연고추모의 집에는 3천 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고 일 년에 단 하루만 외부에 개방된다. 매년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인 10월 14일 이곳에서 합동위령제가 개최되고 지난해까지 K는 연대단체로 위령제에 함께 하곤 했다.

연구자는 2019년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치러지는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의례 및 합동위령제, 무연사와 공영장례에 대한 심포지엄에 대한 영상 기록을 단체 K의 자원활동가로서 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결정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그리다’ 빈소와 같이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한 공영장례 현장은 드물다. 2007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1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단체 9곳과 기초단체 49곳, 전체의 23.7%가 조례를 제정한 상황인데, 70% 이상이 최근 4년 내에 제정되었고 2023년 들어서 공영장례 조례가 발의되거나 제정되는 단체들도 나오고 있다.¹⁸⁾ 조례가 없는 곳에서는 시신을 의례 없이 화장 처리하고 있으며 조례가 존재하더라도 유명 무실한 곳도 많다. 지역마다 다른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다 빈소 외 타 지역의 공영장례 참여를 희망했으나 단체 K를 통해 참여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곳에서는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에게 의례 자체를 개방한 곳도 드물었다¹⁹⁾. 이례적으로 안양시는 안양

18) 대한민국에는 1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시와 군 자치구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이 있다.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수만을 따졌을 때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약 24.3%가 제정했다고 할 수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15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영장례 조례가 적용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65.8%가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시민 또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박진옥 2022).

19) 서울시 공영장례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2019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 K의 홈페이지를 통해, 혹은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통해-여기서 신청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승인과 관리 역시 단체 K가 하고 있다- 장례 지원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식 및 운구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자원 활동가 모집에 대한 공지글에서는 활동 내용을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참여(대리 상주 및 조사 낭독)/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고인의 시신 운구/ 무연고사망자 화장 종료 후 유골함 운구’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연고사망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과정으로 ‘시신 운구->고인에식->자원활동자 조사 낭독->종교 예식->유골운구->마무리’로 요약되어

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장례참여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영장례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구자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도움으로 갑작스럽게 잡힌 안양시의 공영장례 일정을 안내받아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지자체에서의 공영장례 수행의 현황을 한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장 죽음관 및 죽음 의례와 무연고사

본 장은 죽음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²⁰⁾ 인식 체계를 검토하여 당대 ‘무연고사망자’라는 사자(死者)를 수용하는 방식의 맥락을 살펴본다. 전통적 죽음관은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을 구분(김시덕 2005, 송현동 2006, 이용범 2009, 최길성 2010)하는 체계 안에서 논의되어왔다. 여기에서 ‘비정상적 죽음’로 분류되는 상황 및 조건과 오늘날 무연고사망자를 규정하게 만드는 죽음의 상황 및 조건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비정상적 죽음’은 망자의 ‘영혼’이 어떠한지 규명하는 과정에서 성립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경로 내 의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면에서 오늘날의 ‘무연고사’와 통한다. 또한 공영장례 조례가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은 조선시대 적절한 의례를 거치지 않은 죽음, 즉 ‘비정상적 죽음’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민간의 의식과 연동하여 재조명할 수 있다. 공영장례라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가 생기기 이전부터 불행하게 죽은 자와 제사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해

있다. K의 홈페이지에는 장례 2~3일 전에 장례로 기리게 되는 고인의 이름과 출생연도가 캘린더에 업로드 된다.

- 20) ‘전통적’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례의 틀이 유교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교식 상례문화의 전래와 수용이 이루어진 시기를 통해 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가례』가 들어온 조선시대 이전 상고시대부터 유교식 상례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들 때문에 단순히 ‘조선시대 이래’로 한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의 죽음 의례는 불교와 민간 신앙과도 불가분의 관계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헌을 통해 상장례의 구체적 양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삼국시대부터를 ‘전통적’ 시기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유교식 상례가 공인되고 정착되는 조선시대부터에 집중해 살피고자 한다.

공적 차원의 대응이 존재했다. 조선시대에 정기제로 설행된 여제(厲祭)가 대표적이다.

전통적으로 상장례 의식을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은 사후 세계에 안정적으로 통합되고, 죽은 자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죽음과 가까운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죽음 의례는 죽음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게끔 유도하고 삶과 연결된 상태라는 인식을 주조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제도는 죽음 의례의 간소화를 강제했을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 하에 시신에 대한 처리만을 관할했다. 그럼으로써 공적 차원에서의 죽음 의례 전통에 단절이 이루어졌다. 죽음 의례는 망자의 육신을 처리하는 절차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례의 요청에 작용한 민속적 요소의 검토는 무연고사망자의 죽음 조건과 공영장례의 맥락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서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이라는 구분 시 발생하는 명칭이 사회적 규범의 준수로 성취되는 ‘정상성’과 이에 대비되는 ‘비정상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에서의 용례를 의식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비정상적’ 죽음으로 분류되어온 현상에 ‘악상’이라고 분류되어온 범주의 죽음까지 통합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이라 재명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할 때에는 연구자의 분류 방법을 따라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죽음관에 입각해 보았을 때의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과 오늘날 ‘무연고사’가 어떠한 지점에서 교차하는지 보고자 한다. 이로써 오늘날의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 현상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무연고사에 대한 의례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에 대한 이해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제 1 절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의 조건들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사자(死者)는 조상이 되지 못한다. 즉 조상숭배가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의 조건들을 규정한다. 최길성은 포르

테스의 논의에 근거하여 혈통관계가 분명한 사회적 관계 내에서 조상숭배가 성립될 수 있으며 사후(死後)에도 후손에 의해 의례가 치러질 수 있는지가, 즉 사회의 존속이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조상숭배가 ‘미래지향적’인 신앙이라고 정의한다(최길성 1983). 조상이 되지 못하는 사자(死者)는 잡귀가 되어 이승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제사를 받을 자격을 획득한 사자(死者)라고 하더라도 제사의무자가 제사를 소홀히 하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조상으로써 해를 끼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원혼은 자손 이외의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죽음을 기점으로 위협을 품게 되는 사자가 야기하는 공포의 감정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하는 책임을 강화하는데 복무시킨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주자학의 도입으로 조상에 의한 가호 혹은 위협에 대한 관념이 죽은 자의 공덕을 기리는 경향으로 변했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 의례의 주체가 특정 종교였다기보다는 죽음 의례에서 다양한 종교 전통이 상황에 따라 활용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이용범 2009). 그럼에도 한국의 전통 죽음 의례는 보편적으로 유교 상장례로 축약되어 논의되곤 한다. 오늘날의 간소화된 장례 역시 유교 상장례의 과정과 이념이 축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을 조건 짓는 조상숭배와 직결된 전통인 유교 상장례 절차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사자의 혼이 조상의 혼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해본다.

유교 상장례 절차는 1)혼과 육체의 분리 절차, 2)혼이 빠져나간 시신을 처리하고 혼을 모시는 절차, 3)의례를 통해 조상신이 된 혼을 모시는 통합의 절차로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1) 분리: 혼과 육체의 분리를 확인하는 절차

천거정침(遷居正寢) - 속광(屬宏, 또는 속굉(屬宏)) - 고복(梟復) - 사자상(使者床) 차리기 - 수시(收屍, 또는 천시(遷屍)) - 습(襲) - 염(殮)(소렴-대

럼)

(2) 전이:

1_혼이 빠져나간 육체(즉 시신)을 처리하고(즉 매장)

성복(成服) - 발인(發靱)(喪輿와 靈輿) - 노제(路祭) - 산신제(山神祭) -
개토제(開土祭)- 하관(下官)-매장(埋葬)

2_혼을 모셔서 혼을 가진 존재로서 대하는 절차(상청(喪廳)에 모셔지는
기간)

반혼(返魂) - 우제(虞祭)(초우-재우-삼우) - 졸곡(卒哭) - (부제(祭)) -
소상(小祥)-대 상(大祥)-(담제(祭))

(3) 통합: 조상으로서 완전히 자리잡는 절차 길제(吉祭)

이러한 상장례 절차는 유교의 '귀신' 관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여
기서의 '귀(鬼)' 관념은 사람의 죽음으로 신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음양이론, 그리고 '혼백' 개념과 연결된다. 혼백에서 혼(魂)은 귀(鬼)와
운(云)이 결합한 글자로 하늘로 올라가는 귀(鬼)라는 것을 드러내며 백
(魄)은 백(白)과 귀(鬼)가 결합한 것으로 사망 후 땅으로 돌아가는 귀(鬼)
라는 것을 드러낸다.

혼을 다시 신체로 불러들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고복으로 혼이 돌
아오지 않으면 주검을 정리하는 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고복
의 본질적 의미는 고인의 혼이 조상의 영혼이 될 수 있게끔 현실 세계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이기는 곧 과도기적 단계로, 이 단계에
서 망자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닌, 죽었지만 살아 있는 존재(a
living dead)'로 간주되며 탈상 후 길제를 통해 망자는 죽음의 세계에 온
전한 성원으로 안착하게 된다(이용범 2009: 40).

상례에서는 생전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작용하여 고인과의 관계가 가

잡고 먼 정도, 즉 친소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을 달리 정한다. 이 점은 반 개념이 살아 있는 상주들이 상중에 망자와 함께 ‘특별한 집단’을 이루며 이 집단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가 친소에 달려 있음을 논하는 맥락(반 개념 1992)과 통한다.

조상의 혼은 일정 기간 세상에 존속하는데 이 혼을 위한 의례가 바로 제사다. 즉 제사는 사자송배의 한 방식인 것이다. 제사는 전쟁과 더불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정치적’ 의례로 간주되었다. 제사는 유교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부모-자식’ 관계가 가장 극적으로 구체화되는 국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교적 사회 구성의 이상은 ‘가국일체(家國一體)’이고 가족의 확대가 곧 국가로 이해된 만큼 가족에서의 윤리가 표현되는 제사는 현실 질서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례였다(이용주 2021). 이렇게 궁극적으로 안정된 조상의 혼으로 수렴될 수 있는 죽음이 곧 ‘정상적 죽음’으로 분류되어온 것이다.

죽음이 일어난 연령, 발생 공간, 죽음의 방식에 따라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이 구분된다(이용범 2009). 첫 번째로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 경우 살아가는 동안 거치게 되는 혼인과 같은 통과의례를 거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는 면에서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간주된다. 미혼자라도 추모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고로 죽은 경우 사자(死者)는 처녀귀신·총각귀신으로 일컬어지는 ‘호구’ 혹은 ‘도령’이라고 명명되었다. 두 번째로, 집 밖에서의 죽음도 ‘비정상적 죽음’으로 분류된다. 세 번째 ‘비정상적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사고나 자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다. 이러한 분류는 유교 제사의 대상이 되어 조상이 될 자격을 획득한 죽음이 ‘정상적 죽음’이고 그렇지 않은 죽음은 ‘비정상적 죽음’이라고 본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상적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의 분류를 행함에 있어서 정상적 죽음의 조건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성원권으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두어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사망의 정황으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연사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분류 가운데 죽음의 원인이 죽음의 ‘정황’에 통합되어 정리

된 결과이다. 여기서 이수유는 정상적 죽음의 조건 외 사망 시점 확인과 집안의 형편에 따라 호상인가 아닌가로 나뉜다는 분류를 한 차례 더 행한다(이수유 2022:198-207). 호상의 조건으로는 크게 사망 시점과 집안 형편에 따라 나뉜다. 고인의 연령이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 세대 보다 먼저 이루어진 죽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집안 형편이다. 장사 비용이 감당 가능해야 하며, 두 번째로 장사 및 제사가 가능한 자손이 존재해야 한다. 장사를 치를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의 집안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동네에서 죽은 이의 혼이 원혼이 되지 않게 상포계나 상두계의 지원으로 처리했다. 이는 곧 오늘날 공영장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음을 환기시키는 바다. 또한 현재 공영장례의 대상이 되는 무연고사망자 가운데 70%가량이 연고자의 시신 위임으로 발생하며, 시신 위임의 사유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점은 ‘호상의 판단 기준’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현실과 결부할 때 유효한 항목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호상의 경우 장사는 곧 잔치였기 때문에 먹고 노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 판에 대한 비용을 댈 수 없는 집에서는 장사를 치를 수 없고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서 지계에 가 땅에 파묻어 주는 과정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했다. 즉 호상인가 아닌가는 고인이 속한 관계의 ‘안정성’이 판별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다(ibid.:203).

조상숭배에 대한 논의는 영혼관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최길성 1983).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주로 영혼관과 결부되어 정리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조상숭배를 통해 상징화된 조상의 영혼불멸성은 조상숭배의 사회적 측면, 즉 가족과 정치 지배 제도의 이데올로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했다. 따라서 오늘날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이 원혼을 낳고, 이 원혼이 산 자를 위협할 거라는 공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해도 과거로부터 연원한 영혼관과 밀착한 조상숭배의 사회 제도적 측면이 오늘날까지 지배력을 지니는 한 과거의 죽음관은 구속력을 지니며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장례는 출생-성숙-번식-죽음이라는 순환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치 체계

가 확고해지고 조직화가 이루어지며 방향성이 생기게 하는 의례(캐서린 벨 2007)인데, 가치 체계의 연원에 대한 의식 없이도 조직화와 방향성에 대한 순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여기서 논한 영혼관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 영혼관을 기저로 삼는 의례의 질서, 혹은 질서를 수호하려는 당위적 노력 자체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죽음 의례에서 산 자들의 상태와 위치가 망자와 ‘가까운’ 정도에 따라 규정되었다는 점이 여전히 죽음 의례의 전통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도출시킨다. 또한 이 때의 ‘가까운’ 정도란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도정은 전라남도 진도군의 농촌 마을인 칠전리에 위치한 망자의 공간을 ‘정상적 죽음’을 맞이한 선조를 위한 ‘조상의 장소’와 ‘비정상적 죽음’과 직결되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로 구분한다. 진도에서는 어린아이와 미혼자의 죽음, 그리고 집 밖의 죽음이 ‘비정상적 죽음’으로 간주되었고, 객사한 시신에 대한 상례 절차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린아이와 미혼자의 시신은 정상적인 상례를 치르지 않고 아장터나 공동지에 묻었다고 정리한다(이도정 2015: 39-50).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이도정의 정리에 의거해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을 위한 의례’를 ‘소외된 망자를 위한 의례’로 압축해 전통적 죽음 의례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정리된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의 조건들은 근대 이후 정주율의 감소, 가족 구성의 변화, 병원에서의 죽음 보편화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비정상적 죽음’이라 분류할 수 없게 되었다. 화장률의 증가, 집에서 병원 장례식장으로의 장례장소 이전과 더불어 현대 사회의 장례 문화로 두드러지는 점으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각종 사고사, 특히 비교적 어린나이인 초중고생 시절에 비명횡사한 사람들에게 대한 장례, 추모제가 강화’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았거나 어린 나이에 죽은 경우 이제까지 논한 ‘비정상적인 죽음’의 범주에 속하는 까닭에 ‘정식’ 상장례 형식으로 치러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의례가 치러지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송현동 2006).

제 2 절 소외된 망자를 위한 의례

소외된 망자를 위한 의례는 여러 종교 의례들의 혼재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유교 제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원혼은 유교 제사 대신 무속의 죽음 의례를 통해 위무된다고 보기도 한다(최길성 2010). 앞서 논한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영혼이 죽음의 세계에 통합되는 과정은 유교 제사를 지낼 후손이 부재함으로써, 혹은 그 죽음의 비극성으로 인해 죽음의 세계에 쉽사리 통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을 위한 의례로는 이러한 일반적인 유교 상장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생략된 의례나 무속의 죽음 의례가 행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교 예서에도 비정상적 죽음에 대한 처리 방식이 기술되어 있음을 논하며 무속만이 비정상적 죽음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단정할 수 없다(김시덕 2005). 전염병이 창궐 등의 계기로 무사귀신에 대처하여 치러진 국가 차원의 의례 여제(厲祭) 역시 유교적 의례였다. 여제는 죽은 백성을 구휼하는 의례주체자로서의 왕과 여제에 무사귀신을 불러오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성황이 공존하는 의례로써, 두 가지 제사로 구조화되었다(김유리 2016). 마을 차원에서 치러진 별제 또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무사귀신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기 위한 유교 의례였다(이도정 2023).

이용범은 서울과 제주, 진도 세 지역의 무속 전통에서의 죽음 의례가 유교 상장례 절차와 함께 행해졌음을 지적하며 유교 상장례가 정상적 죽음을, 무속 죽음 의례가 비정상적인 죽음을 담당해왔다는 도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서울에서는 진부정, 관넛, 자리건이, 진오귀굿 및 탈상굿이 유교 상장례의 과정과 동반되기도 했고, 제주도에서는 임종에서 탈상 사이에 귀양풀이와 시왕맞이를, 호남에서는 발인 전날이나 삼우젯날에 씻김굿을 행했다. 이를 통해 유교와 무속·불교의 죽음 의례가 상호 보완하며 죽음 의례를 구성해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무속은 진오귀굿과 같이 죽은 자와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교의례의 지배력 속에서도 죽음 의례에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여기서 논의된 의례들이 지역별 특색으로 구체화된 사례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이용범 2009: 31).

결혼 전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망자들에 대해서는 ‘약식의’ 유교 상장례가 행해지며 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처녀, 총각의 뉘에게 집중할 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신 매장 시 조나 계란과 같이 묻으면서 ‘조에 싹이 나오거나 계란이 부화되면 같이 나오라’고 당부하거나 조를 손 싸개에 한 주먹 넣어 혼이 조를 세는데 정신이 팔리게 하는 식이다. 사후결혼굿을 치러 적극적으로 망자 결혼을 추진하기도 한다. 객사한 이들에 대해서는 ‘혼 부르기’가 행해진다. 집 밖에서 죽은 경우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혼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원혼이 그 장소를 위협하게 만든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혼 부르기’는 죽은 자를 죽음을 맞이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의례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죽은 자는 저승에 통합되는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순탄하게 일어나지 않고, 이 때문에 산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 의례의 형식으로 이들의 뉘에 대한 위로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주자학의 도입 후 죽음 의례가 조상의 공덕을 기리는 목적으로 변화했음을 앞서 논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무사귀신을 위해 치러진 여제(厲祭) 외 별여제의 설행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건이 되었다(김유리 2016). 여기서 ‘무사귀신’이란 위에서 불행하게 죽은 자와 제사 받지 못하는 자를 총칭하며 주자의 귀신론에서 체계화된 것이다. 김유리는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나온 <용재총화>, <어우야담>, <천예록>등의 야담집을 토대로 ‘위협이 되는 사자(死者)’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정리한다.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진 시체의 혼이 산자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원한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설정이 여러 이야기에서 등장하는데, 이는 억울하거나 불행한 죽음을 맞은 자 또는 죽은 자의 해골이 질병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외에, 적절하고 충분한 의례가 부재함으로써 재앙의 빌미가 된다는 민간의 인식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죽은 자들이 마마귀신이 되어 자신에게 제대로 의례를 행

하지 않은 자들에게 질병을 옮긴다는 야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독해가 가능하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민속적 인식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버려진 시신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불행한 죽음을 맞은 망자는 산 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세 번째로 적절한 의례를 받지 못한 망자 역시 위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의례를 통해 이 망자를 대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민간에서 재난 상황이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으로 초래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의례를 요청한 배경을 드러내기도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전사자, 물에 빠져 죽은 자, 굶어 죽은 자, 버려진 시체’ 등 구체적인 사자들이 의례의 대상에 포함되어 갔다. 그런데 유교 사전(祀典)체계에서 핵심적인 원리가 ‘공덕성’이라는 점 때문에 ‘공덕성’ 없는 사자에 대한 의례의 명분이 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ibid.:67-71). 이렇게 민간의 인식과 유교 교리적 제약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현되었던 별여제 실행은 무연고사의 근원을 근대 이전에서 확인시키며 논의의 확장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유교적 상장례 전통으로 기려지지 않는 죽음이 ‘비정상적 죽음’으로 통칭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이 각각 유교적 죽음 의례와 유교 외 다른 종교의 죽음 의례에 의해 기려진다는 도식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세키네 히데유키의 영혼관 논의는 여러 종교적 죽음 의례의 ‘혼재’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연유에 대한 단서를 제시한다.

히데유키는 한·일 고대문화에서 공통되게 포착되는 영혼관을 초혼재생, 정화, 탈혼으로 구분해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소외된 망자를 위한 의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초혼재생(招魂再生)’과 ‘정화(淨化)’ 개념에 집중해본다.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샤머니즘적 전통에서 두드러지는 관념이 곧 초혼재생이고 화장 등의 시체 처리 방법으로 시체의 부정(不淨)을 없애려는 관념이 정화 관념이다. 히데유키는 최길성의 논의를 수용하여 사령제나 씻김굿과 같은 무속 의례가 제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죽음의 위험성을 ‘정화’했다고 정리한다. 이러한 죽음 의례에서는 ‘정화’ 관념이

단순 계승되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유교가 샤머니즘을 이론화한 것이라는 노부유키의 이론을 받아들여 유교의 제사에서 ‘빙의형’²¹⁾ 샤머니즘의 영혼관, 즉 초혼재생과 정화의 영혼관이 상징화되어 드러난다고 분석한다. 유교의 뿌리를 무속에서 찾고 ‘조선시대’라는 비교적 근래의 ‘새로운 의례’로 유교 상장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교는 정상적 죽음을, 무속 및 불교 등의 죽음 의례가 비정상적 죽음을 기린다는 분류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고대의 영혼관이 부계 원리와 결합되어 유교적 제사에서 추상화·체계화를 거쳐 상징화되었다. 사람이 사망하여 소상, 대상을 거쳐 기제²²⁾와 차례를 지내는 단계까지는 정화가 필요하다. 4대까지의 조상은 집합적인 조상신으로 통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자 개체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5대 이상의 조상의 경우, 즉 가호하는 조상신으로 전환된 시제²³⁾를 받는 조상은 초혼재생의 관념을 통해 산 자에게 인식된다. 초혼재생 관념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초혼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재생에 의해 영혼이 유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샤머니즘의 초혼 의식에서 영반이로 사용된 두개골이 신주(神主)로, 영매의 혼수상태(trance)를 일으키는 초혼 의식이 유교식 제사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화 관념이 오늘날의 죽음 의례에서는 두드러지지 않고 곳을 통해 유교 의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현된다고 정리되는 동시에 위에서 정리한 양상으로 제사에 흡수되어 있다고도 논의된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정

21) 영혼과 샤먼의 관계를 살필 때 샤먼이 초자연적인 영역을 향하여 확대하려는 상승적 운동이 포착되는 형태를 ‘탈혼(ecstasy)’형과 샤먼을 향해 초자연적인 영역을 집중하려고 하는 하강적 운동의 형태를 ‘빙의(possesion)’형으로 구분된다. 세키네 히데유키는 탈혼 관념이 유목문화에서 유래했으며 진혼의식의 기저를 이룬다고 본다.

22) 돌아가신 조상 기일에 지내는 제사가 기제(忌祭)다. 여기서 기일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고조까지의 조상을 포함하는 친속이 사망한 날이다. 기제를 주관하는 제주는 종손이다(이두현 장주근 이광규 2004: 117).

23) 4대 봉사가 끝나 기제를 잠수시지 못하는 조상, 즉 5대조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 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을 위해 드리는 제사로 묘소에서 주로 행해져 묘제라고도 한다. 이 시제를 위해 조직된 것이 문중이다. 기제나 차례와는 달리 낮에 지내고 집 밖에서 지내는 제사라 성씨와 문중을 외부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제수의 종류와 높이 등은 문중과 조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설은 기제와 같다(이두현 장주근 이광규 2004: 119-120).

화 관념이 두드러지는 장법인 복장(複葬), 즉 이중장 역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시신을 1차로 매장한 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뼈를 추려 다시 매장하는 형태인 이중장은 전라도의 지석묘나 일본의 모가리(殯) 등에서 확인된다. 시신에서 뼈만 남을 때까지는 사자의 영혼이 지상에 머물고 있으며 따라서 산 자에게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정화 관념에 대한 설명은 에르츠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내륙인인 다약(Dayak)족의 이중장례식을 통해 행하는 죽음 표상에 대한 설명과 통한다.

다약족은 시체를 바로 매장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처에 다소 긴 시간 동안 놓아두다가 최종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시체를 전시하며 일차 장례식에서 이차 장례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이중 장례식이 거행되지 않는 경우 애도 기간이 일정한 시간 길이로 고정되기 마련이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완성되고, 영혼이 지상을 떠나고, 생자의 애도가 끝나게 된다. 죽음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삶의 시간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일차 장례식을 통해 개별성의 상징인 살이 제거된다. 이렇게 시신이 격변하는 상황을 산 자가 함께 하며 죽음에 오염된 존재로 각종 금기에 포획된 상태로 지내야 하는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데 지도자였던 이의 최종 장례식까지는 한 세기가 소요되기도 한다. 순수하게 뼈가 남을 때까지 시신의 살이 허물어지고 부패하는 상태는 불안정한 사자의 영혼, 그리고 생자의 상태와 긴밀하게 조용하게 된다. 시체가 완전히 부패해서 뼈만 남게 될 때까지 이차 장례식이 지연되는데 이는 일차 장례식 동안 사자의 영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로 간주된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불안정한 영혼에게 확고한 존재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장례식의 목적이다(에르츠 2021).

사자의 영혼이 불안정한 기간을 반 개념은 분리 의례 후 ‘전이기’라고 칭하며 죽은 자의 전이기와 산 자의 전이기가 대응되는 경우 망자가 죽음의 세계에 통합될 때 살아 있는 자 역시 사회에의 재통합 의례(탈상 의례)를 통해 여기서 나오게 된다고 분석한다(반 개념 1992: 198). 또한

장례 의례에서 전이 기간이 ‘물리적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리브족과 마다가스카르 베칠리오족 이중장 의례를 함께 제시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은 사자에게 죽음 세계로의 여행 시 필요한 물건들인 옷, 음식, 도구 등을 갖춰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사자의 공간적 이동을 통해 죽은 자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앞서 논의한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을 반 개념은 ‘세례받지 못하고 이롭지어지지 않은 어린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사람, 집 없이 죽은 자, 가족이 없는 자, 자살한 자, 여행 중에 죽은 자, 벼락 맞아 죽은 자, 금기를 위반해서 죽은 자 등등’으로 정리한다. 이들은 죽은 자의 세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도 재통합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로 명명된다. 그 어떤 세계에도 속할 수 없기에 위협적일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이들의 복수심을 잠재울 수 있다(반 개념 1992).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상장례 절차에서는 장례 이후 절차가 소략하게 처리되어 졸곡 이후 길제까지 과정이 생략되고 초우제나 삼우제 후 혹은 불교 사십구재를 끝으로 탈상한다. 죽음 의례의 통과의례로서의 의미가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시체를 처리하는 처리로만 축소되었다. 이는 산 자의 존재 변화와 죽음 수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힘들어졌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례 후 절차의 간소화는 가정의례준칙에서 장례 이후의 절차를 위령제로 축소시킨 것과 현대 사회 생활 양식, 영혼관과도 관계가 있다.

강정원·이도정은 무연고묘에 대한 법 검토 과정에서 ‘비정상적 죽음’에 대한 연구의 계보를 정리하며 비정상적 죽음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 자의 노력에 의해 일정한 의례를 거치면 ‘정상적 죽음’으로 지위 변환이 가능했다고 논한다(강정원·이도정 2017: 16). 또한 오늘날에는 비정상적 죽음을 맞이한 죽은 자의 영혼이 곧 원혼이 된다는 관념의 문제가 망자의 시신과 무덤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영역의 문제로 대체되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이는 곧 ‘영혼’이 오늘날의 민속세계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전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죽음권’이 죽음의 양상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

다고 요청되는데, 이는 무연고사가 '정상적 죽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방향과 함께 제시된다. 이러한 지향은, 죽음의 조건과 정황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칭하는 명명법의 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논의될 수 있다.

제 3 절 관리의 대상이 된 무연고사

소외된 망자를 위한 죽음 의례가 여제나 동제로 치러졌던 조선시대와 현행 공영장례의 성립 시점 사이에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공영장례가 성립되기 전 '무연고사망자'는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만 집중해 명시되었다. 따라서 '무연고사망자'가 어떻게 인식되고 대상화되었는지는 장묘법을 살피는 과정에서 규명 가능해진다.

한국 장묘제의 변화가 제도적 주도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은 김명희의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탐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예제에 따른 매장제가 보급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장묘제가 법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리고 2000년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 사자 처리 방식은 매장, 비정상적인 방식은 화장²⁴⁾이라는 도식을 깨고 화장을 보편적인 장법으로 만드는 데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는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흥사대부가 유교식 매장제를 제도화했고 이에 따라 3~4세기에 걸쳐 민간에서의 수용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개발 경영을 위해 묘지를 정책적 제도적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에서 현대까지의 한국 장묘제 변화를 볼 때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정치구조가 수직적 지배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화의 주체와 기제가 가시화되지만 현대 국가의 경우 대의제로 지배 주체와 대상이 혼합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묘제 형성, 변화의 주체, 기제, 의도 파악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명희는 푸코의 통치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장법에 대한 통제가 근대 국가의 통치 기술 특징이라고 논한다. 공중위생

24) 조선시대 송유억불 정책에 의해 매장이 지배적인 장법이 되고 화장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혹은 무연고자의 시신처리법 등 정상적이지 못한 죽음을 처리하는 장법' 정도로 인식되었다(김시덕 2005).

과 의학, 인구와 도시 공간 등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데 있어 생산성을 위한 인구 통치는 규범과 처벌 대신 보상적 장려적 성격의 법을 동원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장관련 법의 제정 역시 사망 후 거처에 이르는 규범과 처벌 대신 관리 차원에서 실행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장묘제는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지원되는 문화체계이기도 했다(김명희 2003).

일제강점기에 제시된 법령에서부터 장묘제와 무연고사의 연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장묘제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화로 무연고묘는 외곽으로 밀려났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묘지· 화장장· 매장및 화장취제규칙」(이후 묘지규칙)을 제정하고 전국 각 지역에 공동묘지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 묘지규칙에 ‘무연분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묘지규칙은 각 묘지에 대한 관리자를 정하도록 하였고, 관리자가 그 소유자를 모르는 분묘로 1년 이상 이를 신고하여 고시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분묘를 ‘무연분묘’라고 규정했다(강정원·이도정 2015).

일제강점기 공동묘지 설치의 논리는 ‘묘지 통제를 통한 식민지의 근대화 문명화’와 ‘공동 묘제를 통한 효율과 공익의 추구’였다. 일제는 장묘제를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간주했고 시신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장을 강제했다(정일영 2014). 이도정 역시 조상의 공간과 소외된 망자의 공간이 재편된 계기가 묘지규칙 제정 후 전국 각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였다고 설명한다. 묘지규칙 제정의 배경에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의 조선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 시행이 존재했다. 당시 토지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조사 작업을 통해 식민통치의 기반을 닦으려 했던 것이다. 또한 임야조사사업의 연장 차원에서 무주공산에 가난한 사람들이 묘를 만들던 관행을 금지시켰다. 이도정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주민들이 공동지 조성 초기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묻었으나 망자를 문중 선상으로 몰래 옮긴 주민들의 기억을 전달한다. 이러한 일제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1919년에는 선산 있는 이들은 선산에 묻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공동지에 묻을 수 있도록 묘지규칙이 개정된다(이도정 2015). 즉 일제의

정책이 저항 없이 반영된 대상은 무연고사망자였다.

법제도의 관점에서는 ‘무연고사망자’에 준하는 존재로 ‘행려사망자’가 소환될 수 있다(김진선 2019). ‘연고자’라는 규정이 2001년 제정된 장사법에서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는 장사가 치러지지 않은 사자(死者)를 단일하게 묶어 범주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진선은 조선총독부 관보 훈령에서 등장하는 ‘행려병자 및 행려사망인’의 존재에서부터 ‘무연고사망자’의 연원을 찾는다.

‘행려병자 및 행려사망인 취급규정’은 명치 시대 일본에서 1899년 제정된 법률 제93호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행려자들의 구호 방법, 사망자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며 일본에서는 현행법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행려사망’ 개념이 오늘날의 무연고사 개념과 대응된다. 본래 ‘나그네가 되어 돌아다님’을 뜻했던 ‘행려’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는 일정한 거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빈곤한 생활을 하는 자를 지시하는 뜻으로 사용됐고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부터 노숙인과 유사한 개념이 되었다. ‘행려 중 사망하여 인취할 자가 없는 자’가 ‘행려사망자’가 되었다. 행려사망자 시신에 대한 책임은 부양의무자 및 상속인,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었으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기관장의 책임이 되었고 행려사망자 시신은 주로 매장 처리되었다.

일제의 묘지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1961년 제정된 ‘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후 ‘매장법’)은 보건·위생적 차원에서 작동했다. 매장법 제 6조 1항에서 “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지는데, 시신에 대한 권리와 책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를 상정했다는 점에서 ‘무연고사’와 통한다. 그런데 현 ‘장사법’과의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 시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 즉 현행법의 ‘연고자’ 조건 법조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신을 처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 시체현존지의 구청장·시장·군수가 매장 또는 화장으로써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됐으며 시신들은 거의 가매장 뒤 6개월이 경과하면 화장 처리 되었다. 매장법은 2000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으로 전면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었

는데 제6조 ‘시체처리자불명등’은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라는 조항으로 대체되었고 이로써 장사법에 ‘무연고’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또한 장사법은 ‘연고자 개념’을 상세하게 규정하며 무연고사의 시신 처리 주체는 시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신 처리 방법과 기간 공고체계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1962년에 제정된 ‘시체해부보존법’의 제11조가 ‘인수자가 없는 시체’을 해부실습용 시신, 즉 커데버(cadaver)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과대학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장사법 개정 전 매장법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를 취급하는 최상위 법령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5년 이루어진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로의 개정은 무연고사망자의 시신 교부를 의무화함으로써 강제력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구청 실무자들이 이에 따라 시신 교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는 않았고, 해부실습용 시신의 부족으로 의과대학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시신을 구청에서 인수받기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망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이 법에 대해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이 내려졌고 시체해부법 내 무연고 시신 해부 관련 조항 모두 2016년 개정시 삭제되었다. 사망자 본인의 반대의사 표시 수단이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않고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위헌 판결의 근거였다. 여기서 ‘공익’에 상응하는 해부용 시신의 제공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신기증의 증가에 의해 달성된 배경 역시 의식할 필요가 있다(김진선 2019:10-30). 이에 대해 송병기는 이러한 자발적 시신기증에 의해 해부용 시체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한다(송병기 2023).

전통적 죽음 의례에서 관건이 되었던 ‘영혼’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개체로서의 기본권도 무연고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서는 철저히 묵시되었다. 이러한 면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공영장례는 제도화되었다. 따라서 공영장례 현장은 애초에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규정을 행하는 장사법의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기존 법제도의 맹점을 극복하

기 위한 실천들을 담보해내는 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제 3 장 공영장례 현장에서의 죽음 의례 실천 양상

서울시의 공영장례 현장이 결코 전국의 공영장례 현장들의 대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시작해야겠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3년 기준으로 서울 외 지자체에서의 사정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공영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거나 조례만 존재하거나 장례 지원을 비로소 시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그리다’ 빈소에서 하루에 두 차례 치러지는 의례와 이 의례 배후의 체계는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수년간 정교화 되었다. 비영리법인 K가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역할까지 맡아 구청 주무관으로 대표되는 행정주체, 무연고사 시신의 운구와 의전을 담당하는 상조회사, 무연고사망자의 가족 및 지인,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활동가와 종교봉사자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결을 지원하며 지금의 공영장례 현장 성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K와 같은 단위가 부재하는 지자체에서는 장례업체 대표가 공영장례를 추진하고 의식에서 상주를 맡거나²⁵⁾, 연습 단계 마지막에 간단히 사별자들이 배웅하는 식²⁶⁾으로 특정 주체의 의지에 의해 의례가 성사되거나 화장 전 간소한 의식이 더해진다. 이렇게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이 국내 공영장례 현장의 전형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서울에서 가장 많은 무연고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²⁷⁾, 무연고사에 대한 ‘처리’가 제도에 의한 ‘의례’로 전환되어온 역동을 가장 첨

25) 손인준(경남일보), “부산시, 무연고자 첫 ‘공영장례’ 지원”, 2022.07.31.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440>

26) 조아서(MS Today) “[웰다잉 과제들] 상. 무연고 사망은 ‘사회적 타살’”, 2021.12.26.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06>

27) 2022년 서울시 무연고사망자는 전국 무연고사망자 4400여 명 중 공영장례로 1072명(기초생활수급자 810명 포함)을 지원했다.

예하게 보여주는 현장인 만큼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현재 ‘그리다’ 빈소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통해 이를 우선 드러내고 공영장례로 기려지는 존재들을 살펴볼 것이다. ‘무연고사’라는 개념이 혈연 중심적 ‘연고자’ 개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연고 시신이 안치되는 장례식장과 자체적으로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추모식을 진행하는 단체 S, 안양의 공영장례, 단체 K가 2019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도 함께 살필 것이다.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이 공영장례 빈소에 도달하기까지는 평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이 장례를 통해 의미화되기까지의 시간이 유예된다. 공영장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과 유예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영장례가 고유하게 지니는 성격들을 규명해볼 것이다.

제 1 절 공영장례 현장을 구성하는 현실

1. 서울시 ‘그리다’ 빈소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 자리한 ‘그리다’ 빈소는 2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다.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조례가 제정되고, 그해 5월 유족대기실 앞 공간에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전용 빈소가 마련되었다. 이 빈소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단체 K가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실천하기 위해 거쳐 온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공영장례의 제도화와 빈소가 생기며 발생한 변화를 확인해볼 것이다. 최근 서울시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서울시립승화원 외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에 추가 빈소가 마련된 상황이다. 서울 공영장례 현장의 이원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만큼 현재의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인 ‘그리다’ 빈소에서 의례가 실천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현재 K의 상임이사 E씨가 국제엠네스티 활동가로 일하고 있던 2011년,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그 해 6월 단체가 발기했다. 2011년 당시 평균 장례비용은 1,380만원이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는 75만원이라 실질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기 어려운 현실임을 인식하고 협약된 장례식장에서 장제급여에 K의 지원금 50만원을 더한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을 하게 된다. 같은 해 11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연고사망자로 확정처리 된 고인에 대해 장례식을 치르겠냐는 연락을 받고, 단체 K는 장례 없이 직장 처리되는 ‘무연고사망자’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 2014년 단체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고 독거노인과의 결연장례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도 무연고사망자의 처리를 구청과 운구업체가 담당했던 서울시에서는 무연고사망자 발생 정보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하기에 장례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무연고사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직접 시신을 처리하고 대금을 관공서에 청구하는 체계 하에 있던 인천에서, 장례식장 측의 의뢰가 있는 경우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을 행하게 됐다. 당시 장례 의식의 집행은 장례식장에 일임하고 제사상은 상주가 직접 장례식장에 비용을 부담하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K의 지원은 협약기관과 지원을 요청한 이들을 ‘연결’해주는 데 국한되었다(김진선 2019:68-71).

2015년 무연고사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사업’이 포함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했고, 여기에 K가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이 시작된다.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K가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장례 ‘의례’를 지원하는 단체의 역할 때문에 활동의 목적이 ‘영리적’일 것이라는 행정 주체의 판단 때문이었다. 2014년 전 해인 2013년에도 K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장례를 지원하는 단체가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때부터 무연고사망자의 시신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무연고사망자 확정 시 공문을 단체가 수신하는 게 가능해진다. 연락체계가 처음부터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까지 구청과 함께 무연고사망자 시신을 처리하는 주체였던 운구업자를 통해 무연고사망자 발생에 대한 소식을 알아내야 하기도 했다. 또한 장례식장과 협의해 빈소를 마련하는 게 초기의 관행이었으나 시신 운구와 화장 일정을 관장하던 당시 운구업자와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소를 차릴 시간을 정하는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례식장 측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인이 안치된 장례식장 빈소가 만실이어서 안치실 앞이나 안치실 바닥에서 영결식을 진행하기도 했다(김진선 2019: 75). 장례 시행이 급박한 환경에서 치러지다보니 고인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의례로서의 장례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을 인식한 K는 2016년 2월 승화원 가족 대기실에 빈소를 차릴 수 있을지를 문의했고 이에 대한 승낙을 얻게 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인을 위한 예식의 시행이 가능해졌다. 2018년 이전까지는 ‘그리다’ 빈소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기에 무연고사망자의 화장로 번호가 할당이 되면 여기에 대응하는 가족대기실에 찾아가 빈소를 설치하는 식이었다. 이마저도 화장신청을 하는 권한이 운구업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장례물품과 공문을 챙겨 승화원에 도착한 K의 활동가는 운구업자에게 찾아가 유족대기실 배정 여부를 확인해야했다(ibid.: 56). 여기서 확인할 바는 지금의 ‘그리다’ 빈소의 형식, 그리고 공영장례 절차의 근간은, 공영장례를 위한 인프라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K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구축해나갔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여제’와 오늘날 공영장례의 근본적인 차이도 여기서 비롯된다. ‘여제’의 주관자는 무사귀신을 통솔하는 성황을 통해 죽은 백성을 구휼하는 ‘왕’이었다. 그러나 현대판 ‘여제’라고 칭해도 무방한 공영장례는 제도에 의해 그 형식과 이념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동과 실천 과정에서 생성되어간 것이다.

2015년 서울시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사업’에 참여한 단위로는

단체 S도 있었다. S에서는 현재 시의 지원 없이 정기적으로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추모 의식을 자체적으로 치르고 있다. 공영장례 빈소에 차려진 상의 진설과 고인예식 절차에 대해 자문을 행하기도 했으나 K와 같이 현행 공영장례 제도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지 않다. 독자적으로 ‘삼우제’에 해당하는 의례가 지금의 공영장례에서 치러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추모식을 매달 두 번째 주 수요일에 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의 차이는 장례와 연동된 이념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상술할 예정이다. 2015년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현재 공영장례 의전을 담당하는 A사 장례지도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사례 Ⅲ-1]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 무연고를 처리하고 (관공서에) 올리면 어느 정도 비용을 댔죠. 이게 안치료 명목은 아니고 그러면 화장한 것에 대해서, 시신 화장되기 전까지 뭐가 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인 비용에 대한 거...장례식장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손대봐야 돈이라는 게 미약하게 나오니까. 그때는 한 사람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하여튼 그 서울 여러 구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 한 사람이...처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고 있어...지금은 A사가 하는 일을 그 때는 한 사람이. 장례업체도 아니에요. 구청이랑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때는 구청에서 처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처리해 주면 구청에서 얼마씩 준 거야 한 구당 얼마씩 그 사람이 말하자면 장례업자라고 해야 되는...그러다가 이게 K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S에서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분기별로 합동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지도사 Y씨와의 면담 중)

이와 같이 지금의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인 ‘그리다’ 빈소는 K의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 실천의 과정에서 그 틀을 갖추어 나가며 만들어진 현장이다. 이전의 무연고사망자 시신의 관리와 처리 주체는 구청과 운구

업자였지만 ‘의례’의 경우 시민 단체가 주체로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점이 공영장례 조례 제정 이전의 상황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지점은 공영장례가 제도에 의해 수행되는 의례임에도 체계성 바깥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현상과 연결된다. 상장례는 민속문화 내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평생의례의 의례적 형태는 권력집단의 통치이념에 따라 다른 종교적 전통 내 의례로 권장되거나 제도적으로 강요되기도 했다. 고려말 충렬왕 16년(1290년)에 성리학과 함께 들어온 주희의 『가례』가 태조7년(1398년) 불교식 제례의 폐지가 명해진 후 조선시대 예교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며 관혼상제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맥락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4년 발표된 ‘의례준칙’ 역시 의례의 간소화를 ‘법적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었다. 해방 후 의례의 간소화와 허례허식 일소를 목적으로 거듭 개정되어 발표된 가정의례준칙 역시 의례 체계에 대한 정책적 강제의 일환이었다(김시덕 2001). 공영장례 또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후 정책의 틀 안에서 존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체계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정책적·역사적 의례 정책들과 공영장례의 발생 연원이 다르다는 점은 공영장례의 성립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고 그 해 5월,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 유족대기실이 공영장례 전용 빈소로 전환됐다. ‘그리다’ 빈소가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은 화장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1930년 홍제동에 설립되었던 것이 1970년 지금의 위치인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으로 이전되면서 ‘벽제화장장’ 혹은 ‘벽제화장터’라고 오랫동안 불렸다. 사망 장소에서 안치실로 옮겨진 망자가 ‘무연고사망자’로 확정된 다음 입관 후 운구되어 도달하는 곳이 서울시립승화원이다.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그리다’ 빈소 아래 1층 운구전용 통로 정문 앞 공간에서 운구차에서 승화원 카트로 옮겨진 뒤 화장로로 직행한다. 무연고사망자의 신원과 시신 인수에 대한 행정적 처리를 담당하는 구청 주무관과 공영장례 의전을 담당하는 상조회사 A,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K와의 서류 교신으로 망자의 시신 처리 마무리 단계를 담당하는 주체가

바로 서울시립승화원이기도 하다.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가 ‘제도화’되면서 K가 후원금으로 직접 했던 장례식 준비 업무를 의전 업체가 대행하게 된다. 현재 의전을 담당하는 상조회사 A의 공영장례팀은 2020년부터 해마다 용역 체결을 하다 2023년부터는 2년 주기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 공영장례팀은 빈소 내 모든 물품에 대한 준비와 관리 뿐 아니라 입관, 운구, 화장 신청, 유골 처리, 무연고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과의 행정 처리까지 담당한다. 2020년부터 공영장례 의전을 담당하는 A 상조회사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위탁받게 되면서 공영장례팀을 꾸렸다. 총 네 명으로 구성된 팀의 직원들 가운데 두세 명씩 교대로 빈소에 나와 의례를 지원하고, 돌아가며 무연고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입관과 운구를 진행하게 된다. A사가 직접 연습 및 입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양주 병원에 시신이 안치된다. 현재 공영장례팀 직원들은 오랫동안 다른 일을 하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조회사 내에서 ‘협지’에 해당하는 공영장례팀에 배치되었다. 공영장례팀이 ‘협지’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연고사망자들의 시신이 고립사하고 시간이 경과된 후 발견된 경우가 다수라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공영장례팀의 한 장례지도사는 “젊은 장례지도사들은 시신을 보고는 도망가 버린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빈소에 있는 시간 외에 운구를 위해 운전해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운구를 하러 가야하는 병원이 있는 지역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운전하기 편한 길과 운전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빈소에서 자주 논하곤 한다. 공영장례팀이 입관과 운구라는 시신의 처리와 관련한 다른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락 속에서 매일의 공영장례 일정을 결정짓고 있다.

‘그리다’ 빈소는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누구나 방문하여 조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당일 기리는 고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기재된 부고가 빈소 바깥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대리상주, 운구 등의 장례지원을 자원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로로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들과 종교봉사자들이 식이 시작하는 시간 전에 빈소에 도착한다. 이렇게 고인과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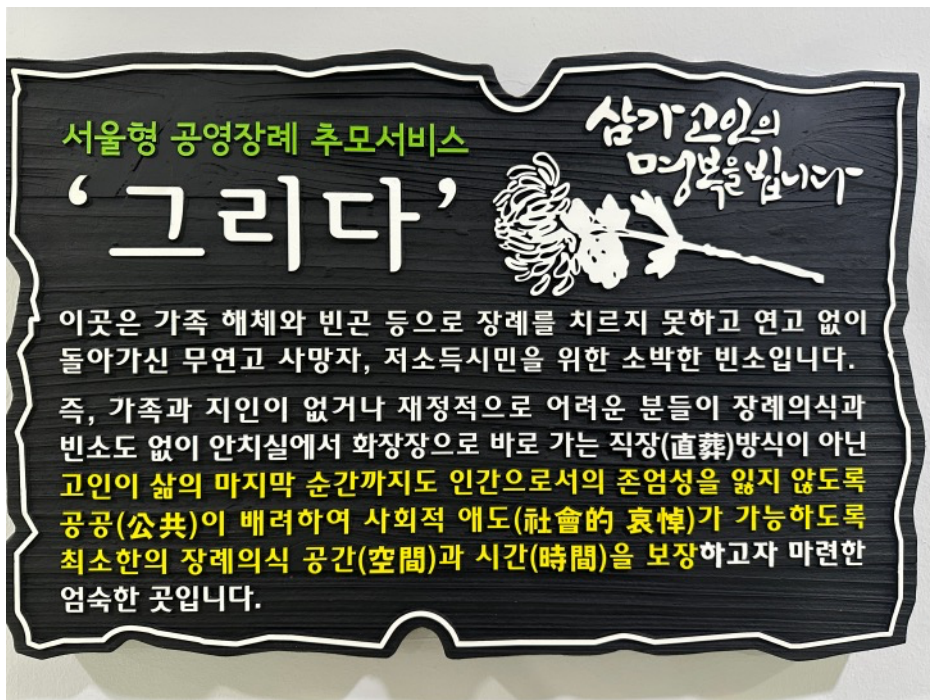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립승화원 1층에 있는 '그리다' 빈소 표지판



[그림 3] 빈소 앞 '그리다' 빈소에 대한 안내 입간판 및 현판

전에는 연고가 없던 이들이 빈소를 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두 차례 장례가 치러지며 두 명의 고인을 한번에 기리는 합동장 형식으로 고인 예식이 진행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한 기간인 2023년 1월에서 3월 사이 2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한 번에 세 명씩, 하루에 총 여섯 명의 고인을 기리기도 했다. 코로나가 확산된 기간에 사망자가 급증했을 때에도 종종 이렇게 진행해야만 하는 기간이 있었다. 무연고사망자의 유족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공영장례의 형식이 일반 장례의 형식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선 합동장으로 의례가 진행된다는 점에 당혹스러워한다. K측에서 발송하는 문자에 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만 두 사람을 위한 의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줄 예상했다며 ‘한꺼번에’ 진행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때로는 고인의 생전 종교와 다른 종교예식이 진행되는 데 거부감을 표하기도 한다.



[그림 4] ‘그리다’ 빈소에 대한 안내 현판

K의 활동가와 A사 공영장례팀 직원 두 세 명이 빈소에 고정적으로 나 오고 있다. 이렇게 공영장례 현장이 성립하도록 활동하는 단위의 직원들 3-4명에 자원봉사자 1-2명, 요일별로 다른 종교봉사자들이 빈소에 공존 한다. 고인의 유족이나 지인이 오지 않는 경우에도 이 5명 남짓한 인원 만으로도 빈소는 꽉 찬다. 간혹 고인의 지인과 유족이 오는 경우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각자의 소지품과 옷가지를 정리하여 여분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해진다.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장례지원을 위한 자원활동 신청을 하면 장례 일정 전에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서 구청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공문을 받고 A사에 화장 일정을 확인하여 장례 일정에 대한 정보 및 부고를 자원활동 신청자에게 발송하는 것이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에 돌아가신 무명 김*규 님의 공영장례 일정 안내 부고입니다.

○ 일시: 2023년 *월 *일(수)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 요청

○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장례식은 두 분을 함께 모시는 합동 장례식으로 무명 김만규 님²⁸⁾과 조** 님을 함께 모실 예정입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이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의 홈페이지(<http://goodn anum.or.kr/>)에는 장례일정 항목에 고인의 나이와 거주지, 사망 일자와 장소, 사인, 유골 처리 방식 등과 같이 더 상세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캘린더 모양의 일정표에 날짜별로 기리게 되는 고인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뜬다.

[무명 김*규 님, 조** 님 장례]

일시: 2023년 *월 1*일 @ 10:00 오전 - 1:00 오후

장소: 서울시립승화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2023년 *월 *일(수) 김** 님, 조**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

28)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이와 같이 이름을 붙이되 앞에 ‘무명’을 기재하여 신원 미상임을 드러낸다.

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례 일정 : 2023년 *월 *일(수) 10:00 (서울시립승화원 2층 공영장례빈소)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1668-341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무명 김*규(남) 님은 193*년 생으로 서울시 **구에서 사시다 지난 2022년 1*월 1*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입니다.

무명 김*규 님의 유골은 무연고 추모의 집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 조**(남) 님은 19**년 생으로 서울시 **구에서 사시다 지난 2022년 1*월 *일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입니다. 29)

조** 님의 유골은 승화원 내 유택동산에 산골될 예정입니다.

무명 김*규 님, 조** 님의 장례는 시설관리공단, A, K에서 지원합니다.

※빈소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건물 2층 7-9번 가족대기실 앞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빈소가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시민 장례를 'A'가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는 'A'와 협력하여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함께 진행합니다.

무연고사망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 이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천주교·불교 중 참여 가능한 종교방식으로 종교예식 진행

[그림 5] 1365 자원봉사포털에 올라와있는 장례절차에 대한 안내 사진

29) 2023년 5월부터는 고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사인과 사망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다.

K에서 부고를 게재하는 날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 역시 무연고사 부고를 게재하기 위해 마련한 메뉴에 동일한 부고를 올리고 있다.

오전 장례의 경우 10시에 고인 예식, 10시35분 시신 화장로로 운구, 12시 화장된 유골 수골, 12시30분 유택동산에서 산골 또는 봉안 순으로 진행되어 예식 준비시간을 30분 정도 포함할 시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오후 장례 역시 12시 30분에 준비가 시작되는 것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산골이 이루어지는 3시 30분까지 비슷하게 시간이 경과된다. 운구 전 고인 예식과 운구 후 종교 예식이 생김으로 인해 공영장례 빈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들에 의해 고인을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며 산골 이전 과정까지 장례참여자들이 동행한다는 점이 공영장례 조례로 가능해진 변화다.

고인 예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오후 1시 이전까지는 빈소의 문이 열려 있다. 조문을 원하는 시민이 빈소에 들어와 원하는 방식으로 추모를 하고 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고인 예식을 시작할 시간이 임박하면 K의 활동가가 장례참여자에게 상주가 되어주기를 청한다. 자원봉사를 위해 빈소를 찾은, 고인과 연고가 없는 이들이 상주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오는 경우 상주를 맡을 사람이 묻고, 이들의 의사에 따라 상주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서 고인 예식에서 조서 낭독을 할 사람을 정한다. 이 사항들이 결정되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부고를 통해 공지된 고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참여자들과 공유한다.

“지금부터 김** 님과 최** 님의 장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님은 19**년생으로 서울시 **구에 사시다 지난 2022년 *월 *일 사시던 곳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미상입니다. 김** 님의 유골은 장례주관자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최** 님은 19**년생으로 서울시 **구에 사시다 지난 2022년 *월 *일 사시던 곳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입니다. 최** 님의 유골은 무연고 추모의 집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김** 님과 최** 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이 끝나면 상주를 맡은 이들에게 고인을 위해 향을 피우게 하며 고인 예식이 시작된다. 향으로 고인의 혼을 부르는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고인의 마지막 식사를 위한 상식(上食)³⁰⁾을 올린다. 밥그릇을 열고 수저를 놓아 고인에게 식사를 올리는 ‘개반삼시(開飯插匙)’³¹⁾가 이루어진 뒤에는 상주가 나와 고인에게 술을 올리고 큰절로 인사한다. 이때 고인의 지인이나 가족이 온 경우 이들에게 “혹시 술 한 잔 올리시겠어요?” 라고 묻는다. 술을 올리길 원하는 이는 상주와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아 장례지도사가 따라주는 술을 고인에게 올린다. 술을 올린 후 고인에게 전하는 인사를 소리내어 전달하는 사별자도 있다. 다음으로는 모두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달라고 청하고 축문을 읽는다.

“2023년 작년 *월 **일 서울시 공영 장례 참석자는 김** 님과 최** 님 영전에 삼가 고합니다. 아무리 슬퍼도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외롭고 힘들었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영원히 가시는 길이 아쉬워 이렇게 술 한 잔 올려드렸습니다. 잠시 후면 장지로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으나 고이 길 떠나소서.”

축문을 읽은 후에는 모두 일어나서 고인에게 재배하게 한다. 이때, “종교에 따라서는 묵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른다. 재배 후에는 몇 분간 “식사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일러 장례지도사가 수저를 거두고 그릇을 물리기 이전에 몇 분간 시간을 확보한다. 이후 승냥을 올려 ‘헌다(獻茶)’³²⁾를 행한다. 이어서는 조사 낭독이 있다.

30) 본래 장사가 치러지는 기간 즉 사망 후부터 발인이 이루어지기까지 고인을 생시와 같이 모시며 올리는 식사가 조석전이고 발인 후 탈상까지 집에서 차리는 음식이 상식이다. 오늘날 3일 만에 탈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식은 잘 올리지 않는 게 현실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조석전과 상식을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2-3번 상차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31) ①밥(배)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는다. ②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하여 중앙에 꽂음

32) ①국그릇을 물그릇으로 바꾸어 올리고 ②밥을 조금씩 3번 떠서 말아놓음(숟가락을 물그릇에 담가 됨) ③숟가락 드실 동안 기다림



[그림 6] 서울시 공영장례 빈소 안 전경

“조사, 김**님과 최**님을 떠나보내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사무치는 시간을 배웁니다. 잊을 수 없을 듯한 생생한 기억들을 배움하며 진심으로 떠나보냅니다. 한 송이 꽃처럼 화사했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삶은 떠나간 빈자리를 통해 사무치도록 그리운 만남을 새로 짓습니다. 그런 당신을 그리워하며 기억하며 이 세상 미련일랑 다 접어 두고 잘 가시라 국화꽃 한 송이 올려놓으며 빌고 또 빌어봅니다. 당신이 간절히 소망했던 모든 일들 못다 이룬 꿈들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모든 일들 함께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편히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당신을 배울 수 있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조사 낭독이 끝나면 참여자들에게 국화꽃이 한 송이씩 돌아가고, 한 사람씩 제사상으로 나와 헌화하도록 한다. 헌화 후 보통 예식이 끝나는데 수녀님이나 목사님이 참여한 날의 경우 고인을 위한 기도까지 이루어진 뒤 마무리된다. 염불봉사단이 오는 날에는 운구 이후 자체적으로 한 시간에 육박하는 긴 의례를 집행하기 때문에 고인예식 직후에는 기도하지



[그림 7] 빈소 뒷벽에 붙여 있는 고인에게 보내는 인사의 글들

않는다. 이렇게 고인예식이 치러지는 데 대략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예식에 대한 자문은 S에 의해 이루어졌다.³³⁾ 앞서 간략히 논한 바와 같이 2015년 서울시에서 공모했던 비영리단체의 ‘무연고사망자 장례식 사업’에 K와 함께 참여했던 단위이지만 현재 공영장례의 주체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대신 독자적으로 ‘삼우제’에 대응하는 추모식을 주최하고 있고, 이렇게 예법과 관련한 부문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식으로 관여를 했다.

예식이 끝나면 참여자들에게 10시 30분에 운구하러 1층으로 내려갈 예

33) 현재 ‘그리다’ 빈소에서 행해지는 고인예식을 A사 공영장례팀 장례지도사들은 발인식-오늘날에는 관이 장지를 향해 출발하기 전 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영구차 앞에 모셔놓고 행하는 의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예식에 대해 자문을 행했던 S측에서는 영구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의식인 만큼 이러한 정리가 바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통적 절차에서 대응되는 단계를 정확하게 짚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대접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의례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며 기존에 K측이 행해온 의례의 절차에서 시정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정임을 공지한다. 운구 전 빈소에 있는 유족과 지인에게 K의 활동가는 고인이 생전에 어떤 분이었는지 질문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대화를 통해서도 공영장례에 참여하는 고인의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으로 본 지 십 수 년에서 수십 년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드러나곤 한다. 어릴 때의 성격, 오래 전에 헤어지게 된 계기 등에 대해 유족들이 말을 이어가면 활동가는 “무연고사망자 장례, 남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나의 일이 될 줄 몰랐다는 분들이 다수다.”라고 응수하며 고인의 시신을 위임한 유족들의 심적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한 말들을 건넨다.

고인 예식이 끝나면 A사 공영장례팀 장례지도사들은 유골함을 비롯한 용품들을 챙겨 서울시립승화원 건물 중앙 입구 앞에 운구차를 대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다. 승화원 운구 전용 통로에서 배정된 순서에 따라 운구가 되길 기다리게 된다. 차례가 되면 운구차에서 승화원 직원이 가지고 나온 전용 카트에 관을 옮기게 된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카트는 노전실로 이동하고, 장례 참여자들은 고인이 화장되는 화장로 번호의 참관실로 이동해 화장로에 들어가는 관을 보게 된다. 화로의 문이 닫힘으로써 운구의 과정이 마무리된다. 2018년 이전에는 운구가 이루어진 후에 고인예식을 진행했다(김진선 2019: 58-59).

운구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한 언론사의 인턴 기자가 사전 문의 없이 다가와 취재를 원하는데 가능한지를 문의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K의 활동가는 사전에 문의 없이 취재가 불가함을 밝혔고, 고인의 유족들은 강한 분노를 내비쳤다. 기자들이 연락 없이 찾아오거나 사진 촬영한 것을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사진을 기사와 함께 내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운구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고인의 유족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고인의 채무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활동가 G씨가 유족에게 묻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고인의 가족은 시신을 위임한 입장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장례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 없이 연말 혹은 명절에 불쑥 취재를 요청하며 나타나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취재에 동원되는 그림

으로 공영장례 현장을 포착하려는 취재진의 태도에 실무자들은 힘들어하곤 했다.

화장은 약 한 시간동안 이루어지며 이 시간동안 빈소에서는 요일마다 다른 종교 단위에서 오는 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종교예식이 치러진다. 장례 지원을 위해 빈소를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종교 예식에도 참여하고는 했다. 연구자 역시도 불교, 개신교, 가톨릭 종교예식에 모두 참여하여 기도를 함께 올렸다. 스스로를 ‘불가지론자’라고 밝힌 K의 활동가 M씨는 모태신앙이 가톨릭인 연유로 종교봉사자가 없는 날 직접 가톨릭 위령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간혹 빈소를 방문한 고인의 가족이 특정 종교의 방식으로 종교예식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요일별로 종교봉사자들이 오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에 부응하는 종교예식의 집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기할 점은 공영장례 형식 내에서 여러 종교적 전통의 위령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고인예식이 유교식 상장례의 압축된 형태로 치러진 후 수녀님이나 목사님의 기도가 더해지는 방식은 공영장례 고유의 형식을 수용한 종교인의 참여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다. 즉, 공영장례 현장에서는 여러 종교적 의례들이 혼재되어 존재하는데, 단일한 종교 단위의 죽음 의례 집전만을 고수하는 이들에게는 수궁 불가능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개신교 신자들의 경우 고인예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따로 목사님을 모시고 위령 예배를 진행하기도 한다.

종교 예식이 마무리되면 철상이 진행된다. 과일과 제기들을 닦고, 다음 예식을 위해 국과 밥을 갈아 채우는 작업이 A사 공영장례팀 장례지도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음 제사를 위해 준비된 국을 빈소 안 뒤쪽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작은 빈소가 국 냄새로 채워진다. 철상 후 치워진 음식들은 돈의동 쪽방 협동회이나 서울시립승화원 미화원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종교 예식과 철상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화장이 완료된다. 화장이 종결되면 운구 시 할당 받은 해당 번호의 화장로에서 이루어진 화장이 종료되었으니 유족들에게 1층으로 내려와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장례참여자들은 위패와 영정사진과 함께 1층 화장로 앞 참관실



[그림 8] 승화원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위치한 유택동산



[그림 9] 산골 전 유택동산에 놓인 위패와 유골함

에 내려가 화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이 시간동안 종교봉사자들은 고인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화로 문이 열리면 고인의 유골이 보여진다. 이 유골을 추슬러 모은 승화원 직원은 손짓으로 장례 참여자들에게 수골실로 향하면 된다고 알려준다. 명패와 영정사진을 든 상주가 선두에 서서 참여자들은 수골실로 이동한다. 수골실에서 고인의 뼈를 확인시킨 뒤 보철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뼈에 섞여 나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분골할 것인지 여부를 승화원 직원이 마이크로 묻는다. 2018년 7월 이전까지 무연고사망자의 유골은 분골되지 않고 유골함에 담겼으나(김진선 2019: 62) 현재 무연고사망자의 뼈는 모두 분골된다. 무연고 추모의 집에 봉안되거나 장례주관자에게 인수되는 유골은 봉안함에 담기고, 산골 예정인 유골은 목재로 된 함에 담기게 된다. 산골 예정인 유골이 있는 경우 유택동산으로 이동한다. 산골이 이루어지는 동안 종교봉사자들에 의해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방을 소지하고 산골이 이루어지면 전체 장례 의식이 완료된다.

고인 예식부터 산골에 이르기까지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영장례의 구조를 숙지하지 못하고 방문한 고인의 가족들은 앞서 언급한 ‘원하는 종교예식’이 관철되지 못한다는 점을 비롯해 일반적인 장례 절차상 수행되는 단계들이 엄수되지 않는 점에 대해 놀라거나 반응하기도 한다.

[사례 III-2]

예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운구차로 고인 분들 집에 들르곤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는데...저희 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집 앞을 지나갔거든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공영장례에서도 일반 장례랑 똑같이 그 서비스가 되는 줄 알고...리무진 타고...그게 아니라고 설명 하느라...사무실(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서 힘들죠. (K 활동가 G씨와의 면담 중)

빈소에서는 예식 뿐 아니라 고인과 관련한 각종 행정 문서들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진다. 당일 장례를 치르는 고인의 유골이 산골되는지 봉안



[그림 10] 유택동산에서 산골이 이루어지는 모습

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가 구청, A 상조회사,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서 다르게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K의 활동가는 분주해진다. 구청 측에서 고인의 성별을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다. 공문에는 고인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A사 공영장례팀 장례지도사가 고인의 연고자들의 성과 고인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고 사망진단서를 확인해보았을 때 고인의 성별은 여성이었다.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에 기재된 사항들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의 방향성과 의미는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맡고 있는 K에 의해 정리되고 기입되어 왔다. K가 약소하게나마 예식을 주관하던 체제에서 공영장례 제도화로 의견을 전담하는 A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들이 장례 현장에 공존하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현재 공영장례를 통해 구체화되는 의례의 형태와 방향성에 대한 이견도 현장에 존재하게 되었다. 연구자 역시도 공영장례에 대한 현재의 예산이 시신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더 할당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전통 장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앞으로의 공영장례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매년 이루어지던 시와 상조회사와의 계약 주기가 2년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이도 부족하다는 평이 함께 이루어졌다.

[사례 Ⅲ-3]

Y: 일반적인 장례식에서 상조회사에서 마진을 50-70%까지 떼어가는 게 가능한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게 다 장례식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지요. 공영장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가이지 장례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처리에 편하게끔 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연구자: 공영장례조례가 없는 지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장례문화진흥원에 위탁해서 간이빈소가 차려진 ‘별빛버스’ 사업을 작년에 출범시키기도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Y: 그것도 장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방책이죠. 버스에 장례물품을 지방에 신고 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장례식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고인의 유족이 있으면 예식 시작하기 이전에 상주를 세워서 지인과 방문객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A사가 일을 위탁받아 하는 입장이지만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약한다면 (소통에) 참여할 수 있겠죠. 현재는 K가 전담하고 있지만요. (장례지도사 Y씨와의 면담 중)

김시덕은 장례지도사의 ‘집례’ 역할이 소홀히 간주되고 수시나 연습과

같은 시신처리에만 그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김시덕 2007). A사 장례지도사 역시도 장례문화 자체에 대한 지식이 전승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것이 공영장례 향방이 제도적으로 구상될 때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 현황을 문제화하고 있다. 행정 주체들이 장례 문화라는 것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숙고할 만한 지점이지만 동시에 A사 장례지도사가 고려의 대상으로 논하는 ‘장례문화’란 혈연집단 ‘안’에서 조상의 혼을 통해 개인의 영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죽음의례로서의 ‘장례문화’라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영장례에서의 ‘장례문화’는 혈연관계나 전통적 마을공동체에서 이루어지던 근간과 다른 기반 위에서 구축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근간이 다른 만큼 다른 의례의 의미와 이념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공영장례에서 기존의 장례문화를 토대로 한 형태의 구상 제안은 모순을 낳게 된다. 그렇지만 의례라는 것이 가진 특유의 형식성과 전통성은 끊임없이 기존 의례의 관례와 형식을 소환한다. 이에 따라 공영장례가 의례의 ‘전통성’ 외의 다른 이념을 기반으로 성립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 의례의 형태를 여러 채널의 목소리들을 반영하여 구상해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 이를 위해 공영장례와 기존 장례문화의 근간이 되는 단위에 대한 고찰을 우선 할 필요가 있다. 장사법에서 장사를 치르는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무연고사망자’라는 범주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2. ‘무연고’라는 범주와 공영장례

‘무연고사망자’는 보편적으로 가난하고 쓸쓸하게 사망한 이들로 인식된다. 그러나 한 망자가 ‘무연고사망자’라고 확정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기준은 사람들의 통념과 다르게 작동한다. 공영장례 참여자가 안타까움을 느꼈던 고인의 생전 사연들을 볼 때, 통념은 유효한 듯 보인다.

[사례 III-4]

본인이 고립을 선택했다기보다도 사회가 고립을 시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 문제, 이혼 등의 사회적 관계 등의 문제, 사업 실패, 가족 중 누군가 자살을 하는 사건으로 인한 상처 등이 원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 사유도 크고요. 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 한정된 돈만 주니 개인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 누적된 안치료를 다 내야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 때문에 (가족이 존재하더라도) 무연고 장례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듯합니다. (공영장례 자원활동가 L씨의 면담 중)

‘무연고사망자’는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들에 대한 여집합이다. ‘연고자’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인가, ‘무연고사망자’인가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연고자’라는 범주를 배태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 상의 ‘연고자’라는 개념과 ‘무연고사망자’가 확정되기까지의 행정 절차를 짚을 필요가 있다. ‘무연고사망자’라는 정체성에서 핵심 속성을 부여하는 ‘무연고’라는 범주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규명을 해나가고자 한다. 첫째, 무연고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의 죽음인가? 둘째, 무연고사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인가? 셋째, 무연고사가 공통된 속성을 가지는 특정 죽음 현상을 지시하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공영장례가 성립하기까지의 배경과 공영장례가 ‘무연고사망자’를 기리는 죽음의례라는 기존의 규정을 넘어서서 존립하는 형태까지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무연고사망자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사업무 안내」에서는 “①연고자가 없는, ②연고자를 알 수 없는, ③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고자’란 장사법 제 2조 제 16호에 규정된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⑤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⑥형제자매 ⑦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⑧시신

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나열된 순서대로 연고자로서의 우선 순위 부여되며 ⑦, ⑧범위가 2007년 장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추가되어 연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①~⑥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사망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 즉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증명 가능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사망자들도 무연고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장사법이 전면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기 이전까지, 장사법에서의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시체처리자불명등’ 조항 하에 있었다. 즉 ‘무연고’라는 표현은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법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무연고’라는 표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개념의 상세한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의 연고자 규정이 이루어졌다(2019 김진선:16-18).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연고’라는 말의 용례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 즉 ‘인연’이라는 개념과 긴밀하다. 하지만 장사법에서 ‘연고자’는 ‘망인의 유체 및 분묘의 관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 법적 주체’를 지칭한다(이소운 2022: 26). 이러한 연고자 개념은 2001년 장사법 제정을 통해 처음 적시된다. 그리고 이 연고자 개념은 현행 「민법」의 친족 개념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는 (1)8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한다. 장사법 제2조 16호에서는 연고자 범위를 2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친족으로 인정 되는 며느리나 조카는 연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연고자 개념은 친족 개념보다도 더 협소한 범위인 것이다. 이는 장사법 상 연고자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깊은 ‘망인의 분묘 수호 및 관리’와 관련된 권한이 민법과 판례법 체계 안에서 가족 내 제사주재자, 즉 ‘직계-장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다뤄 온 데서 기인한다. 장사법에는 이러한 관념과 관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ibid.:26-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전면 개정된 이후 장사행정 절차와 관련한 법률해석 및 운용 방법, 주요 민원 사례와 판례 등이 수록된 「장사업무 안내」가 발간되었다.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시체의 처리'는 2011년에 업무안내에 포함되었으며 2013년 이후부터 부록으로 시신처리에 관한 관리 서식과 업무체계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박진옥, 2022:36). 2020년에는 법률혼으로 맺어진 배우자와 2촌 내 친족 외에도 장례주관자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명시되었다. 장사법 상 연고자의 마지막 순위에 해당하는 '사실상 시신을 관리하는 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제시된 것이다. ①사실혼 관계, ②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실상 혈연관계, ③조카와 며느리 등의 인척관계, ④장시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거나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 ⑤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경우, ⑥친구, 이웃 같은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다(보건복지부 2020: 210). 2020년 이전까지 K가 '가족 대신 장례' 운동을 통해 혈연관계 외의 지인들 역시 장례 치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온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규성 규범으로서의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고자에게는 '시신 처리 장사시설 관리 의무와 동시에 묘지 분묘 등의 소유권,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장사법 상의 연고자와 「장사업무 안내」가 새롭게 구체적인 예로 제시한 장사주관자들의 지위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이 연고자 간의 위계를 지속시키고 있었다.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장사업무안내」를 통해 장사주관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예로 제시된 이들이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장사업무 안내」는 행정 업무를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업무 매뉴얼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경찰이나 구청 공무원에 의해 고인이 된 배우자에 대한 장사를 치를 수 없다고 잘못 안내를 받는 경우 대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의 개정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덕에 이러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장사법 제2조 제 16호 아

목이 규정하는 연고자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한계다. 장사법 상의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고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 경우 연고자 아닌 이들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장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고자 범주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 한 연고자와 연고자 아닌 이들 간의 위계는 영속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무연고사망자들의 구성을 볼 때에도 ‘무연고사’라는 범주가 가진 문제가 드러난다. 구청은 무연고 사망자를 아예 연고자가 없는 경우, 기록상 가족(부모·형제·배우자·자녀 등)이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찾을 수가 없는 경우,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로 구분한다. 가족, 즉 연고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마지막 경우가 대부분(70% 가량)이다.³⁴ 생전에 무연고자가 아니었으나 사망 후 ‘무연고사망자’화 된 이들이 대다수라는 의미다. 공영장례가 사람들에게 복지제도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 연고자의 시신 위임이 더욱 늘어날 거란 견해도 현장에 존재했다.

[사례 Ⅲ-5]

‘그리다’ 빈소가 활성화 되고 공론화 되어도 문제예요. 옛날에는 유족들이 어떻게든 장례를 치르려고 노력했는데 서울시에서 장례를 잘 해주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는 유족 가족들이 잘 살고 충분히 장례를 치를 능력이 되는데도 노력하지 않거든요. 분당아파트가 주소지이고 BMW타고 왔는데 제 돈으로 장례를 안 치르겠다고 시신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20년 못 봤다고 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무연고사망자로 위임해버리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건 부정적인 파급력이죠. 10년 내 핵가족 시대가 되면 이런 사람들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거예요. (공영장례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죠.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여름, 겨울에 병원에 입원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34) 정현수 임주언(국민일보), “[이슈&탐사] “나도 살기 어려워…” 엄마는 아들의 장례를 포기했다“, 2019.12.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3060>

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내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걸 복지 제도의 남용이라고 봐요. 수급료를 챙기는 요양병원에서도 굳이 이런 이들을 내쫓으려 하지 않고요. 이렇게 병원과 수급자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지고 기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다’ 서비스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200명씩 늘어요. ‘그리다’가 알려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장례지도사 Y씨와의 면담 중)

이러한 의견은 시신을 위임한 연고자들을 ‘연고자답지 못한 연고자’로, 즉 연고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연고자로 바라보는 시선과 이들에 의한 복지제도의 악용³⁵⁾을 우려하는 관점이 함께 담겨있다. 공영장례가 활성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의 근거로 복지제도의 악용하는 이들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장례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보장은 필수적이며 가족만이 장사를 치를 수 있는 현행 규범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례 III-6]

물론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경제적 악용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고인 재산을 차지하면서도 장례비용은 물리지 않으려는 게 악용일 텐데.... 미국에서는 security number를 통해 개인의 모든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이런 게 한국에서 정립된다면 재벌의 건강보험료가 너무 소액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국내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악용도 불가하고요.

친한 친구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법상의 친족만 장사를 치를 수 있다는 법은 문제가

35) 이소윤은 연고자의 경제적 부양능력에 따라 연고자이기를 포기/거부한 ‘가족’이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들과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가족’을 구분하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례를 치를 능력이 있음에도 복지제도를 이용해 장례를 치르는 이들은 도덕적 해이한 가족이며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가족들로 위치지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영장례 자체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자리매김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소윤은 이러한 관점이 단순한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되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보편복지를 향한 가치지향적 실천이 혈연/혼인에 기초한 정상가족규범에 의해 어떻게 미끄러짐을 경험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힌다(이소윤 2023:43-47).

있어요. 친자식보다 이웃사촌과의 관계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장례에 참석하는 고인의 가족들이 풀어놓는 이야기(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불륜 등 대부분 부정적 내용이지만)를 들으면서 드라마나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인 경우는 소수이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고자가 있는데도 무연고자라고 표현한다면 고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를 ‘공영장례’라고 표현하면서 **관련 행정서류상 세부내용에서만 무연고자인 경우와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 경우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영장례 자원활동가 L씨와의 인터뷰 중)

장례참여자들 가운데 고인의 유족이 다수인 경우를 여러 번 목격한 자원활동가가 “진짜 무연고사망자는 잘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K의 활동가는 ‘사정이 있겠죠’ 라고 응수하며 연고자를 찾기까지 누적된 안치료의 액수에 대해 언급했다. 하루에 십 수 만원에 달하는 안치료가 한 달이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시신 위임의 사유로 관계 단절만큼 비중이 큰 ‘경제적 어려움’은 유족의 경제적 상황과 연동하여 이해 가능한 무연고사망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게 된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무연고사가 고독사와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면 실제 한국의 무연고사는 어떠한 죽음인가, 라는 질문이 새롭게 제기된다. 2019년 국민일보에서 11개월간 370명의 무연고 사망자들의 삶을 전수조사하고 40일간의 현장 취재를 통해 낸 연재 기사들³⁶⁾과 2023년 초 한겨레에서 이루어진 심층 보도 역시 무연고사 문제의 핵심을 빈곤으로 정리한다. 2021년 기준으로 무연고사망자 10명 중 8명은 배우자 없는 1인 가구인데 형제·자매 등 가족이 있더라도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주검을 포기하면서 발생한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36) 2019년 12월 6회에 걸쳐 연재된 기사들을 ‘나눔과 나눔’ 홈페이지에서 정리해 게재 하기도 했다. <http://goodnanum.or.kr/?p=5949>

28.3%에 그친 반면 연고자가 있어도 주검 인수를 거부한 경우가 71.7%에 달했으며 가족이 주검 인수를 포기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³⁷⁾ 이러한 통계는 빈곤과 무연고사의 상관관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무연고사는 빈곤한 자의 죽음 혹은 빈곤한 가족 구성원의 죽음일 가능성이 높다.

'예비 무연고사망자'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동자동 주민들의 발언 역시 빈곤과 무연고사의 상관관계를 입증한다.

[사례 III-7]

연구자: 어떻게 지내시는 곳 벽에 K 활동가 분의 전화번호를 쓰게 되신 걸까요.

H: 그때 내가 이 홈리스 생활하다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나이는 먹었지만 사회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뜨고 보니 이 사회가 아 좀 그렇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제가 세상을 떠나면) 꼭 좀 거둬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내가 그 전화번호를 써놓은 거예요. 솔직히 오늘 이런 말은 처음 하지만... 그때 당시에 또 내가 심장 수술하기 전에 내가 많이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이런 시기였어요...쪽방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동자동 주민 H씨와의 면담 중)

[사례 III-8]

연구자: (공영장례식에서) 고인 분들에게 인사 어떻게 하세요?

C: 욕실 있는 따뜻한 데서 나시라고. 한** 님 꿈이 그거였거든요. 술만 드시다 가셨는데. 아파도 병원가지 않아서 결국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술만 드시다. 술이 문제예요. 병원에 안가니 병이 커졌어요. 동네 병원이라도 가야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비 지원받으려면 서류를 떼어서 서울 병원,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만 갈 수 있거든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아예 안 가게 된 거죠. (동자동 주민 C씨와의 인터뷰 중)

37) 장나래(한겨레), “무연고 사망 가파른 증가세, 80%가 배우자 없는 ‘1인 가구’”, 2023.01.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6974.html

K의 활동가 M씨는 오래 전 복싱 챔피언이었던 이를 무연고사망자로 기렸던 경험과 결부해 ‘무연고사’에 이른 이들의 가난이 개인의 게으름으로 인한 문제라고 귀책사유를 논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행한다.³⁸⁾ 그러면서 다수의 무연고사망자는 빈곤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논한다. 무연고사와 빈곤의 상관관계가 높지만 무연고사를 빈곤의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무연고사가 장사법상의 ‘연고’라는 범주의 문제성으로 인해 제도적 차원에서 현상화 된다는 것을 비가시화할 위험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현 상태로 존속할 경우 무연고사망자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이다. 한국에서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전체 가구 중 31.2%)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장사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 범위를 직계 혈족과 법률혼으로 맺어진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기존 장사법으로는 이 폭증하는 죽음에 대한 죽음의례의 집행이 어려워진다. 여기서 ‘무연고사’란, 결국 ‘누군가에게 인수되지 못해 장례 치러지지 못하는 죽음’임이 드러난다. 서울시에서와 같은 공영장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는 장례 치러질 수 없는 죽음이 행정 절차에서 무연고사로 확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무연고사’라고 지칭되는 죽음 현상이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다.

무연고사망자가 가시화된 것은 2000년대가 넘어서서 천 명이 넘어서면서부터였다. 2022년에 들어서 4천 명이 넘어선 무연고사망자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부재하는 상황이다.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 통계를 제시했다. 이 조사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지난 5년간의 고독사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것이다. ‘①가족, 친척 등

38) 김민석(중앙일보), “지면서도 주먹 뺀던 투혼…복싱 챔피언, 왜 무연고 사망자 됐나”, 2022.12.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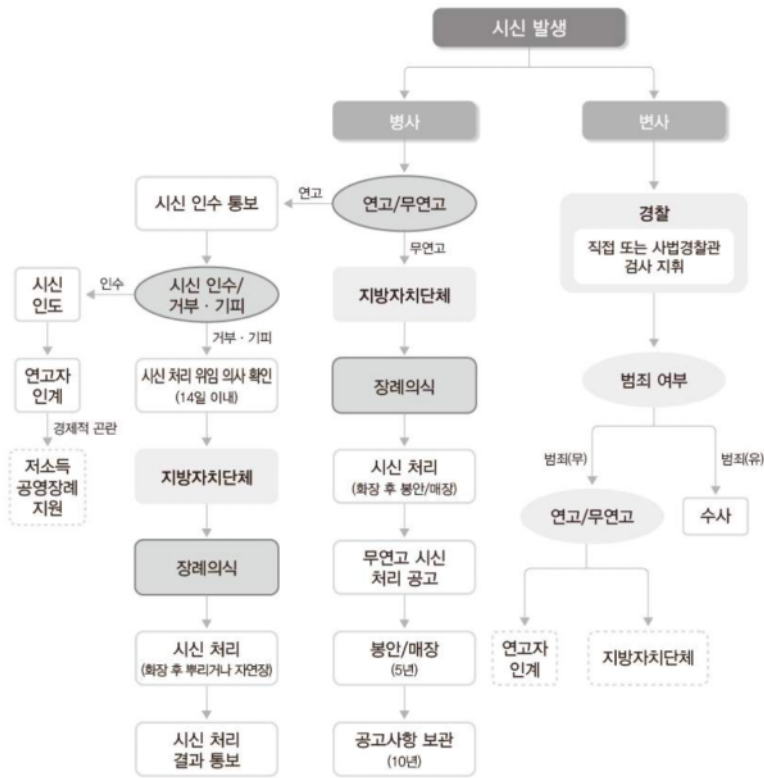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조건으로 하는 고독사는 장사법상 연고자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규정되는 무연고사와 다른 개념이다. 무연고사에 대한 제도 차원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계 역시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제시하고 있다.³⁹⁾ 따라서 그 통계 수치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1 무연고사 리포트' 표제 아래 연재된 아시아경제의 기사들 역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개에 정보청구공개를 통해 무연고 전수 조사를 실시했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사회복지과, 위생정책과, 생활보장과 등으로 소관 부서가 다르므로 따라서 무연고사 통계를 집계할 기준과 기반 자체가 부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⁴⁰⁾ K는 2023년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노인, 홀리스 시설 무연고사망자들의 통계를 가시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망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수한 죽음들이 더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연고 시신'으로 규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차적으로는 시신이 발생한 장소가 '병원'이라면 병사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으면 변사로 간주되기에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한 뒤 가족 등 연고자를 찾고, 병원 외의 장소, 즉 주거지나 거리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이 사망현장에서 사인을 파악하고 검안의사로부터 검시소견이 있는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게 된다. 병사가 아닌 경우 사망원인의 규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검 등이 이루어진 뒤 검사가 검시필증

39) 박진옥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무연고사망자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820명에서 2020년 2,947명으로 총 무연고사가 증가했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무연고사망자의 약 44%가 나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인 기대 평균수명 83.3세에 비교할 때 중장년 이하의 무연고사망자 51% 이상이 중장년(40세~64세) 비율이 47.9%로 두드러졌다. 또한 65세 이상의 무연고사망자가 2016년 40.4%에서 45.2%로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 하며 남성이 73.2%로 여성 21.1%(미상 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박진옥 2023: 38-43).

40) 고희광, 유병돈, 정동훈, 이정운(아시아경제), "[2021 무연고사 리포트]포스트 코로나' 정책 의제 돼야할 무연고사", 2021.10.1.

<https://www.asiae.co.kr/article/issue/2021100111372180569>



[그림 11] 시신 발생 시 행정절차 흐름도

을 발행하게 된다. 이후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무연고 시신을 인수한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가 그 시신을 운구해 화장하고 봉안까지 해야 한다-은 연고자를 확인하고 연고자가 있다면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하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여부 위임여부 안내했으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시신의 연고자에 대한 확인 및 파악된 연고자에게 시신 인수를 통보하고, 이를 기피하는 경우 시신 처리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무연고사망자가 최종 확정된다. 즉, ‘무연고사망자’는 행정 절차 상 결과

적으로 생성되는 범주인 것이다.

혈연 가족이 아닌 이의 장사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연고자’라는 규정이 파생하는 의미화와 관계 한정 문제의 문제가 공영장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공영장례 현장은 혈연관계로 고인과 맺어지지 않은 지인들은 공영장례가 아닌 장례를 치르길 원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했고, ‘무연고사망자’가 된 고인의 유족이 자리하는 현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K에서는 기존의 민법과 장사법이 ‘무연고사망자’라는 범주를 생성하는 데 맞서는 차원에서 ‘무연고사망자’라는 용법 자체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무연고사망자라는 말을 포기할 때 반드시 작은따옴표를 동반한다. 고인의 ‘지인’ 혹은 ‘유족’이라는 말이 혈연관계 여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계를 상정할 위험이 없는 ‘사별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다.

3. 빈소 바깥의 현장들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의례로 의미화되기 전에 철저히 물질화된 상태로 무연고 시신이 임계 지점에 놓이게 되는 상태가 연장되는 장례식장을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그리다’ 빈소 바깥에서 무연고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현장들을 기록한다. 예절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S는 1000회가 넘는 추모식을 추진해왔고 2023년에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교육실을 빌려 추모식을 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여제 및 동제를 의식한 의례이면서도 전통 의례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된 추모식을 꾸준히 추진해온 S는 ‘보편적 장례 복지’를 논하는 K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시와 민간의 협약으로 모범적 공영장례의 모델을 실제화하고 있는 안양의 공영장례 현장도 살피고자 한다. 세 번째로,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살펴본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는 K가 2019년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주체, 공영장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시민, 무연고사망자를 발견한 시민, 무연고사망자의 주소지의 집주인 혹은 건물주, 무연고사망자 시신 발견 신

고를 받고 출동했던 형사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여 공영장례 성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시신이 안치되는 장례식장

대형 병원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연고사망자 시신 안치 자체를 거부한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의 무연고 시신이 발생하면 구마다 관례적으로 무연고시신을 안치해온 몇몇 영세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장례식장 측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안치료가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안치료 지급마저 시와 구에서 나누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연되는 데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장례식장마다 무연고 시신에 대한 염습에 공을 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 수골함에서 드러나곤 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하는 동안 화장된 유골에서 2회 이상 보철물이 아닌 이물질이 시신에서 섞여 나왔다. 화장된 뿔가루 사이에서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염습이 일반적인 장례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18년 서울시공영장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연고시신에 대한 염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반된 시신을 관에 그대로 넣는 관행이 업계 용어로 ‘퐁당’이라고 칭해지기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행이 불가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수의를 입히기 힘들 정도로 사망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된 시신이 많고, 무연고사망자 시신을 수습하는 단계에 대한 예산이 할당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존속하고 있다.

2020년에 A상조회사가 공영장례의 의전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무연고사망자 시신에 대한 처리를 이 회사의 공영장례팀이 전담했다. 이에 대해 장례업체들이 반발했고, 2021년부터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한 장례식장들에 한해 무연고시신이 안치되는 경우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안치료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무연고사망자들에 한해 장제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안치료는 하루당 6만원으로 책정해 15일⁴⁾치 지급해 총 90만원

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는 80만원이다. 그리하여 장례식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안치료 9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안치료 90만원과 염습 및 입관비용 80만원을 합친 170만원을 장례식장이 구청과 시청⁴²⁾에 청구하게 된다. 장례식장 실무자들은 안치료와 장제급여의 액수와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 청구 후 돈을 지급받기까지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 대한 불만을 표했다. 또한 현재 무연고사망자 시신에 대한 처리 일정과 비용이 공영장례를 통해 의례를 치르는 일정에 수렴되어 결정된다는 점, 공영장례 현장에 할당된 예산이 높다는 점을 들어 A 상조회사나 K가 공영장례 체계에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으로 삼기도 했다.

[사례 III-9]

(무연고사망자 시신이) 보통 한 달에 다섯 개 이상씩 있어요. **구에서 무연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부터 모시고 와서 우리가 처리를 다 해요. 집에서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A상조회사 공영장례팀)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받아가고 우리는 일만 뒤지게 하고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에서 (무연고사망자가) 생기면 그 돈을 이 장례식장에다 바로 주고 일 처리를 해버리면 빠르게 할 텐데. 시일이 또 엄청 걸려 여기서 보름 이상씩 보통 한 달 이렇게 걸려요. 여기 (안치료가) 하루에 12만 원씩인데요. 하루 12만 원인데 6만 원을 책정을 해 주는 거예요. (무연고사망자 시신 안치료가) 90만 원밖에 안 되니까..그럼 우리는 가서 차 부르고 하는 인건비도 안 되는 거죠. 요새 전기세도 오르고 개수비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늘 서운하지. 그것도 벽제(화장장)까지 우리가 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입관을 다 해서 수의를 입혀서 우리가 또 다 모셔다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90만 원 80만 원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야. (O장례식장 P씨와의 면담 중)

41) 구청에서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은 뒤 ‘시신 처리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일정을 14일 이내로 상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경과되는 경우가 다수다.

42) 안치료는 구청과 시청이 반씩 부담하여 지급한다.

공영장례가 제도화되면서 관여하게 되는 주체가 많아지는 만큼 관료화된 일처리에 대한 반감도 컸다. 현재의 과도한 서류 작업의 문제와 청구 과정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앙화된 공영장례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심층면담을 진행한 장례식장들 모두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이 안치되면 장례식장에서 직접 장례식까지 치르게 하고 구와 시에서 직접 예산을 받는 형태로 공영장례가 전환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 Ⅲ-10]

공문도 수월찮아. 이 공문, 병원에서 작성한 건데 사망진단서의 주소가 틀렸어요. 장례식장에서 구청에다 관내 기초수급자가 발생했는데 그쪽 사람이 맞느냐 가족을 찾아주든가 아니면 공영장례를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걸 장례식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언제 확장한다고 A사에서 서류가 오고...그 날에 맞춰서 확장하니 입 관해서 모시고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 그럼 또 우리가 구청으로 이 서류를 보내...A사에서 인수증을 또 받아야 이걸 첨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문에 보면 어디야 일 처리 기간이 4일인가 하여튼 뭐 어디 돼 있던데 보니까 4일이 아니라 한 달 가까이 걸려. 이거하고 나서도. 그러면 안치료 덜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디. 이거 보내면 바로바로 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지금 이제 일자가 항상..진짜 오늘 별 거 다 보여 줘야(시로 청구하는 서류를 연구자에게 보여주며) 또 서울시에서 연락이 와 이게 2장씩 보내거든 하나는 구청에다 보내지만 다른 하나는 시에 보내는 거야. 하여간 이런 절차가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우리가 다 끝나면 두 달 막 이렇게 걸린다는 게 오늘이 2월인데 12월 결산 처리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12월 14일 날 들어왔어 죽은 날이야. 사망 날짜가 10월...그러면은 오늘 며칠이야...지금 2월 *일. 2월이면은 12월 이것도 두 달 가까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그 두 달 가까이 돼도 아직 완결이 안 됐다는 얘기가 이 사람은 12월 7일 날 죽었는데 아직도 완결이 안 되고 있다고. (O 장례식장 P씨와의 면담 중)

[사례 Ⅲ-11]

개선해야 할 게 그거예요. 왜 ‘그리다’ 빈소에서 행사를 해야만 안치료를 주느냐 이거예요. 이걸 거쳐 가야 안치료를 준다는 조항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고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서 그렇게 전담하니까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J장례식장 B씨와의 면담 중)

‘장례식장’이라는 인프라가 없는 상조회사가 공영장례 현장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들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장례식장이 성업하게 되었지만 의례 진행보다는 관리와 관련된 일만 처리하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등장한 상조회사가 장례식장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게 필연적이라는 점은 김시덕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김시덕 2005).

[사례 Ⅲ-12]

K가 봉사하는 거 좋아. 공문 같이 와요. 근데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갈 일이 아니고...실질적으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지.. 그쪽은 무료, 무료 하면서 뭐 돈 받을 건 다 받아가고 뭐 했냐고. 아니 거기 장례식장에 있어, 뭐가 있어? 주둥이만 갖고 진짜 돈 뺏어가는 거지, 거기 막말로 안치실이 있어요. 입관실이 있어요. 분향실이 있어? 없잖아요. (O장례식장 P씨와의 면담 중)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사망 시점에서 한참 경과되어 변형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다수다. 사망 후 안치실로 이동된 시신은 깨끗한 천으로 싸서 냉장실에 넣어 피가 가라앉게끔 한다. 이후 시트를 꺼내 시신을 위에 놓고 깨끗하게 싸서 염습을 진행해야 하는데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형태가 무너진 경우가 많아 시신 처리를 하는 난이도가 높다. 이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시신백에 시신을 넣고 그대로 냉장실에 안치하는 경우도 많다. 겨울에는 부패의 속도가 지연되지만 여름에

는 보름만 지나도 시신 변형이 심각한 정도로 진행된다. 시신이 안치된 냉장실의 온도가 2~3도로 유지되는 영세한 장례식장에서는 부패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신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단계에 대한 예산이 안치료와 별도로 할당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고인의 존엄은 의례뿐만이 아니라 시신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형태를 최대한 정리하는 데에서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연고사망자의 시신 안치 자체를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 수가 급증했던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30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게 조치했고 그렇게 확보된 서울시립승화원 안치실에 4구 안치가 가능한 점을 활용해 화장 스케줄을 잡아서 폭증했던 사망자들의 화장이 가능했던 것처럼 시의 관할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시립 병원에서 무연고사망자 안치를 전담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례 III-13]

(대형 병원 장례식장의) 그 사람들이 안치를 하겠어요? 돈이 안 되는 데 안 하죠. 누가 자기 돈 몇 십 억 투자해서 봉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형 병원 장례식장의) 직원들 자체도 철저하게 분업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데(영세한 장례식장)서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대형 병원 장례식장 측에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 너는 그걸로 먹고 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하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당신(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왜 (무연고사망자 시신을) 안 받느냐는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연고사망자 시신을)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시립병원이나 독립병원 그런 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J장례식장 B씨와의 면담 중)

대형병원들이 무연고시신을 거부하는 문제는 장례식장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한 바다. 공공의 영역이 의례의 집전 뿐 아니라 시신의 안치까지도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통적인 상장례가 '혼백'의 분리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가례』를 자세히 해설한 『성리대전서』는 숨을 확인하는 ‘속광’ 절차부터 시작해 육체인 ‘백(魄)’을 혼과 함께 모시는 영좌를 설치하고, 정화를 위한 염습과정 후 매장으로 혼과 백의 분리를 거치며 반혼⁴³⁾부터 담제(禫祭)⁴⁴⁾까지 빈소에 신주를 설치해 혼백을 모시고 길제부터는 사당에 신주를 설치해 이를 행한다(장철수 2001). 3일장이 일반화되고 병원장례식장에서 의례를 마치고 매장이나 화장을 한 뒤의 의례가 거의 생략되도록 가정의례준칙이 강제하면서 삼우제 이후 절차는 거의 생략되었지만 혼백의 분리와 통합이라는 과정의 성사가 의례의 본령이라는 점은 간소화 경향 속에서도 상기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염습 이전 단계부터의’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에 대한 거취 역시도 공영장례 체계로 통합할 때 필요한 제반 사항이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다른 현장에서의 추모

현대의 삶의 양식에 맞게 가정의례를 재정립하여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S에서는 2023년 3월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제 106회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시민추모식’을 열었다. 서울시 중구 충정로에 위치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열리는 이 추모식은 시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개최되어왔다. 개식 후 대금 연주로 무연고사망자들의 혼을 청하고 이후 배례(拜禮)-헌다(獻茶)-추모사-찬불가 합창단의 추모곡 합창-추모연주-명동성당 교우들의 추모기도-배례(拜禮)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S에서 하는 추모식은 일반 상장례의 삼우제⁴⁵⁾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공영

43) 무덤을 만든 후 신주를 집으로 모셔오는 절차(김유리 2017)

44) 초상 후 만 2년이 되는 날인 대상(大祥) 후 2개월째 되는 날 정일(丁日) 혹은 해일(亥日)을 선택해 지내는 제사로 효자의 심정이 담제에 이르러 담연평안(澹然平安)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담제(澹祭)라고도 일컫고 조상의 신주를 고쳐 쓰고 제사를 지낸다.

45) 시신을 보내고 영혼을 맞이하여 지내는 제사로 장사 지내는 날 지내는 초우제, 초우제 지낸 뒤 처음 맞는 유일(柔日)에 지내는 재우제, 재우제 뒤 첫 강일(剛日)에 행하는 삼우제가 있다.(이두현, 장주근, 이광규 2004). 오늘날에는 발인한 날 초우제를, 다음날 재우제를, 발인한 후 이틀이 경과한 날 삼우제를 지내는 게 관례가 되었다.

장례 제도로 치러지지 않고 있는 의례를 자체적으로 행하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교 상장례 절차인 ‘삼우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찬불단의 노래와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가 의식을 구성한다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 추모 기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 추모식 참석자 가운데 희망자는 강당 앞 화면에 띄워진 무연고사망자들의 이름들 앞에서 차를 올리는 의식을 행하게 된다.

S는 K와 더불어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의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3년간 무연고사망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출상 전날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 가서 상식과 조전례(祖奠禮)⁴⁶)를 실시했다. S의 원장 D씨는 기존의 상장례가 친족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은 ‘은혜’가 조상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복잡한 관계망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이웃이 ‘은혜’의 대상임을 알고 대해야 함에도 이러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서 무연고사망자 증가라는 현상이 비롯된다는 진단에서 이러한 의례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S에서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정상적 죽음’으로 간주하는, 객사 혹은 후손 없는 죽음에 대해 국가 단위에서 치러온 의례인 ‘여제’도 2015년부터 일 년에 두 번 시행했다. 처음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의전 사업’에 참여할 때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의례 집전의 근거가 바로 조선시대 여제의 설행이었다. 예지원에서는 2015년부터 「국조오례의」와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하여 복식, 절차, 제물 등에 대해 전주이씨대동종약원(全州李氏大同宗約院)의 고증을 거치고 자문을 받아서 음력10월 초하루에 실시했다. 2020년 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가족들의 참여 없이 장례가 치러지는 데 안타까움을 느껴 이들을 위한 여제를 최소의 인원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돌 때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여제 외에 별여제가 실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 의식이었다. 이 별여제 역시 현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추모식에서와 같이 ‘헌다(獻茶)’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46) 상식(上食): 전통상례에서 입관 후 식사 때 식사를 올리는 의식
조전(祖奠): 전통상례 절차 중 출상 전날 저녁에 출상을 고하는 의식

이렇게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추모식을 꾸준히 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S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장례는 고인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치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지향을 보이고 있다. 원장 D씨는 현재 서울시 공영장례로 기리게 되는 고인 가운데 연고자의 시신 위임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된 이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장례 복지의 확대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의견을 표했다. 유교식 상장례의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이 참여하는 추모식의 형태에 대해 질문하자 ‘예’의 본령을 지킬 수 있다면 형식은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모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례 의례가 상업화되면서 식사대접이 장례식장의 주 수입원이 되었고, 수시로 조문을 오는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게 중요해지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S가 주관하는 추모식이 공영장례 제도 바깥에서의 자체적인 추모 실천이라면, 안양시 공영장례는 서울시 외 공영장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지자체 현장으로 꼽을 수 있다. 안양시에서는 2020년 3월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었고 안양시 측에서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안양장례식장’과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례식 공간을 마련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의례를 주관하고 상주 역할을 수행하는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가 발족되었고 센터가 봉사단에 대한 교육과 장례식장, 행정주체와의 소통을 담당하여 봉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례참여자가 나올 수 있게 체계가 갖추어졌다. ‘리멤버’ 봉사단에 대한 교육은 2시간씩 3회 이루어지며 2023년 2월 기준으로 4기까지의 교육이 완료되었다. 공영장례에 대한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장례 교육은 안양시 예식 교육 회관에서 이루어진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 2월까지 총 17차례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안양시 공영장례에서의 고인예식은 서울시 공영장례와 대동소이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한 날에는 고인의 지인 4인이 참석해 술을 따랐고 지인 중 한 사람이 상주를 맡았다. 상주를 맡은

고인의 지인이 자원활동가들의 장례 참여 동기가 유산에 대한 것인지 물어 활동가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연구자는 추후 자원활동가들 간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막상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고인을 위해 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이 사는 동네(경기도 광주)에도 공영장례가 가능하길 바란다고 표현했으나 자원활동가들의 마음이 상한 것을 되돌리기는 힘들었다. 혈족이나 지인이 아닌 경우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고인의 재산이나 유류품에 대한 상속에 관심을 가진다는 혐의가 덧씌워지곤 한다.

안양시 공영장례에서는 고인예식 이후의 순서가 다르다. 현재 서울시의 공영장례는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운구되어온 시신이 서울시립승화원의 화로로 이동해 화장이 되는 동안 종교 예식이 이루어지고, 화장이 완료되면 수골함에서 유골을 인수하여 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무연고 추모의 집에 봉안하도록 조치하는 게 수순이다. 그런데 안양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예식이 이루어지는 만큼 식이 끝난 후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앰블런스로 관을 이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봉사단은 묵념을 하고, 함백산추모공원으로 이동 후 화장이 이루어진다. 연구자가 참여한 날에는 고인의 지인들만 함백산추모공원으로 이동했지만 다른 때에는 봉사단 활동가들이 택시를 나누어 타고 가서 이 여정에 참여한다. 실제로 봉사단 예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교통비이며, 봉사단 활동가들이 장례에 진행하며 느낀 불편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화장장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생전에 ‘이웃사촌’으로서 안면을 익힌 사이가 아니었을지라도, 같은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영장례가 이루어지는 안양의 현장은 새로운 형태의 ‘마을 장례’ 모델로도 인식 가능하며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기도 하다. ‘공영장례’가 보편적으로 확산된 의례가 아닌 만큼 봉사단의 의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있었던 것은 참여관찰이 이루어진 당일만이 아니었다. 가족 없이 외롭게 고인이 세상을 떠나는 사실이 가슴 아파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음에도 이전에 고인의 가족들이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대가도 없이 장

례식에 온 것이냐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걸 밝히기도 했다.

안양장례식장 측에서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밝혔다. 시신 상태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반드시 염을 하고 수의 입혀 연습 과정에서 필요한 예를 갖춘다고 했다. 안양시에서는 2023년 안양장례식장 외 다른 한 장례식장과 추가로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⁴⁷⁾ 서울 외 지자체에서 민관협약에 의해 공영장례 체계가 구축되는 경우 안양시에서의 방식이 하나의 전범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3)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2018년 3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후 2019년부터 서울시는 K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장례지원에 대한 모델안을 기획하는 팀이 운영된 후 공영장례 제정이 이루어졌고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26 건의 무연고장례를 지원한 K가 상담센터로 협약대상이 되었다.⁴⁸⁾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는 ‘공영장례-그리다 통합콜 상담 센터’로 지칭되기도 하며 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시의 지원은 상담 전화에 대한 비용 외에는 없다. 따라서 상담센터는 K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후원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담의 반 이상은 공무원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어르신복지과 등의 주무관들은 여러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공영장례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한 숙지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문의 전화는 K의 활동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나면 늘어나곤 한다. 친밀한 지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상담을 청해오는 건수가 많지 않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사무실의 일정은 오전 9시에 시작된다.

47) 유원상(스포츠동아), “안양시-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2023.01.29. <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30129/117644143/1>

48) 2019년 3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상근자는 1명이지만, K 사무실이기도 한 센터 공간에는 K의 다른 활동가들이 함께 근무 중이다. 활동가가 고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 고인이 발견된 건물의 주인 등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소속을 밝히는 단계부터가 난제다. 열에 아홉은 기관명을 되묻고는 한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입니다”라는 첫 구절에서 상대에게 한 번에 전달하는 데 실패하는 단어는 다름 아닌 ‘공영장례’라는 말이다. ‘공영장례’가 아직은 생경한 제도라는 점이 여실히 확인되는 절차이기도 하다.

센터의 활동가가 하나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밟아야 하는 과정은 탐정의 수사 과정에 비견될 만 하다. 한 통의 전화로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정보란 없다. 예를 들어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센터에서 시신이 발견된 관할 구청 주무관에게 연락을 해서 형사의 연락처를 문의해야 하고, 형사에게 연락을 하여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야 하며, 신고자와의 통화를 통해 지인과의 관계를 문의해야 하는 식이다.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전화를 받기 힘든 상태인 경우가 많해보니 이렇게 여러 단계를 밟아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열댓 번의 통화 끝에 획득 가능해진다. 이렇게 여러 개인정보 보호의 여러 관문을 뚫고 고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를 찾아나서는 작업은 고인의 지인이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애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K의 문제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고인이 고시원에서 사망했다면 같은 고시원에서 장례식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 최초 발견자나 현장에서 장례 참여할만한 분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찾아내고 있는데 이는 연고자 아닌 사람은 무연고사망자의 부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공영장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영장례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동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인의 지인과 연락이 닿게 되면 가급적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하는 것도 센터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A상조회사와 행정주체와 다시 소통해야 한다. 그 밖에도 장례 참여자들에게 유골 인수 시 필요한 준비물-화장증명서, 신

분증 등- 안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장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고자에게서 고인의 사진을 받지 못한 경우, 지인에게 영정사진으로 사용할 만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지 센터에서 문의를 하기도 한다.

공영 장례와 연동된 제반 제도에 대한 지식이 전문한 내담자가 문의하는 상담 건도 난이도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내담자들의 질문은 두루뭉술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질문이 장제 급여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는 것인지, 무연고사망자 장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소득층 장례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인지 상담자가 파악하여 안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의 대부분은 주무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K가 제작한 공영장례 제반 안내 매뉴얼이 제작되어 배포되었지만 매뉴얼을 살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센터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뉴얼에는 단계 별 업무에 대한 안내 뿐 아니라 공영장례의 철학과 원칙, 태도가 기재되어 있다. 공영장례가 차별을 배제하고 망자와 차별받는 사별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지향이 매뉴얼에도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매뉴얼의 제작에 참여했던 공무원이 공영장례로 인해 연고자들의 시신 위임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초래된다는 발언을 했을 때 좌절하기도 했음을 K의 상임이사는 밝히기도 했다.

무연고사망자로 시신을 위임했던 아들의 유골이 몇 년째 무연고 추모의 집에 봉안되어 있는데 이 유골을 해양장하고 싶다면 전화를 걸어온 상담 건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 혼자서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이 힘든 연로하신 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K측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해양장을 위해 가는 길에 동행을 하기도 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유골을 인수받고 해양장 예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내담자를 혼자 인천 앞 바다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센터의 상담은 K의 지향과 긴밀히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는 공영장례와 연계될 수 있는 여러 주체들과 소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무연고사망자와 관련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산의 부족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상담 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시에서 업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결정하면 K가 담당하고 있던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로서의 역할은 바로 멈추게 되는 상황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고독사에 대한 조사와 통계 발표는 정부에서 행하고 있지만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규명은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사회에서 무연고사망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가시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

[사례 Ⅲ-14]

무연고사망자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는 연구가 더 필요할 거예요. 어디 살았고 어떤 병으로 죽었고...무연고 사망자 왜 증가하고 있지 연구된 게 없어요. 고독사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있지만...**무연고사망자가 누구인지 데이터가 없어서 밝히기가 난망한 상황이죠.** 데이터베이스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는 없기 때문이에요...**지금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시설 사망자들의 사망이 집계 안 될 거예요.** 장애인 등록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집계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때그때 국회의원이 요구할 때마다 수치가 달라져요.** 평상시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예요. 장애인 무연고사망자가 얼마나 그때그때 집계하고 노인의 날에 노인 비율 얼마나 이런 식으로..고독사는 사후에 민원이 많죠. 무연고 사망자는 민원이 없어요. 고독사는 민원이 많아서 예방을 해야 하고 그래서 통계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무연고사망자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예방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의 대상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가 안 되는 거예요. (K의 상임이사 E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현재는 K가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운영을 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담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전담하는 센터가 K와 분리되어 제도화되는 것을 단체 측에서는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공영장례 현장은 이제까지 공영장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려온 K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의 공영장례 현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앞서 무연고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민간 장례업체들이 원한 바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을 민간 장례업자가 주관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공영장례가 민간 장례식장에 위임될 때 자원활동가와 같은 일반 시민과 고인의 연고자가 아닌 지인들의 참여와 공공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립승화원에 있는 ‘그리다’ 빈소만으로는 늘어나는 무연고사망자 수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초 추모의 숲에도 추가 빈소가 만들어져 이원화된 체제로 서울시 공영장례 제도가 운영이 되겠지만 5년만 지나도 두 빈소 모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공영장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연습 과정, 비용 청구의 과정 등에서 영리적 목적에 의해 고인에 대한 존엄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며 어떻게 애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것이냐 K 활동의 주 영역이라고 E씨는 밝히고 있다. 장례가 사회보장제도로 안착된다면 K의 활동이 필요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덧붙인다.

제 2 절 공영장례 현장의 특성

1. 공영장례를 구성하는 요소들

장** 씨를 조문하기 위해 동자동 주민들이 ‘그리다’ 빈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왜 영정사진이 없어?”라며 장** 씨의 영정 사진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영정 사진의 부재에 대한 탄식은 운구와 산골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고인예식이 시작되기 전, 최근 구청장이 협조적이지 않아서 영정 사진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대화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오갔다. 2023년 2월 돈의동 쪽방촌 주민의 장

례식이 치러졌을 때에는 미리 준비되었던 영정 사진을 돈의동 쪽방촌 주민협동회에서 제공하여 영정사진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드물게나마 고인의 영정사진이 빈소에 등장하는 때면, 정기적으로 공영장례 현장에 방문해온 사람들은 영정사진이 있으니 좋다고 감탄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영장례는 영정사진 없이 진행된다. 위패 옆에는 사진이 걸려있지 않은 영정사진 액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영정사진을 받게 되는 경우, K의 활동가가 직접 보정을 하거나 파주에 위치한 한 사설 스튜디오에서 보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처음에는 스튜디오 측에서 봉사차원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영정사진으로 습득한 사진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정 작업의 난이도가 높고 스튜디오 직원들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만큼 현재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영정사진 보정 의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영정사진이 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야만 습득이 가능한 것은 사진 역시 고인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측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서 고인의 가족과 지인과 연락이 닿은 경우 장례식 일정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영정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소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인의 지인이 사진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하면 상담소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얼굴에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을 부탁한다는 청을 간곡하게 하게 된다. 운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무연고사망자의 상주는 위패와 국화꽃만을 들고 이동하곤 한다. 영정사진 없이 관이 승화원 전용 카트로 이동될 차례를 기다리는 상주는 무연고사망자의 상주뿐이다.

‘그리다’ 빈소의 제사상 위 제물은 빈소 안에서 고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물질로 의미화되어 있다. 고인예식에서는 고인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마련되며 이를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고인예식이 구성되어 있다. 공영장례 예산 내에서 제물로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비롯한 제반 물품 구입이 A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 비용을 음식 쪽에서 절감하고 있다는 시선들이 있다. 장례식이 끝나면 제물은 돈의동 쪽방촌 사

량방에 전달되거나 서울시립승화원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된다. 의례 후 새로운 관계망 내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제물이 쪽방촌으로 전달되는 경우 K의 활동가는 오후 장례식까지 종결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종로 3가역 근방에 위치한 쪽방촌 협동회 사무실로 제물을 가지고 이동한다.

오전장으로 기리게 되는 고인은 11시대에, 오후장으로 기려지게 되는 고인은 2시대에 화로에서 화장이 시작된다. 따라서 A사 장례지도사들은 고인 예식이 끝나는 10시 15분, 1시 15분에 서울시립승화원의 운구전용 통로 앞 출입구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운구 준비를 하기 위해 유골함과 서류들을 챙겨서 서둘러 내려가고, 장례참여자들은 10시 30분, 1시 30분에 운구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다. 운구차에서 관이 승화원 직원이 끌고 나온 관 운반 카트로 옮기는 순서는 장의차 기사들 간의 암묵적인 규칙, 즉 차가 도착한 순서에 따라 배정된다. A사 장례지도사들이 입관, 운구를 담당한 오전장으로 모셔지는 고인들의 관은 A사 장례지도사들이 일부러 오전 7시 반에서 여덟시 사이 일찍 출근하여 차를 대놓는 노력을 하는 덕분에 대개의 경우 11시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 화로로 이동하게 된다. 11시 대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운구차가 10시 30분이 되기 전에 서울시립승화원 중앙 입구 앞 늘어서있는 운구차 행렬 뒤에 차를 대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알지 못하는 자원활동가는 간혹 활동가에게 ‘무연고사망자라서 이 시간대에 첫 번째로 운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오후에는 여러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입관해 운구해오는데, 특정 병원 장례식장의 운구차가 고질적으로 늦게 도착하여 “***은 맨날 꼴지야”라고 A사 장례지도사가 화를 내기도 한다. 운구차가 늦게 도착하면 운구도 늦어지고, 이에 따라 화장이 종결되는 시간도 지연되어 수골 역시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관과 관보는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죽음과 연동해 의미화되는 물질 가운데 자본주의적 논리가 가장 극명하게 작동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관, 관보, 수골함이 공영장례조례에 명시된 기본 지원 물품에 해당하는데 가장 낮은 가격의 물품들이 동원되곤 한다. 대개의 경우 무연고사망자를 신고 온 관과 관보는 가장 저렴한 종류의 것이다. 참

관실에서 유리 너머 화로로 옮겨지는 관을 보고 K의 활동가 G씨는 관보가 “유독 꾸깃꾸깃하고 보풀이 일어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병원장례식장에서 관보를 아예 씌우지 않고 관을 보낸 경우도 있어 G씨가 장례식장 측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값이 싼 관은 십만 원대 초반이고 저렴한 관보다 두께 면에서 차이가 큰 최고급 향나무 2단관은 100만원이 넘는다. 운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고인들이 모셔지는 화려한 관들을 보면서 관과 같은 품목에서 장례식장 측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장례지도사 Y씨는 지적하기도 했다. 고인의 몸의 크기에 따라 관의 크기도 달라진다.

공영장례 조례가 생기기 전에 한 운구업자가 여러 구의 무연고사망자를 처리하던 시절에는 경직된 시신을 수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관에 넣는 바람에 관이 열린 상태로 운구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혹은 3개의 관을 차의 뒤에 “짐짝처럼 쌓아서” 옮기기도 했다는 점을 동자동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사례 Ⅲ-15]

우리 없이 산다고 무시하지 마라...세 구가 뭐냐. 이삿집도 아니고, 이걸 사람을 포개서 오고...그리고 우리 주민 한 분 돌아갔을 때 관이 안 닫혔나 봐. 그런데 그게 (시신의) 다리가 안 구부러지니까, 그냥 그대로 시신을 관에 넣고 관에다 천을 씌어갖고 온 거예요. 시체가 아예 보여!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생선 썩은 냄새가. 이제 좋아졌죠. 딱 두 구를 운구하니까요. 우리가 거기(공영장례 빈소)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고인에게도 같이 인사하고 같이 관도 우리가 들어주고 그렇게 하게 돼요. 딱 두 구로 그래서 지금 장례가 잘 되고 있어. 잘됐다고. 그 전에 세 구씩 실었잖아, 세 구를. 짐도 아니잖아 이삿집도 아니고 이삿집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뭐 냄비 같은 거는 포개서 오겠지만 인간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포개서 오면 되겠어 조그만 차에 세 구씩. 두 구는 나란히 놓 수 있지만 세 구는 나란히 신지를 못하니 포개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숨통이 막히지 숨통이. (동자동 주민 F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2018년 이전에는 운구를 보조할 장례참여자가 부족해서 카트를 가지고 나온 승화원 직원과 장례업자 혹은 K의 활동가 한 명이 카트 옆의 바를 붙잡고 화로로 운구를 해내곤 했다. 현재는 A사 장례지도사와 종교봉사자들, 자원활동가 등이 상주하여 위패와 국화꽃을 든 상주 외에 운구를 보조하는 인원이 평균 2-3인 이상 존재한다. 운구차에서 승화원 카트로 관을 들어 옮길 때 힘을 보탤 수 있는 남성 참여자를 A사 장례지도사들은 선호한다.

무연고사망자와 다른 사망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시신의 부패 정도라고 장례식장 실무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무연고사망자 다수가 고립사하기 때문이며 연고자를 찾는 시일의 소요로 인해 안치실에 있는 기간 연장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장사법이 개정되기 이전, ‘제도적 연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인의 장례 치르길 희망하지만 실행할 수 없었던 이들은 자신과 가까웠던 이의 시신이 안치실에 있는 상태가 연장되는 상황에 대한 고통과 분노를 공통되게 드러내곤 한다. 안치실 냉장실에 차가워진 몸의 상태의례가 유예된 채 방치된 상태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무연고사망자의 안치 기간이 길다보니 장례식장 측에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냉장 온도를 올리거나 끄기도 해 무연고사망자의 부패가 가속화된다는 설도 빈소에서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례참여자들이 운구하는 짧은 구간에 시신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도 다수다.

서울시립승화원으로 운구되기 전 입관 과정이 공개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고인의 유족 가운데 일반 장례 절차와 마찬가지로 입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A사 공영장례팀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인수하면서 나갈 때 고인의 얼굴 잠깐 볼 수 있게 하는데 연습 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패가 시작된 시신의 상태가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라 충격을 받기 십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족이나 지인의 시신의 확인 없이 입관 절차가 진행된다.

화장로에서 화장이 끝나고 수골함으로 옮겨진 뼈의 크기는 시신의 크기와 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고 장례지도사들은 말한다. 시신은 그 크기에 맞게 작은 관에 실려왔지만 화장이 이루어진 뒤 남은 뼈는 크기가 크고 분골이 된 후에도 양이 많은 경우도 있다. 뼈의 색도 다 다르다. 장례참여자들은 수골함에서 유리벽 너머로 분골 전 고인의 뼈를 확인하게 된다.

무연고사망자의 뼈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30년대 생 고인의 유골 가운데서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목격했다. 다른 자원활동가는 시신이 생전에 입고 있었던 옷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와 옷에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위를 봤다고 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고령의 사망자 유골에서는 인공관절 보철물이 빈번하게 나온다. 수골함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직원은 장례참여자에게 이물질들을 어떻게 조치할지 묻는데, 대부분 버려진다. 연구자가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이물질에 대해 장례식장 실무자 B씨에게 질문했을 때 J장례식장에서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사례 III-16]

B: 저희는 여기 사진을 다 찍어놔요. 입관한 사진을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다 사진을 이렇게 수습한 것에 대한 사진이 다 모습을 다 일일이 다 찍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시신 가운데 놓고 입히지는 못해도 싸는 방식으로라도 처리를 반드시 해요. (수습한 시신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무리 부패 상태가 심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렇게 수습을... 보시면 이거는 열어서 올 수가 없어요. 안에가 다 구더기라서...이런 경우라도 다 별려서 수습해서 싸가지고 옷 형태로 입혀서 이렇게 관에다가 모셔요. 절대 함부로 안 해요. 옛날에 우리 쪽 전문 용어로 ‘풍당 해서 온다’, 이거는 지금은 불가해요.

연구자: 2019년도에 처음으로 공영장례 현장에 갔을 때에는 그런 표현을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B: 많이 개선이 됐지요. (J장례식장 B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위의 인터뷰가 진행된 장례식장은 무연고사망자 시신의 염습을 정성껏 하는 곳으로 실무자들이 인지하는 곳이었다. 무연고사망자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장례식장마다 염습에 정성을 들이는 정도가 현재 시점에는 차이가 큰 상황임이 확인된다.

수골실에서 분골된 유골은 봉안되거나 산골된다.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 경우 서울시립승화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이 이루어지는데, 주무관의 판단에 따라 유골이 봉안되는 경우가 있다.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했다더라도, 추후 이 유골을 찾아 개별적으로 안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무관이 판단하는 경우다.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해 공영장례로 기리게 된 고인의 유골에 대해 인수를 원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서 반환 신청을 하면 구청장 권한으로 장례주관자에게 인수가 승인되기도 한다. 유골을 반환받은 이는 추후 유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진으로 찍어 구청에 증빙해야 한다. 장사법상의 연고자가 아니라서 직접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공영장례로 고인을 보내고 장례주관자로 유골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III-17]

고 김** 님의 부인은 서울시립승화원까지 끌고 온 보행보조카트에 김** 님의 유골이 담긴 유골함을 담았다. 무거워진 카트를 끌고 수골함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아 유골을 뿌릴지 말지 너무나 고민된다고 반복해 말했다. 화장증명서⁴⁹⁾를 여러 번 찾았는데, 화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장례지도사 이과장님이 세 번이나 챙겨주었다고 한다. 망연자실한 상태인 그분을 유택동산에서 정문으로 내려가는 비탈길 초입까지 안내하고 마중했다. “유골함을 시장 카트에 넣고 가시는 분은 처음 보네요”라고 자원활동가가 말하자 “저 분에게는 저 카트가 핸드백이거든”이라고 이 과장님이 응수했다. (2023년 1월 참여관찰 기록지에서)

49) 장례주관자가 유골을 납골당에 봉안하기 위해서는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고인의 연고자인 부인이 시신을 위임해 공영장례가 치러졌으나 유골 인수를 희망해 장례주관자로 반환 신청을 한 게 승인되었다.

구청에서 고인의 직계 가족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형제나 자매를 찾아 이들에게 시신 인수 여부를 확인했을 때 형제·자매가 시신을 위임하더라도 직계 가족의 의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골이 산골되지 않고 봉안된 경우도 있다. 이는 연고자 내 위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산골되지 않는 무연고사망자들의 유골은 용미리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무연고 추모의 집에 봉안된다.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무연고사망자 추모의 집은 1년에 한 번,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 당일이나 전후로 합동위령제가 개최되는 날 개방된다. 빈곤사회연대,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연대조직으로 2017년 시작된 위령제에 참여하고 추모의 집에 봉안된 3천위에 대한 추모와 공영장례 제도 개선을 위한 발언들이 이루어진다. 2018년 서울시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 제도를 정비되고 지향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발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택진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이 서울시립승화원의 유택동산에 산골되는 것에 대해 마뜩잖아 하는 장면을 포착해 기술한다. 유택동산에 산골이 되면 다른 유골과 섞여 ‘잡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동자동 주민은 오랜 관계 친분을 유지한 다른 주민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 유골을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는 공간이었던 한강에 산골한다. 이러한 실천은 고인의 ‘개별적’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묘사된다(정택진 2021). 유택동산에서는 무연고사망자의 유골뿐만 아니라 일반 장례식을 거친 유골의 산골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연고사망자의 유골이 ‘유택동산에서 산골 될 운명’이라는 점, 즉 분골 후 다른 공간에서의 산골이나 봉안이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동자동 주민들이 저항감을 느끼는 지점이었다.

[사례 Ⅲ-18]

L: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납골당)다 (유골을) 놓아요. 사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유택동산에다 유골을) 채우면 이 (유택동산의) 고양이들이 먹으려고 그래요. 거기 고양이들이 다 커.

연구자: 선생님께서 장례식에서 장** 님에게 술도 따라주시고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L: 내가 눈물도 잘 흘려.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지옥가지 말고 (하느님) 아버지한테 아프지 않게 가라고. 아마 나도 죽으면 거기(공영장례식) 갈 거야. 어디 뿌러지든지 볶아먹든 알게 뭐야. (동자동 주민 L씨와의 면담 중)

2018년 이전까지 무연고사망자의 유골은 용미리 무연고사망자 추모의 집에 전체 봉안되었다. 그러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전 유골 안치가 어려워지면서 산골 처리하게 전환되었다. ‘장례주관자’의 유골인수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의 유골이 고인의 의사에 따라 봉안되거나 산골 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상황이다. 현재 장례주관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률적 방법으로 유골이 처리되던 방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다’ 빈소에는 운구와 유골 운반 시 상주와 장례참여자들이 착용하는 흰 장갑과 눈물을 흘리는 장례참여자에게 건네주기 위한 손수건이 상비되어 있다. 산골이 이루어진 후 장례참여자들이 끼고 있던 흰 장갑은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과거에는 이 장갑들이 바로 소각되지 않고 동자동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사례 III-19]

승화원에 가서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 가면 (장갑을) 깨끗이 빨아놓았어요. 자기도 쓰려고 모아놓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장갑은 껴야 되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가져가니까 전번에 한번 물어보더라고 또 바뀌었더라고요 반장님이 꼭 챙겨주셨어요. 동자동에 왔어요, 라고 하면. 한 2-30개씩 줘요. 깨끗한 걸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버리기도 하고 갖다가 놓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장갑들을 모아서 이렇게 주시는 깨끗이 빨아서 소독해서 이제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건네 주시는 분이 사실 뭐 바뀌시거나 하면 또 받을 수가 없는데 아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동자동이 쪽방에서 왔다는 걸 알고 꼭 챙겨서 주세요. 한 3년 전부터 얼마간은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를 쓰다가 또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러면 모아놨다가 또 장례 할 때 또 쓰고 그래요. (동자동 주민 F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공영장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결은 이처럼 의외의 지점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결이 곧 관계의 외연을 생성하면서 상호부조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인식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통사회에서 상장례를 비롯한 가정의 의례가 가족 뿐 아니라 혈연 및 지연공동체 성원들의 노동력, 현물 등의 이바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하는 지점이다. 특히 상례는 예정된 의례가 아니기에 경제적 문제에 가족을 봉착하게 만드는데,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문제를 경감시키도록 이바지를 했던 것이다. 상호부조 역시 같은 이유로 결성되었던 것인데 장례식장 장례의 일반화로 이러한 공동체 내부부의 문화는 소멸되었다. 상호부조가 불가해진 여건에서 장례식의 책임은 온전히 상례에 봉착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공영장례는 이렇게 ‘상호부조가 봉쇄된 상황’에서 그 출현이 필연적인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2. 리미널(liminal)함이 증폭되는 무연고사망자의 몸

공영장례가 제도화되기 이전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의과대학 해부실 습용 카테바로 기증되거나⁵⁰⁾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장(直葬)처리되었다. 오랫동안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죽음 의례를 통해 죽은 자의 혼과

50)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 시체로 공급받았던 관례가 1990년대 말부터 시신 기증의 증가로 깨지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이 해부용으로 제공된 사례는 한 건이었다(송병기 2023).

분리된 후 다시 통합 단계를 거침으로써 의미화되지 못하는, 철저하게 물질화된 몸으로 존립해온 것이다.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을 물질화시켜 보는 태도는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이 거쳐 가게 되는 많은 공간에서 포착된다. 현재 공영장례 제도로 인해 의미화의 국면이 무연고사망자에게도 오지만, 의례가 치러지기 전까지 무연고사망자의 ‘사자(死者)’로서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물질화된 시신이자 처리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죽은 몸은 의례 속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사자의 혼이 안정적으로 죽음의 세계와 통합되는 시점까지 전이적(liminal) 성격을 지니게 된다. 주희의 『가례』를 해설한 15세기의 『성리대전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속광’이라 불리는 ‘족광(屬纊)’ 절차가 확인된다. 코 위에 새 풀숨을 올려놓아 숨의 유무를 확인하는 이 절차를 통해 죽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 풀숨이 움직이지 않으면, 즉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음이 확인되며 ‘혼백(魂魄)’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고복, 염습, 매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교적 상례를 기술한 예서는 매장 단계에서 혼백의 분리가 일어나고, 죽은 이가 조상신이 된다고 본다. 이에 비해 관행은 상례를 조상신이 되는 망자(亡子)에 대한 예우보다는 시신 처리의 단계로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장철수 2001).

입관 이후 매장 단계 이전까지 송장의 부패를 막기 위한 각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곤 한다. 냄새와 몸의 변화로 부패가 확인되기 때문에 죽은 몸은 상징 체계가 덧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자체로 ‘오염’을 표상하게 된다.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시신의 부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패 자체는 필연적인 죽음 이후의 경과로 산자에게 인식되며, 죽은 자의 혼이 조상신의 세계에 접근해가는 과정과도 조응하는 것으로 간주되고는 한다. 죽음 의례에서 육체와 혼의 분리 이후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탈상 후 길제를 통해 망자는 죽음의 세계에 온전한 성원으로 안착하게 된다(이용범 2009: 40). 이에 비해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이러한 죽은 몸을 수용하는 주체의 부재로 인해 부패 자체가 미치는 물질적인 부정적 파급력 면에서만 그 존재의 인식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즉 죽음의 세계에서 성원권 획득은 물론이고 육체와 녀의 분리 및 죽은 자와 연동된 산 자의 상태와 조응하는 단계로서의 과도기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부패가 예정된, 혹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처리 난망한 물질로 자리매김 되어 있고, 따라서 의례의 단계로서의 ‘경계성’과는 다른, 관리와 처리 면에서 빠른 처리를 통한 소멸이 촉구되는, 여기저기서 그 존재를 밀어냄으로써 주변에 위치하는 ‘경계성’을 획득하게 된다.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이유로 그 처리가 유예되며 경계적 상태에 놓인 시간을 길게 경유하게 된다. 따라서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이 경계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각각의 이유들은 서로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번째로,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사망 시점에서 많은 시간 경과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패가 심하게 일어나 염습을 위해 몸을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훼손되어 있거나 구더기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염습이라는 절차를 통해 의례에서의 ‘정화’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여느 시신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의미다. 더구나 무연고사망자로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절차가 최소 보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염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유예되고는 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연고사망자 시신을 염습하는 시점에서는 수의를 입히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진다.

[사례 Ⅲ-20]

이를테면 이를 테면 만약에 구더기가 생겼다. 그럼 구더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네 뭐 소독을 하든가 그냥 집어넣어 갖고 우리한테 올 때는 구더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면 이제 그거를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입관실에서 물을 뿌릴 수 없게 돼 있어요. (장례지도사 Y씨와의 면담 중)

구청 주무관이 고인의 연고자를 찾고 시신 인수에 대한 회신을 받기까지, 즉 무연고사망자로 확정되기까지 안치실에서 시신은 최소 보름에서 대략 한 달까지 머물게 된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을 최소로 잡았을 때 15일이라는 기간이 추산되어 이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안치료가 지급되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적 절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로 확정되기까지의 시간은 보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추가 안치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 병원들은 무연고사망자 시신 안치를 애초부터 거부해왔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고인에 대해서는 장제급여 8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시신에 대한 염습을 장례식장이 직접 행하지만 무연고사망자의 염습은 시와 계약한 A사 공영장례팀 장례지도사들이 직접 담당하는 게 지금의 체계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염습 시점이 더욱 늦춰진다. 무연고사망자 시신에 대한 안치료가 안치된 장례식장에 지급되기 시작한 게 2021년부터이고 이 전에는 안치료 지급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례식장들은 하루에 평균 10만원이 넘는 2023년 시점의 안치료의 반값 정도에 불과한 6만원으로 하루 안치료를 상정하고 이를 15일 치만 지급한다는 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례 Ⅲ-21]

Y: (장례식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 시신 안치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런 데 (의례에) 돈 쓰지 말고 시신을 좀 케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안치실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죠. 의전업체한테 운영하라고 그러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매년 계약을 하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껏 만들어두었는데 2년 만에 시에서 그만 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아요.

연구자: 그럼 또 장례식장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Y: 반발할 게 없죠. 개네들은 좋지. 무연고는 시에서 다 뽑아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차피 그쪽(장례식장)에서 맡으면 되니까. 지금 같이 정체가 있는 건 없죠.

연구자: 정체됐다고 사실은 영세 장례식장에서는

Y: 저는 자기네들이 저기 시신을 받아야 되는데...모르는 사람들은 (무연고사망자 시신을) 뭐 밖에다 꺼내놓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빈소가 거의 다 차고 지금 한 개 두 개 정도 남았어. 무연고시신이 오면 그거(남은 안치 공간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빈소가 딱 찼으면 보통 안치실이 빈소보다 한두 개가 많아요. (장례지도사 Y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무연고사망자 시신을 안치하는 장례식장들은 공통적으로 ‘시신들이 빨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연고사망자 시신은 시신이 부패된 채로 최소 15일 이상 안치실을 차지하게 되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다.

무연고사망자들의 평균 안치일이 한 달 가량이라면 외국인 무연고사망자들의 안치일은 77일로 전체의 2.5배에 달한다.⁵¹⁾ 이렇게 안치일이 긴 것은 외국인 무연고사망자들의 주소지가 허위인 경우도 많고 연고자를 파악하고 의향을 확인하는 절차가 최소 2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COVID로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안치실에 공간이 부족해서 ‘안치 기간이 긴 무연고사망자들의 시신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시신을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고 장례식장에서 성토했기도 했다. 이때에는 서울시립승화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온종일 화장로를 가동시켜도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23년 1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장사계획안에서 ‘화장로를 확충하고, 재난을 대비해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25)’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사망 시점에서부터 화장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유독 팽창된, 여타 시신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방해’하기도 하는 물질로 위치

51) 장나래(한겨레), “11개월 넘도록 안치실에...더 애달픈 ‘무연고 이방인들’”, 2023.1.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6977.html

지어지곤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무연고사망자가 입원해있던 병원의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없으므로 인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의 이동이 지연되어 무연고시신의 경제적 상태가 연장되기도 한다. 고인의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하면서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는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병원 원무과에서 출관증(시체 발생 보고서)이 발급되어야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시신 운구가 가능해지는데 병원비 납부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 단계에서 지연이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염습 단계에 이르는 시간이 연장된다.

세 번째로,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인해 무연고사망자는 사망했음에도 사망한 존재로 존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무연고사망자는 ‘행정적’으로는 망자가 아닌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이도저도 아닌 (betwixt and between)’⁵²⁾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서 30만 원 가량 비용을 소요해서 받을 수 있는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사망신고’가 불가능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⁵³⁾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 발급 자체를 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언론에 의해 이루어지자 2023년 3월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사망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가족관계등록선례를 제정했다.⁵⁴⁾

52) 빅터 터너(Victor W. Turner)는 반 개념의 통과 의례에서의 ‘전이 기간(liminal period)’에 대한 사회 문화적 속성을 검토하며 기존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구조 사이의 기간과 상황을 ‘문지방성(liminality)’에 대해 고찰했다. 문지방성은 그 과도기적-이도 저도 아닌(betwixt and between)-상태 자체가 의례적으로 오염시키는 존재, 기존 질서와 격리된 존재로 만든다고 논한다(빅터 터너 2001).

53)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를 치른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를 누락했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필요한데, 한 건당 30만원 가량 드는 비용이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은 탓이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 7399명 중 4%가 이러한 이유로 서류상으로 죽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었으며 ‘예산이 없어서’라는 이유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을 몰라서’ ‘시간이 부족해서’ 등의 이유가 나왔다.

30만원 못 내서...서류상 ‘살아 있는’ 무연고 사망자 302명’, 한겨레 2023년 1월 26일, 장나래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6976.html

54) 무연고자 사망신고, 30만원 없어 못하는 일 없어진다, 한겨레 2023년 3월 27일, 장나래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322.html

네 번째로, 서류 처리의 정체로 인한 경계적 상태의 연장이 초래되는 경우다. 구청에서 고인의 연고자를 찾아 연락을 하고 시신 인수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아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위해 구청에서 A사로 서류를 보내게 된다. 이 서류를 받으면 A사 공영장례팀에서는 장례식 일정을 잡는다. 그런데 서류를 발송하는 주무관들이 보내는 서류들이 갑자기 물리는 경우가 있다. 공영장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업무 처리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신 위임이 결정된 후로도 보름이 더 경과해서야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사례 III-22]

여기서 화장 시키는 게 우리가 스케줄을 들어오는 대로 짝 세워서 차례대로 대로 화장 예약을 잡거든요. 근데 잡았는데 서류가 만약 미비하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 하고 해당 무연고사망자 화장을 그날 못 해요. 그럼 그 다음 날로 넘어가 되면 그러면 밀리잖아요. 자꾸만...여기서 서류에 필요한 걸 구청에서 사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구청 직원이 정확하게 몰라갖고 서류를 완비해서 보냈는데 이를테면 쉽게 구청장 도장이 빠졌든지, 관인이 찍혀야 되는데 관인이 빠졌든지. 그러면 또 부탁해서 여기 전화해서 서류 관이 찍힌 거 보내 달라고 쫓아가고 관인 찍어서 또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그쪽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니까.. 사망증명서를 보냈는데 팩스로 보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럼 새로 보내달라고 해야 하고. (장례지도사 Y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관료제의 문제에서 파생된 장례 일정의 지연은 공영장례가 가진 '체계'의 속성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가 수신되는 시점으로부터 6일 내 장례식이 치러지도록 조치했다. 장례식까지의 시간이 지연되면 자동적으로 안치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서류가 물릴 때에는 한꺼번에 2명의

고인이 아닌 3명의 고인을 합동장으로 모시는 기간이 생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증가로 인해 장례 일정이 늦춰지면서 경제적 상태가 연장되기도 한다. 서울 무연고사망자 증가의 추세를 볼 때 서울시립승화원의 그리다 빈소에서 매년 3인 합동장을 치른다고 해도 일정을 소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에 추가 빈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총 23기의 화장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추모공원은 11기의 화장로밖에 없어서 합동장 형식으로 치러지는 일정에 맞추어 무연고사망자 시신의 화장이 무리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합동장 형식을 포기하고 한 명의 고인을 위한 예식을 치르게 되면 운구 비용이 과다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딛고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영장례의 형태는 다시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3. 공영장례에서 드러나는 체계와 의례의 특징들

공영장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장례와 다른 특성들을 지닌다. 가정의례준칙 공포 후 3일장으로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표현되는데 3시간 내 치러지는 공영장례는 더욱 압축화 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의례의 절차 역시 ‘고인예식-운구-화장-산골’로 일반 장례보다 생략되는 부분이 많아진다. 김시덕은 현대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에서도 전통 상례로부터 지속되는 현상 몇 가지를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양복에 삼베두건을 쓰더라도 상복은 입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아무리 바빠도 부고와 감사편지는 쓴다는 것, 셋째는 운명한 날에는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밤샘을 한다는 것, 넷째는 문상 시 헌화를 하더라도 분향하고 절을 하는 전통이 유지되는 점, 다섯째는 아무리 간소하더라도 문상객 접객은 한다는 것, 여섯째는 영결식을 하더라도 견전은 지내야 한다는 것, 일곱째는 화장을 하더라도 염습도 하고 추모시설도 만든다는 것, 여덟째는 3일 탈상을 하더라도 삼우제 절차는 밟는다는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문화적 전통’으로 지속되는 바라는 것이다(김시덕 2010: 442-445). 그러나 공영장례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전통’⁵⁵⁾이 확인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의례의 재원이 다르다. 일반 장례는 가족이 그 비용을 지불하여 치러지지만 공영장례는 정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특성들이 장례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탈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영장례의 특성들 자체가 고유의 요소들로써 앞으로의 장례 문화와 죽음 문화에 변화를 초래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공영장례는 의례로서 문화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가 지닌 여러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장례가 제도화되기까지의 성립 배경은 다른 제도와 연동된 의례와 차별점이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상장례 역시 ‘체계’의 속성과 ‘민속’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공영장례와는 다른 양상으로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강정원의 ‘민속세계’와 ‘체계세계’ 개념과 캐더린 벨의 의례에 대한 논의를 근간으로 세계에서 의례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공영장례의 속성을 규명해본다.

강정원은 생활세계, 자연세계, 초월세계로 구성된 세계에서 생활세계는 체계세계와 민속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강정원 2020). 국가나 시장으로 구체화되는 수단합리성에 기반한 체계세계, 개별 주체와 문화에 의해 운영되는 민속합리성에서 출발하는 민속세계는 체계를 재생산시키는 체계인이자 동시에 민속인인 개별 주체를 공통적으로 내포한다. 강정원은 ‘민속문화가 사라질 수 없는 실제 영역이자 세계이며, 인간의 생존과 함께 언제나 존재한다(강정원 2020: 10)’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민속학의 현대화를 논하며 서민, 민중 등을 민속문화의 전승 집단으로 상정한 기존 민속학의 규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에 따르면 공영장례가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를 실천한 이들의 감정과 언어, 가치는 민속인으로서의 그것이라고 볼 수 있다.

55) 김시덕은 과거에 한국 문화의 요소로 존재했으나 현재까지 전승되지 않는 ‘전통 문화’와 과거 어느 때 형성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문화적 전통’을 구분해 한국 사회의 상장례 전통과 현황을 논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팔관회는 전통문화이고 동제, 탑돌이, 제사 등은 문화적 전통이다(김시덕 2010: 441).

이렇게 볼 때 공영장례는 여제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에 대한 민속세계의 요청에 의해 견인되어 체계세계 내에 형성된 장이라고 볼 수 있다.⁵⁶⁾

이수유는 강정원의 세계 도상을 도입하여 가족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생애 말년의 돌봄과 임종 후 의례의 실천이 이루어지다 국가와 시장의 개입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체계가 전적인 주도권을 지니기 이전, 즉 민속 세계의 자생성이 부각되었던 시기’의 ‘노환’에 대한 연구를 개진하기도 했다(이수유 2022). 그런데 공영장례 현장에 ‘민속 세계’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때에는, 이수유의 논의에서와 달리 더 이상 가족과 이웃에 의해 생애 마지막 단계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혈연 및 지연과 무관한 연고자들의 돌봄 속에서, 요양 병원에서 혹은 고립된 상태로 일어나는 죽음, 그리고 임종 후 의례를 장례식장 혹은 공공의 관할로 이양하는 선택 자체들 전체를 ‘현대의 민속세계’가 포괄하는 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이는 민속 개념이 불변하는 실재가 아니라 시기와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언어적 구성물(나인호 2011 이수유 2022에서 재인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범주다. 김시덕이 장례식장의 장례서비스가 우리시대의 새로운 민속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김시덕 2008)한 바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것이다.

앞서 공영장례 현장이 성립된 과정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 성립을 위해 분투한 주체가 민간 단체라는 점에서 정책적 ‘강제’로써 의례 체계와 공영장례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배층의 이해에 복무하는 이념과 규준의 제시를 위해 의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도, 민속

56) 중국어 단어인 민젠(民間)의 한국어 표기에 해당하는 ‘민간’을 분석하는 김재석의 논의(김재석 2019) 역시 ‘현대화된’ 민속세계에 대응하여 참조할 만 하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 정부와 당은 관과 민을 나누는 역사적 이분법을 답습하여 사회주의 체제 외부에 있는 모든 것과 민간을 연결시켰고 민간 영역이 궁극적으로는 소멸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민간의 역동성은 ‘사회주의 이전 시기로부터 사회주의 시기를 거쳐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가 나타나는 현 중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북한 신의주 지역에서도 그 정도와 범위를 달리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정리된다. 서구적 ‘시민’, ‘시민사회’에 이 ‘민간’ 개념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민속세계와 연결이 가능하다.

세계에서의 독자적 의례 수행과 규범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유교식 상장례가 규범으로 지시된 조선시대에도 무속의 죽음 의례는 병존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화장과 공동묘지의 사용이 강제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를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묘지규칙은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체계세계와 민속세계가 각각 다른 원리에 의해 구성되지만 어느 한 쪽이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서 공존하며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강정원의 논의는 의례의 영역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온 장사법은 효율적 목적의 달성만을 추구하는 ‘체계’의 차원에 속해 있다. 이러한 체계의 성격을 가진 법에 의해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의례 없이 직장 처리되어 왔다. 동시에 공영장례 빈소가 차려진 뒤로는 제도적 연고자와 그렇지 않은 연고자의 위계를 조성해왔다. 의례 없이 처리되는 시신들에 대해, 혹은 현황에 합당하지 않은 연고자 규정에 저항하는 목소리들은 체계의 변화를 유도해왔으며, 이는 곧 ‘체계’가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 민속 문화를 통해 상징과 도덕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는 강정원의 논의를 상기하게 만드는 지점이다(ibid.:26).

공영장례가 비록 ‘체계’에 저항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지만 제도화됨으로써 다시 ‘체계’의 한계를 지니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장례 복지 체제의 완비’ 자체로 공영장례의 대상이 되는 무연고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이 내포한 문제를 은폐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⁵⁷⁾다. 국가 차원의 장례복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바탕으로 장제급여⁵⁸⁾ 지원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사망자 시신 처리, 장사시설

57) 김재석은 중국 광둥성 정부가 ‘쌍백계획’을 통해 빈곤주민들을 국가의 사회복지혜택에 감사하는 주체로 만드는 과정을 살핀다. 복지혜택은 ‘부드러운 권력’의 형태를 취하며 빈곤주민과 상호작용하는 사회복지사는 인성화된 국가로 체현된다. 복지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국가에 ‘감은’의 마음과 부채의식을 지니게 되며 자영의 주체 주민들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통치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됨을 논한다(김재석 2021). 인성화된 권력의 형태로 복지제도를 조명한 이 분석의 논점은 공영장례의 수혜자가 산 자가 아님에도, 공영장례 제도 자체가 사람들에게 환기시키는 바를 고려할 때 적용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8)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1구당 8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4쪽).

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다(박진옥 2023: 45-47). 현재 ‘공영장례’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국가의 통치성이 강화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시키기는 어렵다. 조선시대에 ‘여제’와 ‘수륙제’로 무연고 영혼을 위로하였던 전례에 대응하는 의례가 근대 이후 부재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무사귀신’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전통적으로 죽음의례의 근간을 이루던 영혼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죽은 몸은 물질화된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의례를 통해 상징화된 차원에서 산 자들 사이에서 존립하게 된다. 무연고사망자의 죽은 몸에 관해 법제도는 ‘물질화된 몸’에 관련된 언어만을 명시했고 이로써 공영장례 성립 이전까지 무연고사망자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상징화될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공영장례의 지향은 현재 공영장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위 중 하나가 K라는 점과도 직결된다. ‘여제’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여러 의례를 집전해온 S는 연고자가 최대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영장례의 지향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 즉 마을 공동체의 상호부조가 사라진 환경에서 ‘제 손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족구성원의 ‘사람다움’을 성립시키는 요건이 된 환경 자체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S는 전통에 천착함으로써 ‘여제’에 해당하는 의례를 수행하되, 오늘날의 민속문화의 변화로 인해 의례의 이념마저 바뀔 수 있다는 점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공영장례 현장에는 공영장례만의 민속성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공영장례의 성립 과정 외 현재의 틀 안에서 그리다 빈소에 자원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이들과 유족 및 지인들 그리고 요일별로 방문하는 다른 종교 봉사자들에 의해 이 성격이 형성된다. 빈소 내에는 유교식 상차림이 이루어져 있지만 요일별로 고인예식 마지막에 덧붙여지는 기도는 당일 종교봉사자에 따라 그 형식이 달라진다. 운구가 이루어진 뒤 빈소에서 행해지는 종교 예식 역시 마찬가지다. 고인과 생전에 일면식 없던 이가 상주를 맡고 운구와 산골에 참여하는 공영장례만의 관례, 여기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소통, 상호 작용 역시 공영장례만의 민속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캐더린 벨은 의례가 특정한 본질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 역설한다. 의례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인간 존재들과, 힘과 권위와 가치의 무한한 근원들 사이에서 맺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잘 정돈된 관계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선택된 매개(캐더린 벨 2007:11)’라고 벨은 신중하게 언어화한다. 의례라는 것을 특정 명제로 수렴시키지 않고, 의례라는 것에 고정된 의미와 형태를 부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실패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정리다. 의례에 대한 다양한 정의, 이론, 견해,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없으며 각각의 설명들이 시대와 장소를 반영하는 점은 분명하다.

의례가 가진 복잡성을 간과하고 특정 형식이나 범주로 환원하려는 설명을 극히 경계하면서도 벨은 ‘유사 의례(ritual-like)의 성격’들, 즉 의례를 의례답게 만드는 특성들을 압축해 설명해냈다. ‘형식성’, ‘전통성’, ‘불변성’, ‘규칙 제어성’, ‘성례의 상징성’ 그리고 ‘수행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성격들은 강정원이 논한 체계성 내 하위 특성들 및 민속성 내 하위 특성들과 교차하기도 한다.

‘형식성’은 규정적이고 제한적이며 비개인적인 특성을 지시한다.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억제함으로써 동시에 무엇이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다. ‘전통화’란 일련의 행동들을 예전의 문화에 있던 행동들과 일치시키려 하거나 철두철미하게 그것과 일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시도다. 예전 관행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혹은 단순히 과거와의 연계를 불러일으키는 관행들을 창출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불변성’은 정확한 반복과 육체적 통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련의 훈련된 행동 속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를 무시하는 속성이다. 의복 착용, 식사, 걸음걸이, 일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배설물을 겸손히 처리하는 방법까지 관찰하는 수도자의 생활 양식이 바로 불변성의 대표적 예다. ‘성례의 상징성’은 존재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 표현. 국기, 기념물 단순한 신호 이상의 것으로 집단의식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성격을 일컫는다.

‘규칙제어성’은 공동으로 승인된 행동 패턴을 따르게 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조절해 인간의 상호작용 고무하는 성격이다. 스포츠와 전쟁에서 보이는 특성이다. ‘수행성’은 다양한 감각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성이다. 참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인식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복잡한 감각적 경험을 하게끔 이끄는 게 수행성이다. 수행의 또 다른 특징은 틀 짜기(framing)의 역동성이다. 성과 속, 특별한 것과 통상적인 것, 초월적 이상과 구체적 현실 등의 구분이며 무엇이 신성한지를 지시하는데 있어 틀짜기를 통한 의사 전달이야말로 수행에 본질적인 것이다 (ibid.:273-335).

이렇게 벨은 의례를 특정 종교적 제도들이나 종교 전통의 전유물로 자리매김 시키지 않는다.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 ‘의례화’의 방법을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정리해낸다. 그리하여 의례를 창출하고 구성하며 재생산하는 기본적 방식을 보여준다.

공영장례에서 부각되는 의례적 특성은 ‘형식성’, ‘규칙 제어성’, 그리고 ‘수행성’이다. 이는 공영장례에 처음 오는 이들의 의례 참여 형태에서 두드러진다. 공영장례의 형식은 다른 장례식과 다르다. 그럼에도 처음 방문한 이들도 공영장례 현장에 실무자로 일하는 장례지도사와 K의 활동가들에 의해 가이드를 받아 고인 예식에 참여하고, 운구와 이후 과정에 참여자로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형식성’ 때문이다. 또한 다른 의례와 다른 공영장례만의 짜임새에도 불구하고 ‘규칙제어성’에 의해 이 공영장례의 형식을 이해하고 사람들은 무연고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특수한 방식을 수행한다. 이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공영장례 참석을 거부하기도 한다. 예컨대 기독교인들은 ‘전통 유교식’ 상차림이 빈소에 보이는 것을 보고 고인예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는 공영장례가 내포하는 ‘규칙제어성’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합동장’이라는 공영장례에 대한 거부해하는 반응 역시 ‘일반 장례’의 ‘규칙제어성’을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면이라는 점에서 공영장례만의 ‘규칙제어성’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공영장례 현장에서는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 의식이 치러지더라도

기꺼이 참여하여 고인의 넋을 위로하려는 자원활동가들이 존재한다. 또한 고인 지인이나 혈족이 아니지만 마지막 길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 빈소를 찾은 자원활동가들이 다수였다. 이러한 이들의 동기가 실제 의례의 장에서 작동하는 지점이 공영장례의 수행성이라 할 수 있다. 공영장례가 제도화되기까지의 과정 자체 역시도 의례화(化)의 수행성을 드러낸다. 이에 반해 ‘전통성’, ‘불변성’, ‘성례의 상징성’은 기존의 가치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의례에서 부각되는 특성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영장례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제 4 장 공영장례와 죽음 문화

본 장에서는 공영장례가 지시하는 사회적 관계 및 죽음 문화⁵⁹⁾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공영장례는 현 시점의 죽음 현상과 이에 대한 수용의 양상의 단면을 드러낸다. 죽음이 발생하는 여건의 변화, 죽음 의례가 집전되는 단위와 환경의 급변속에서도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죽음에 대한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민간의 인식은 어떠한 연유로 지속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의례 수행 방식을 고수해야한다거나 공영장례 현상이 활성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기저에 어떠한 이념이 자리잡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것이다. 공영장례 현장은 죽음 문화와 사회관계의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시공간이 되기도 한다는 점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59) 여기서는 인간을 ‘자신이 뽑어낸 의미의 그물망 가운데 처한 존재’로 본 막스 베버의 정리에서 ‘의미의 그물망’을 ‘문화’로 정의한 클리퍼드 기어츠의 용례(기어츠 2020:13)를 따른다. 이 장에서 제시되는 구술자의 기술과 연동된 설명에서는 ‘문화’가 이와 달리 ‘생활양식’ 혹은 집단에서 물려받은 ‘사회적 유산’과 등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죽음 ‘문화’의 향방을 노정하는 장으로써 공영장례를 논할 때의 ‘문화’란 여기서 밝힌 정의에 입각한 것임을 밝혀둔다.

제 1 절 사회관계 및 죽음 문화의 재구성

1. 공영장례와 새로운 죽음 문화

제도적 측면에서 직계 가족에 의해 ‘인수되지 않은 시신’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 하에서 관리와 처리에 국한된 접근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접근은 ‘인수되지 않은 시신’을 철저히 물질화시켰다. ‘인수되지 않은 시신’의 증가는 ‘무연고사’라 명명되기 시작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했고, 장례를 거치지 않고 처리되어온 무연고사는 안타까운 죽음을 표상했다. 2018년에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장사안내 업무’에서 장사법이 규정한 연고자 외의 가족 및 친족,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친구와 지인, 같은 활동을 했던 이들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23년 2월 혈족과 법률혼 배우자 외에도 장사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장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기존의 혈연중심주의적 죽음 의례의 관행과 정상가족주의가 법제도로써 장사제도에 행하는 구속력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 속에서 존립하고 있는 ‘그리다’ 공영장례 서비스는 실로 국내에서는 물론 한국 밖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선진적 공공 장례 현장이기도 하다.

2023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은 ‘장례복지’ 및 장사분야 재난 대응에서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례복지 확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이 2021년 42% 이루어진 현황에서 2027년에는 70%에 이르게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참여를 확대(~’25)’하며,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으로 확대(~’23)’,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死後)복지’ 선도 사업 도입(~'24)을 검토하겠다는 세목들은 공영장례 조례가 생긴 시점인 2018년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혁신적이다.

어떠한 죽음이든 의례를 요청한다는 당위가 무연고사망자 장례의 제도화를 성취하는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2장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죽음 의례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죽음관의 측면에서 무연고사가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이라는 점이 여기서 당위성을 획득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질화된 시신에 대한 처리로 종결되었던 죽음을 죽음의례를 거쳐 의미화된 죽음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당위, 어떠한 여건에 처한 존재의 죽음이든 장사가 치러져야 한다는 인식은 세금이 다른 사람의 죽음에 쓰인다는 점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

세속화 이전 전통사회에서 죽음 의례 집전의 정당성은 죽은 자의 혼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제대로 된 죽음 의례를 거친 이후에야 죽은 자는 죽음의 세계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있다고 믿었고 그로써 산 자들의 세계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여긴 것이다. 이러한 사자(死者)의 상태에 대한 관념이 오늘날까지도 일상 담화 안에서 소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혼이 된 사자(死者)의 위험이 의례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존의 혼백관에 기반한, 죽은 자가 현실에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죽음 의례는 왜 요청되었는가? 오늘날의 죽음 의례는 사자(死者)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사례 IV-1]

그저 항상 좋은 곳으로 가서서 생전에 드시지 못했던 음식들을 드시고, 느끼지 못한 행복도 함께 느끼시라는 인사를 자주 드립니다. (공영장례 자원활동가 N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은 고인에게 ‘인사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무연고사망자들이 생전에 어떠한 삶을 누렸는지 간에 이들에게 인사를 건넬으로써 사후에라도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가 의례에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인 예식 후 화장로로 운구가 이루어지는 동안 관 위에 준비해 온 편지를 올리는 자원봉사자에게 편지의 내용을 묻자 그 역시 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들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의례가 어째서 요청되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조선 시대에 유교가 정책적으로 의례 규범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굿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굿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직접적 소통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전에 인연이 없었던 무연고사망자에게 인사를 하게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의례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즉 상호작용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인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곧 사회라는 것을 뒤르캬와 고프먼을 경유해 논증하는 김현경의 논의는 무연고사망자를 위해 요청되는 의례 근간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적 '인간'은 공동체에서 자리를 획득하여 '사람'이 된다.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이 곧 '사회'다. 뒤르캬는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의례를 통해 집단의 영속성이 지켜지며 의례에 참여하는 개인은 집단에 할당된 신성한 힘의 담지자로서 의미를 지니게 됨을 드러낸다. 창조주의 대한 복종 의무 때문에 인간간의 유대와 상호 의무 책임이 생긴다는 도식을 뒤집어 인간간의 관계가 창조주와의 관계에 투영되고 의례로 반영되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 설명은 성립된다. 뒤르캬에 주목한 고프먼의 수행성 논의는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생득적이거나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어떠한 본질이 아니라 상호 작용 속에서 사람다움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믿어주는 행위를 통해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이 다른 개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사회 공간 안에 현상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의례들, 즉 상호작용 덕분인데 모욕은 존엄을 파괴한다. 상호작

용 의례를 통해 지켜지는 존엄, 신성함의 원천은 사회다. 개체만이 가진 어떠한 본질이 아닌, 개체 내 ‘사회적인 것’이 바로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서 표현되고 확인되는 무엇이다.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개인은 다른 참가자들의 사람다움을 확인하는 동시에 남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해줄기를 기대할 도덕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의례적 의무의 이행이 곧 사회의 성원 자격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며 민주주의는 공적 공간에서의 의례적 평등을 근간으로 성립된다(김현경 2015).

상호작용 의례를 근거로 한 민주주의의 성립에 대한 논의는 현대사회에서 의례가 어떻게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지를 드러낸다. ‘무연고사망자’는 출생과 더불어 획득한 사람 자격을 지닌 존재라면 응당 거쳐야 하는 의례 자체를 죽음이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박탈당한 존재로 기술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른 성원들에게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지향이 심각하게 훼손된 양상을 여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존재가 된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의례의 요청은 바로 이러한 훼손을 복구시키려는 분투로 이해 가능하다.

[사례 IV-2]

남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참여한 (무연고사망자) 장례식 때 밥퍼 자원 활동하다 비었던 분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역에서 봤던 분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된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시신, 장례, 죽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놀려있는데 저는 여기 관심이 있어서 자원 활동을 시작했고... 직장 동료에게도 이 문제를 말하곤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 드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공영장례 자원활동가 L씨와의 인터뷰)

‘무연고사망자’의 사람 자격이 박탈된 현상을 목도하고 의례를 창출한 것은 산 자들끼리의 특정한 관계 맺음 양상에 대한 지향과 회구가 반영된 것이다. 사회를 구속하는 하나의 종교적 전통이나 의례 전통의 권위가 퇴색한 상황에서 의례는 구성원의 정체성과 연동된 표현의 매체로 부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세기 들어 창출된 술한 개인화된 의례들은 자

아를 통해 공동체와 사회를 규정하게 유도한다(벨 2007: 466-467). 그러나 공영장례는 ‘상장례’라는 전통적 의례의 흐름 속에서 다른 형식과 목적을 구축해가고 있다. 공영장례는 ‘창안된’ 의례라는 점에서 의례가 문화적 산물이라는 기원을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벨이 논한 ‘유사의례적 성격’들 가운데 ‘전통성’, ‘불변성’, ‘상징성’을 통해 그 권위의 합법성을 획득하는 의례와 차별화된다. 이 때문에 다양한 종교적 전통의 일부가 이물감 없이 혼재된 상태로 공영장례 현장에서는 존립하게 되며 다문화주의적 형식의 체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영장례 현장에서 중요시되는 것의 의례의 ‘수행’ 그 자체다.

2. 공영장례 현장에 존재하는 다른 입장들

공영현장의 정책적 지향과 다른 입장도 존재한다. 가족의 시신을 위임한 연고자를 윤리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들로 간주하는 표현들은 공영장례 현장 자체의 존립 근거와 위배됨에도 공영장례 현장의 구성하는 특정 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화되곤 했다. 이들의 담화는 가족의 장례를 직접 치르는 게 온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삼으며, ‘예(禮)’와 ‘장례(葬禮)’의 정도(正道)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통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사례 IV-3]

연구자: 앞으로 무연고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텐데요.

P: 나는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이 얘기하면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수확경 시대회 이런 거 1등 시킬 생각하지 말고 예절 교육만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야 나라가 되지...우리나라 안 되는 이유가 뭘 줄 아세요. 학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애를 안 낳잖아. 애 낳으면 학원 보내야지 지 가량이 찢어지는 줄 모르고 다 학원 보내느라고 난리야, 난리. 학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또 표현되잖아요. 30년만 있으면 인구가 2천5백만 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수입해야 될 판이여. 근데 하여튼 지금 어떻게든 그렇게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필연적으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연고사가... (O장례식장 P씨와의 면담 중)

무연고사의 증가가 인구구조의 변동에서 기인하며,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현재 시점의 인구구조가 '예'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논리적 비약 기저에는 사회재생산 단위로서의 가족 유지의 당위가 '예'와 등치되는 관념이 놓여있다. 이 관념 하에서 여성은 “부계혈통을 계승하여 가(家)를 존속시키고, 특히 제사를 봉사할 아들을 낳는 도구”(신영숙, 1991:50 이소윤 2023: 9에서 재인용)화된다. 이러한 관념이 어떻게 성립 가능한 것인지는 인구가 정치의 문제가 되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규명 가능하다. 200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 위기론은 사실 1960년대부터 실시된 가족계획사업 근간의 정치적 상상과 인식에서부터 연원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송병기는 논한다. 1960년대 초 인구란 한국전쟁 후 군사력의 척도였지만, 분단의 장기화가 뚜렷해지면서는 남한의 경제적·체제적 우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산업 발전에 동원되는 노동력으로 치환되었다. 이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은 농촌의 인구 증가 제한과 도시의 인구 증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펼쳐졌다(송병기 2023). 조은주는 가족계획사업이 가족의 규범과 국가의 생산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생애주기에 대한 관념을 사람들이 일상적 삶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게 유도한 과정을 보여준다(조은주 2018). 제3세계가 인구 과잉으로 빈곤화되어 공산화될 것을 우려한 서구에서는 인구의 '과학'적 통제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박정희 정권의 가족계획사업은 피임시술을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권하는 데 힘을 쏟았다. 여기서 정책적으로 권유되는 피임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힘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활용이었다. 발전된 국가의 모델로서 서구 사회가 상정되고 서구 사회와 같은 수준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다움의 척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생활 및 자녀 출산 계획도 여기에 맞게 조절되

어야 했고 이러한 기조에 조응하지 못하는 이는 낙후된 인습에 머물러 있는 이로 정체화된 것이다. 사생활의 영역으로서 가족이 국가주의와 결합했음을 드러내는 조은주는 한국의 출산율 역시 권력이 가치를 위계화 하며 가족에 권력을 작동시키는 맥락 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논한다. 196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며 신문의 칼럼과 잡지의 상담 코너를 통해 피임에 대한 담론이 일상화되었던 것처럼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의 위기를 ‘여성이 고등교육을 이수하면서 전통적 예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일상담화로 설명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조은주가 삶을 겨냥한 권력기술, 가족과 밀착한 통치가 재생산에 작동한 방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면, 위의 담화에서는 무연고사라는 죽음 현상에까지 권력기술과 통치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연고사 역시 인구 및 가족의 구조와 규범, 관념이 결부되어 접근되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사례 IV-4]

제사를 지내 보셨어요. 저희 집이 큰 집이기도 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려서부터 다 그거를 이제 기억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이 마흔 먹어서도 절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전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제사 지내서 가르칠 거 직접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냥 애들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거만 신경 쓰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는...여기가 빈소거든요. 그러면 유족이 오면 빈소의 상주가 되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주로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 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춰줘야 하죠. 빈소를 차리는 거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빈소를 차린 게 아니라. 근데 여기(‘그리다’ 빈소)는 (유족에게도 고인예식 시작되기) 10분 전에 (빈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빈소를 미리 차려야 하는 이유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애도할 수 있게끔 만들자, 라는 얘기를 해. 그런데 유족들도 지금 빈소에 들어와서 문상을 못하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오기를 어떻게 바라냐...만일 유족들이 오게 되

면 유족들이 빈소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문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옳은 건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중략)... **지금과 같은 형태는 제대로 된 장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장례지도사 Y씨와의 면담 중. 강조는 연구자)

여기서 ‘제대로 된 장례’라는 준거는 유교식 상장례를 마을 공동체 내, 집안에서 의례를 집전할 수 있던 상황에서의 형식과 부계혈연계승주의에 기반한 가제도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으로 계승(이소윤 2022: 9-10)된 전통 내 혈연 가족이 상주로 역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장례 의례의 형태에 의해 마련된다. 현행 공영장례 제도 실행에 있어 장례의례의 올바른 형태를 구축하는 데 예산과 시간이 할애되지 않고 일반 시민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세팅된 환경이 예법에 어긋난다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혈족’이 수행하는 전통적 죽음 의례의 전통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와 달리, 자체적으로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추모식을 개최해온 S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례 IV-5]

친족이라는 거는 목표가 아니고 시작점이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배워서 주변에 내가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값은 이제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갖고 가기보다는 정신을 살리는 거죠. **정신을 살리려면 가족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옛날대로 갖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공동체가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넓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옛날에도 우리가 가례를 중시 여겼던 거는 그냥 가르치기 쉬우니까 가례를 했던 거지 그게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혈연관계가 가장 어쨌든 설득하기 좋은 그리고 실제로 가족이 모여 사니까 이제 행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지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S의 원장 D씨와의 면담 중. 강조는 연구자)

S 측에서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예’의 본령을 지키되 그 형식을 바꾸어 의례를 구체화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의 담화들은 ‘전통’에 대한 다른 인식들을 드러낸다. 실로 위에서 드러나는 인식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전통’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설파하는 ‘유지되어야만 하는 가치’가 발화자마다 다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예’와 ‘장례’의 정도를 지킴으로써 도달해야 하는 것은 위의 두 담화에서는 가부장적 혈연중심주의가 수호되는 가족, 그러한 가족에 의해 주관되는 장례 형식이다.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하는 사유는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다. 상례를 치르는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버린 상황에서 시신 위임을 결정한 유족의 지인들은 어떠한 여건에 처해있는지에 관계없이 ‘연고자다움’을 지키지 못한, 즉 ‘연고자’에게 기대되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들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선은 장사제도가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따라 고인의 가족들에게 시신처리위임서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존재한다.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연고자들은 시신 위임이라는 선택의 사유와 인적사항을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고인의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등기우편에 대해서는 회신과 응답이 없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시신 위임 사유를 밝히고 이에 대해 서명하게 하는 것이 죄책감을 종용하는 단계일 수 있음을 구청 주무관들도 인지하고 있다(이소연 2022: 36-40). 시신을 위임하고 ‘무연고사망자’로써 가족을 고인으로 마주하게 된 고인의 제도적 연고자들은 빈소에 방문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빈소에서 유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침묵에 잠긴 채 슬픔을 억제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그 누구도 소통을 시도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K의 활동가와 A상조회사 공영장례팀의 직원들, 그리고 몇몇 종교봉사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K 활동가는 이렇게 고인의 유족들이 사정에 따라 공영장례를 택하게 된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신위임 단계 이전에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서 무연고사망자의 양산 없이 공영장례를 너른 선택지 중 하나로 위치

시켜야 한다고 보는 반면, A사 공영장례팀 직원과 몇몇 종교봉사자들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가급적이면 ‘도리를 다하여’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필요하다고 발화하곤 했다.

[사례 IV-6]

A사 공영장례팀 *** 과장님이 인터뷰할 때 어떤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면서 무빈소로 150만 원이면 장례할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안타깝다고 기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밀로 하기로 하고 기자한테 말은 했다는데.. 그 기사에 심지어 과장님이 공영 장례를 4년째 하고 있다고까지 실렸어요. 근데 4년 동안 이 일을 한 장례지도사의 결론이 무빈소가 낫다는 거잖아요? ..중략...공감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 해요...물론 고생하시는 걸 잘 알고 처음에는 이해해주는 게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4년이 경과했잖아요.

그리고 몇몇 종교봉사자 분들이랑 A사 과장님들.. 연고자분들이, 사별자분들이 잘 차려 입고 오면 한 소리 썩 하거든요.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직접 장례를 안 하냐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자꾸 ‘지인’이라고 칭해요. 시신 위임한 사람들은 연고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자꾸 지인이라고 하지? 저번에 (고인의) 아드님이 왔을 때는 아드님 저기 있는데 여기 앞에서 봉사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 장례에 와가지고 아들이 상주도 안 하냐고.. 들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럴까요? (K활동가 G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앞 절에서 ‘무연고사망자’의 범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연고자의 시신 위임으로 무연고사망자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장례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던 장례지도사의 발언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는 바로 혈연관계로 맺어진 주체가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장사를 치르는 게 온당하며 따라서 공영장례보다 혈족이 무빈소장례를 치르는 게 낫다는 의견과 상통한다. 무빈소장례는 대개 장례지도사를 동반해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입관과 운구-화장 혹은 매장 절차만을 거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는

데 이 장례를 치르는 가족 외 지인이나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영장례와의 차이이다. 즉 ‘무빈소장례’가 낫다는 논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의 죽음 의례보다는 가족의 시신에 대한 처리를 행함으로써 혈연으로서의 책무가 완성되는 현장으로 죽음 의례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유교식 상장례 전통은 부모의 상에서 삼년상을 요구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이러한 의례에 의해 구체화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의례는 효의 실천 그 자체였다. 유교의 조상숭배, 제사의례는 조상의 혼백이 일정 기간 세상에 존속한다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조상과 혈연으로 맺어진 후손이 비슷한 기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에 조상의 귀신은 후손과 잘 감응할 수 있고 후손이 드리는 제사에 감응하고, 보답으로 후손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후손은 조상의 귀신을 생전의 관계를 반영해 섬기는 것이 예가 되었고 귀신 역시 생전과 같이 가족 안에 머문다고 간주되었다. 유교적 이상을 논하는 『예기』는 산 사람을 보살피고 죽은 사람을 섬기는 양생송사(養生送死)가 귀신을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죽음 의례가 정치의 관건임을 논한다. ‘혈연을 기초로 삼는 ‘인륜’은 부모와 조상의 죽음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그 깊이가 확보되고 삶과 죽음이 연속되어 있다는 생사일여 관념은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원리로 승화된 ‘다는 것이다(이용주 2021).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만 치우친 정부의 장묘제도 제정 및 운용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의례 박탈로 인한 소외 뿐 아니라 조상의 묘지들, 즉 조상의 장소를 유지하려는 전통적 공동체 형태와의 마찰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도정은 칠전리 주민들이 혈연적·지연적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상징적 장소로서 조상의 장소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집중한다(이도정 2015). 이들이 묘지의 영토 점유를 지양하는 국가 정책에 반발하면서 혈연적 인연의 의미를 공간 면에서 드러내는 조상의 장소를 수호하는 것은 개체의 죽음 뒤에도 지켜지는 ‘인륜’의 실천 양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출산율 감소를 무연고사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공영장례의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시신을 위임한 연고자들에게 ‘전통적 윤리 준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현대 사회가 지위나 역할,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구성원이 서로에게 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가부장제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이념과 원리 면에서 대립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효도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가족에게 책무를 떠맡기는 것을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로 삼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가족이 지는 것이 온당하다는 도덕과 풍습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적부조 시스템이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동되는 ‘가부장제를 보완하는 국가’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사회의 기초 단위로 개인이 아닌 가족을 상정하게 되고 가족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대표자(호주)와 나머지 구성원으로 구분된다(김현경 2015: 184). 1장에서 죽음 문화의 변동을 논하며 한국 사회에서의 장례 의례의 공간이 산업화된 장례식장으로 이전되었음을 밝혔다. 이로 인해 장례 시 가족의 책무는 장례식장에, 혹은 상조회사에 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되었다. 오늘날 가족의 인륜이란 곧 장례식장에 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는 게 되어버린 것이다. 죽음 의례와 연동된 이러한 구체적 상황과, 사회적 약자 돌봄의 가족에의 책무 전가에 동원되는 도덕이 교착된 지점에서 시신을 위임한 연고자에 대한 비난이 행해진다.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를 겸하고 있는 단체 K는 법률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대신 장례’ 운동 및 법률혼, 혈연 중심적 ‘건강가족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2023년 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 통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혈연의 가족이 아니어도 치를 수 있게 된 변화를 희소식으로 K 홈페이지에서는 전했다. 이러한 지향은 과거에는 공영장례 현장을 현실화시켰고, 동시에 공영장례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이 제도화된 현장에 공존하게 된 주체의 죽음의례에 대한 다른 지향과 긴장 관계에 놓인다. K는 장례라는 영역에서 배제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돈이 없어도, 연고자가 아닌 이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면, 즉 새로운 형태의 장례가 보편화되면 전체적으로 장례비가

절감되는 순간까지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자원활동가로서 ‘그리다’ 빈소를 찾아오는 이들은 장례 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영장례를 성립시킨 지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IV-7]

인프라 구축에는 노하우와 인력,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한데, 조례 수준의 낮은 법체계가 아니라 국회 입법의 법률(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를 강제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죽음도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고요. 공영장례는 소득이 없거나 낮은 불우계층, 독거노인, 유기 영아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존엄한 삶의 마무리, 장례비용 부담 경감 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장례 자원활동가 L 씨와의 면담 중)

죽음을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능력과 연동된 책임으로 전가되는 가운데 1인가구의 증가로 폭증하는 무연고사, 혈연이 신성시되는 전통적 죽음 의례 관념과 결합된 상업화된 장례 의례의 보편화 사이의 심연이 발생하는 맥락은 단순하지 않다. 현장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장례 복지 확대 과정에서 자원의 배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제 2 절 공영장례의 표상

1. 개별성이 약화된 존재로서의 무연고사망자

일반적인 장례식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에서는 고인의 개별성이 약화된다. 이는 공영장례 빈소에서 접할 수 있는 고인의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부터 드러난다. 빈소 앞 게시판에는 의례를 통해

기리게 되는 고인의 성명과 사인, 사망 장소와 나이가 기재된 부고가 걸려있다. 고인 예식에서도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영정 사진은 고인이 사망한 지역 구청장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생전 고인의 유족이나 지인을 통해 화질이 좋은 증명사진 혹은 그에 준하는 이미지를 제공받아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영정사진 없이 의례가 진행된다.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사망자는 구청에서 부여된 이름 앞에 ‘무명’이 붙은 채로 기려지게 된다. 고인과 생전에 인연이 있던 참여자가 아니라면 고인의 이름과 사인, 거주지와 사망 장소 및 사망 원인만으로 고인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영정사진이 없다는 점은 공영장례 현장 특유의 표상을 지니게 유도한다. 공영장례 현장에서 기리는 대상이 되는 이들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영장례 참여자 및 관계자에게 ‘죽음’과 등치된 존재로 즉시 각인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영장례 현장은 죽음을, 그리고 타인을 ‘추상적으로’, ‘강력하게’ 환기하게 되는 시공간으로 부상하게 된다.

폴 리코르는 ‘죽음’이라는 말에 얽힌 세 가지 의미가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간과 연동된 죽음 이해의 정교화를 꾀한 바 있다. ‘죽음과 죽은 사람(dead person)의 혼동’, ‘죽음과 죽어가는 자(dying person)의 혼동’, ‘이미 죽은 자’와 ‘이제 곧 죽어 있을 죽어가는 자’의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생성되는 인격화된 죽음, 즉 죽음의 ‘의인화’를 세 가지 종류의 죽음 혼동 의식으로 제시한다. ‘죽음과 죽은 사람의 혼동’은 ‘미래에 내가 죽은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상상,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죽은 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관념과 결부된 것이다. ‘죽음과 죽어가는 자의 혼동’은 죽어가는 자가 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안에도 외부자의 시각을 견지할 때 성립되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죽음의 의인화’는 전염병, 전쟁,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집단적인 죽음 속 두드러지는 인식으로,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의 무차별적 집합체의 일부라고 느낌으로서 생성되는 감각이기도 하다(Paul Ricoeur 2009; 이창익 2020: 208-217에서 재인용). 이러한 ‘혼동’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시간과 결부하여 죽음을 수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이라고

바뀌 말할 수 있기도 하다.

[사례 IV-8]

사회적 성취, 수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겸손해지더라고요...한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 오시는 고인들 중 불의의 사고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저보다 연배가 어린 고인들을 볼 때마다 더욱 그렇죠. (공영장례지원 자원활동가 L씨와의 면담 중)

이러한 사회에서는 비단 공영장례가 아닌 죽음 의례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포착된다. 공영장례의 대상이 되는 무연고사망자 개체가 아닌 ‘죽음’ 자체에 대한 인지에서 비롯된 감정이기 때문이다. 일반 장례식이 아니더라도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추모식이 과거보다 활성화된 만큼 여타 추모 의례에서 느낀 바에 대한 표현으로 이 사회가 나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수용이 될 만한 것이다. 폴 리콥르는 죽음과 관련된 개념적 혼란을 인식적 ‘문제’로 성찰했지만, 이와 같은 죽음과 무연고사망자를 등치시키는 관념은 공영장례 현장의 고유한 측면을 드러내는 작용을 한다. 직업이 무용수인 한 20대 청년이 공영장례 자원활동의 동기로 ‘죽음’에 대한 체험을 꼽았던 점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독해 가능하다.

공영장례 현장에서 고인의 개별성을 표상하는 영정사진 습득을 비롯하여 고인의 생애사에 대한 공유의 노력은 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긴장을 이루며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성을 사장시키고 ‘무연고사망자’라는 범주만이 존재하는 양 ‘무연고사망자’의 존재가 거론되는 관례를 타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위한 고인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되 이를 드러내는 방식의 모색은 K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연고사망자의 거주지, 사인, 가족의 신상 등은 무연고사망 위험군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화는 필요한 정보로 간주된다.

버틀러는 부고가 애도가능성(grievability)의 공적 배분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삶, 소중히 여기고 보존

할 가치가 있는 삶,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삶이 부고를 성립시키며, 부고가 나가지 않는 죽음은 슬퍼할 만한 삶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매장되지 않은 죽은 삶(the unburied)와 마찬가지로는 것이다(버틀러 2018:66). 이러한 맥락에서 공영장례에서는 무연고사망자들의 죽음을 애도가능한 상실로 수용될 수 있게 부고를 내고 현장에도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부착하고 있다.

요일마다 다른 종교봉사자들이 장례식에 와서 종교예식을 치른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화요일에는 가톨릭 연령회, 수요일 토요일에는 목사님, 월요일 목요일에는 불교 봉사단, 금요일에는 수녀님이 방문하여 각 종교의 예식을 치른다. 고인의 종교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종교예식의 집전은 공영장례가 고인의 '개별성'이 약화되어있는 의례라는 점과도 통한다. 고인의 유족이나 지인이 개신교도인 경우 '그리다' 빈소에 차려진 유교식 제사상에 대해 반감을 표하기도 한다고 한다. 한국의 '전통적' 상장례 전통을 따라 간소화된 형식으로 차려진 상이 공영장례를 위해 만들어진 빈소에서 중요한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제사상이 공영장례에 할당된 예산을 청구하는 데 있어 그 현장을 증빙하는 시각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종교예식을 집전하기 위해 '그리다' 빈소를 방문하는 종교봉사자들은 이러한 '그리다' 빈소의 조건을 수용하고 자신이 속한 종교의 전통과 충돌하는 요소들에 대해 '유연하게' 사고해야한다고 밝힌다. '그리다' 빈소를 방문하는 종교봉사자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유교적 예식의 말미에 목사님의 기도나 수녀님의 기도가 더해지는 예식의 마무리가 가능해진다. 종교 사제와 수도자들의 공영장례 참여 동기는 무연고사망자가 배제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인을 위로하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도덕적 책무에서 비롯된다. 평신도 봉사단의 참여역시 같은 동기에서 발원한다.

이러한 특성은 명절 전후와 연말에 '불행한 죽음'의 표상으로 공영장례를 취재하러 오는 언론사의 기획과 기사에도 반영된다. 여기서 장례식으로 기려지게 되는 개인에 대한 고려는 없다. 무연고사망자는 쓸쓸하게 가족도 없이 세상을 떠난 망자라는 프레임에 입각한 재현의 현장으로 공

영장례 현장은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공영장례 현장에서 고인의 개별성은 지속적인 공영장례 참여자에 의해 운구 시 여름이 되면 강해지는 관으로부터의 냄새, 산골 시 지방을 태울 때 남는 이름의 모양, 뼈의 양과 색상 등으로 확인⁶⁰⁾된다.

2. 공영장례가 그려내는 사회관계

‘그리다’ 빈소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빈소 문 옆에는 ‘그리다’ 빈소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기재된 현판이 걸려있다. 그리고 빈소 앞에는 “장례가 진행중입니다. 편히 들어오셔서 고인을 위해 마음을 나누어주세요” 라는 구절이 기재된 입간판이 서있다. 가족 혹은 지인의 화장 때문에 서울시립승화원을 방문했다가, 이 입간판을 보고 빈소에 들어와 기도를 올리거나 묵념을 하고 헌화를 하는 시민들이 상당 수 있다.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찾아온 자원봉사자들, 정해진 요일마다 빈소에 나와서 저마다의 종교 형식에 맞게 예식을 진행하는 종교봉사자들 모두 생전 고인과 인연이 없던 사람들이다. 즉, 공영장례 현장에는 고인의 가족 혹은 지인들이 참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인과 생전에는 모르던 관계의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참여하는 경우, 고인예식이 시작되기 전, K의 활동가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주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가족이나 지인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원활동가가 대리 상주를 맡게 된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연유로 ‘그리다’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식에 총 19회 참여하는 동안 13회 대리 상주 역할을 수행했고 두 고인의 대리 상주 역할을 한 번에 수행한 경우도 두 차례 있었다. 개신교도인 자원활동가는 고인예식이 전통 유교예식을 따르는 만큼 절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이에게 대리 상주를 위임하곤 한다.

60) 2023년 2월 18일 K의 활동가 M씨가 집필한 『애도하는 게 일입니다』 북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M씨는 매일 의례를 치르며 다음과 같은 요소로 고인들을 다르게 감각한다고 밝혔다.

[사례 IV-9]

유품 정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유품 정리 일에 대해 알아보다가 공영장례 현장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여기 와서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모든 인간이 다 죽긴 하지만 생전 못 봐서 죄송한 마음이고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라도 예의를 다 할 수 있으니 좋고요. (공영장례 자원활동가 N씨와의 면담 중)

이렇게 생전에 알지 못했던 고인과 의례를 통해 만나는 기회가 살아있는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맺음에 대한 사유를 촉발했다는 논지의 이야기는 여러 자원활동가들에게서 나왔다.

김지은은 일본의 부계혈통적 전통 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그 혼백에 대한 의례마저 단절되는 보편적 경우와 달리, 고토부키 도야거리의 무연고사망자 시신을 위한 기념탑은 무연고사망자의 혼백이 혈연과 관계없이 언제나, 영원히 누구에 의해서라도 기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표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연결성의 가능성을 여는 장으로서 무연고사망자 및 고독사한 이들의 시신 경로를 살핀 결과다. 여기서 고인의 개별성을 담보하는 의례의 방식인지는 관건이 되지 않는다.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의례와 시신의 경로에서 개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고인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참석하는 공영장례 현장은 고인에 대한 추억을 적극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과 상호부조가 가시화되는 현상이 되기도 한다.

[사례 IV-10]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아침, ‘그리다’ 빈소가 모처럼 북적였다. 오전장으로 모시는 고인 중 한 분이 홈리스행동 활동가였고, 이 활동가에 대한 추모식을 전날 저녁 자체적으로 진행한 홈리스행동의 다른 활동가들이 서울시립승화원 고인예식 시작 전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대여섯 명만 들어

와도 꼭 차는 빈소에 스물 여명의 활동가가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 빈소 입구에 신발을 놓는 공간에 신발을 다 벗어두지 못해 빈소 밖까지 신발들이 즐비했고, 활동가 중 여럿은 빈소 밖에서 장례식 시간을 나아 했다. 활동가들은 고인예식 전에 빈소 뒷벽에 고인의 사진들과 고인들에게 동료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쓰인 종이들을 걸었다. 다른 때에는 빈 빈소를 지키는 주체였던 자원활동가들과 종교봉사를 위해 방문한 수녀님도 빈소 밖으로 나와 동료들이 빈소에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A사 Y과장님은 홈리스행동이 전날 다른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추모식을 하고 다음날 공영장례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발인제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는데 ‘그리다’ 빈소에서 다시 예식을 치르는 게 예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빈소를 한 번 차렸으면 다시 차리는 거 아니야... 발인을 두 번 하면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거야..”

고인이 이십년간 활동했던 홈리스행동이 고인의 장례주관자로 고인의 유골을 인수하기로 했다. 고인의 희망에 따라 해양장을 할 예정인데 어디가 좋을지 상임활동가가 G팀장님에게 문의했다. 이어 고인이 홈리스행동과 함께하는 활동가가 되기 이전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노숙을 하게 되기까지 겪은 어려움들, 지병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정황도 공유되었다.

[2023년 1월 27일 연구자 참여관찰 기록지에서 요약 발췌]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공영장례 빈소에서 지인의 마지막을 여러 차례 배웅해왔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홈리스행동’과 더불어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무연고사망자의 열악한 최후 처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공영장례 조례가 생기고 ‘그리다’ 빈소가 생긴 이후 장례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고인이 자신이 생전에 알고 있던 이가 아닐지라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주민협동회 간사에 의해 공지가 이루어지고, 공영장례식에 참여를 원하는 이는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날 오전 8시 50분에 동자동 사랑방 앞에 집결해 함께 차를 타고 서울시립승화원으로 이동한다. 2022년 12월 동자

동 주민의 장례식에 참여한 Q씨는 생전에 고인이 된 동자동 주민과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 생전에 알지 못했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Q씨는 장례식에 참여하는 동안 고인에 대한 편지를 마음속으로 쓰곤 한다. 생전에 알았던 고인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 오래오래 사셔라.”라고, 몰랐던 고인에 대해서는 “생전에 아는 사이였다면 이야기 나누고 밥도 함께 먹고 산책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아쉽다”고 인사한다.

공영장례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도 동자동 주민들은 주민이 사망하는 경우 한정된 자원으로나마 마을 장례를 직접 치르며 공동체의 추모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왔다. 쪽방촌 주민이 무연고사망자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사망자에 대한 추모는 공영장례 현장에서 참석 희망자들이 집결해 행하고, 매년 추석에 한 해 동안 사망한 주민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마련한다. 자체적으로 마을장례를 준비했던 전력과 추모식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은 오늘날 소멸한 마을 공동체에서의 상호부조를 상기시킨다. 돈의동 쪽방촌에서도 공영장례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주민이 사망하면 무연고사망자로 확정될 시에 직장 처리되는 것을 막고자 ‘돈의동사랑의쉼터’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상주를 맡아 주민장례를 치른 바 있다.

[사례 IV-11]

(돈을) 인제 모아가지고 이사를 간다든가 돌아갔을 때 병원비가 없다면가 그러면 장례비로 해갖고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이제 피는 안 섞였지만 형제처럼 이렇게 지나고 있는 데가 우리 사랑방 조합이에요.....중략...이제는 승화원에서 장례 치르죠. 우리 동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요. 최고 많을 때는 22명 갑니다...중략...우리 주민들도 가끔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장례 좀 해달라고.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있지 않느냐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작년에만 33명 돌아가셨어요. 제작년에는 42명 그러니까 1년에 30명 넘게 돌아가시는지만 알면 돼요. 오늘 2월이야 2월 2월 1일이란 말이야 오늘. 그니까 1월에만 해도 벌써 3명이 돌아가니까 불안해 내가..일 년에 한 번씩 여기 공원에서 추모식을 합니다. 사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사진이

없으면 이름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동네 분들이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술도 따라주고. 1년에 한 번씩 여기 공원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빼서, 사진이 없으면 이제 이름이라도 써서 거기다가 걸어놓고 음식도 다 장만하죠. (동자동 주민 F씨와의 면담 중. 강조는 연구자)

[사례 IV-12]

연구자: 예전에 마을 장례 하실 때...

H: 음식을 식도락에서 장만하고 부고를 써가지고 동네에 붙이고 그러죠.

연구자: 이게 그러면 하루 분향소는 하루 동안 차려지는 건가요

H: 시간을 정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이러면 그 시간에 맞춰가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하고 가고 그래요. 전날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길게도 못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술 한 잔 주고 조문객들한테 ...(가족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고 살 만한 집안은 여기서 죽어도 바로 데리고 가서 장을 치르고...그럴 때도 우리 다 같이 (장례식장에) 갑니다. 동료였기 때문에. 여기 살았다가 이사 간 주민들이 사망해도 연락이 여기로 사실 따로 오지. 대체적으로 쪽방상당소에서 나눠주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요. 거기 등록돼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구청에 연락이 되면 알게 되는 거고...우리 (협동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에 이 가입한 날짜 이런 거 그런 게 남아있으니까. (동자동 주민 H씨와의 면담 중. 강조는 연구자)

동자동 주민들과 홈리스행동 활동가들은 한정된 자원으로나마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의례를 치르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며 공영장례 현장은 이들의 관계맺음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공영장례 현장 자체가 기존 장사법의 한계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던 시절부터 이들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만큼 공영장례 현장 성립의 당위는 공영장례 현장에서의 이들의 애도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것이 된다.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면 고인예식이 이루어지는 동안 고인에게 술을 올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고인에게 술을 올리고 저마다 전하고자 하는 인사말

을 덧붙이기 때문이다. 일요일마다 ‘그리다’ 빈소에 나왔던 한 자원봉사자는 무연고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상호부조에 기여하는 활동에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동의동 쪽방촌 협동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공영장례 현장에 나오던 한 자원 봉사자를 쪽방촌 협동회에 ‘빼앗겼다’고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K의 활동가는 이렇게 활동의 영역을 이전한 자원봉사자의 동기와 지향에 동의를 표하고, 공영장례가 나아갈 길에 대한 전망을 논할 때 이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사례 IV-13]

동의동으로 가신 그 분이 바라는 공영장례의 역할은 장례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와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빈소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고인을 잘 모시는 것에 더해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성의 변화. 공영장례를 매개체로 해서. (K 활동가 G씨와의 면담 중)

이소윤은 제도적 연고자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머지’ 연고자들의 범주가 ‘무연고 상주’-동거기반 생활동반자, 느슨한 돌봄공동체, 지역사회 상호부조-로 구성된다고 정리한다(이소윤 2022: 118). 이렇게 법률혼 및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외의 단위들에 대한 인정과 법과 제도 차원의 인정이 공영장례 상주되기의 영역에서 가시화되어 드러났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공영장례 현장에서는 혈족이나 지인이 아닌 경우 고인의 재산이나 유류품에 대한 상속에 관심을 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혐의가 덧씌워지곤 한다. 특히 공영장례 조례 제정에 2021년에 이루어진 안양 공영장례 현장에 참여해온 자원봉사단 활동가들은 이에 대한 경험을 강한 감정과 함께 반추했다. 마지막 길에서 배웅을 하고자 찾아온 순수한 의도가 곡해당하는 데 대한 억울한 감정이었다.

K가 ‘가족 대신 장례’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를 경우 범죄 은닉에 악용되거나 재산을 노리고 장례를 치르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범죄 은닉이 불가하며, 재산 상속은 민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다고 고인의 유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김민석 2023). 장례를 치르는 동기가 고인의 재산 때문일 거라는 의심은, ‘제도적 연고자의 경계를 뒷받침하는 정상가족주의’의 발로라고 범주화될 수 있다. 이소운은 원가족을 대신해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자 했으나 상속 범죄를 의심하는 인식 때문에 장례 주관을 포기한 ‘무연고 상주’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인의 시신을 인수 받고자 하는 행위’와 ‘상속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아무런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각각 별개의 영역이자 실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심들이 강한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는 것은 장례식이 한국사회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개별적으로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친족’을 단위로 하는 가산승계의 절차의 한 단계로 자리매김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가산승계에 대한 분쟁이 법정까지 오게 될 때 현행 상속법상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의 권리(민법 1008조 3)와 ‘사회통념’을 근거로 판결된다. 여기서 가계계승자와 제사주재자, 유골 인수자는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되며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적장자 우선의 관습을 토대로 배정된다(이소운 2023: 69-74). 공영장례 현장 안팎은 이렇게 강고한 사회통념과 관습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연고자들에 의한 애도로 견고해진 공동체들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버틀러는 우리가 상실에 취약하고 이에 따라 애도라는 과제를 안게 되며 이런 조건 속에서 공동체를 세울 기반을 찾고 이와 관련된 차원의 정치적 삶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논한다. 버틀러는 전지구적인 폭력을 대면하고 ‘누가 인간으로 인정받는가? 누구의 삶이 삶으로 간주되는가? 무엇이 애도할 만한 삶이 되게 해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폭력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정치적 몸을 가진 존재이며 상실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애도를 행할 수 있게 된

다. 슬픔은 사람을 개별화시키고 탈정치화시키기보다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의존성과 윤리적 책임감의 근간이 되는 유대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복잡한 수준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느낌을 제공해준다(버틀러 2018).

김미영은 단체 K의 운동으로 구축된 무연고사망자 장례 현장을 ‘무위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자리로 바라본다(김미영 2021). ‘무위의 공동체’란 장-뤽 낭시가 제안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특정한 동질성을 상정하여 이로 수렴되는, 배타성을 띄는 집단이 아닌 외부의 존재와 상호작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실존적 공동체다. 무연고사망자들과 고인과 생전에는 생면부지였던 사람들과의 관계, 고인들의 사별자들과, 자원활동가들과, 승화원 직원들과의 관계는 독특하다. 저마다 공영장례식에 오는 이유와 목적은 다 다르다. 현장에 오는 이들 간에는 공통점도, 어떠한 동일한 지향도 없다. 이들 모두 무연고사망자로 인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무연고사망자로 인해 공영장례 현장에서는 새로운 연고가 창출된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이 드러내는 사회관계와 죽음 의례의 변화 및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무연고사망자를 기리는 공영장례는 ‘고독하고 쓸쓸한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적 재현은 공영장례에 대한 제한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공영장례 현장은 현재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 방식의 급변을 드러내고 기존 공동체 단위가 제한하는 관계를 넘어선 애도와 죽음과의 직면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 죽음관에 의하면 죽음이 발생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으로 분류되어왔다. 연구자는 ‘무연고사망자’라는 사자(死者)에 대한 인식의 맥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비정상적 죽음’을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으로 재명명하여 살펴보았다.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은 망자의 영혼이 조상으로 의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면에서 조례가 생기기 전 ‘무연고사’와 통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죽음을 위한 죽음 의례의 전통에 대한 조명 역시, 공영장례의 맥락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죽음 의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자(死者)의 세계에 통합되지 못하는 원혼이 이승의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관념은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포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을 해소하고 위험을 소거시키기 위한 죽음 의례들은 마을 공동체와 국가 단위에서 존재했으나 근대 이후 죽음 의례의 근간이 되는 영혼관이 더 이상 문화적으로 규범력을 행사하지 않게 되었고 법제도 차원에서 시신은 국가의 발전주의적 이념에 복무하는 처리와 관리의 대상으로 물질화 되었다.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은 2018년 공영장례 조례 제정 이후 수년간 정교화 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021년 이후로 전국 지자체 공영장례의 제정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이 직장 처리되는 지자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와 같은 체계성과 기반을 바탕으로 공영장례가 수행되는 지자체는 드문 실정이며 서울시의 공영장례 모델이 여러 지자체에서 참고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과 현재 현장이 지시하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영장례의 대상이 무연고사망자라는 점에 주목해 무연고사망자라는 범주가 혈연 중심적 ‘연고자’ 개념에 의해 발생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공영장례 현장과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무연고사망자로 확정되기까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무연고사망자 시신이 물질화되어 ‘경계성(liminality)’를 지닌 상태를 연장시켜왔음도 확인했다. 이러한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은 상업화된 장례식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과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 속 ‘정체’를 초래하는 대상이 된다. 또한 공영장례가 제도화되면서 지니게 되는 ‘체계’로서의 속성상 요구되는 관료제적 업무가 장례식장에 부과됨으로 인해 공영장례 운영과 관련된 절차 변경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한편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는 무연고 사망자의 지인 및 유족, 행정주체, 의전업체 간의 소통을 전담한다. 2019년부터 상담센터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K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실천해왔으며 기존의 혈연관계 중심의 장례문화를 바꾸어 새로운 장례문화를 구현하는 보편적 장례 복지 제도로서 공영장례를 위치시킨다.

전통적 혼백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무연고사에 대한 의례는 민간의 실천에 의해 시작되었고 공영장례라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사회관계의 변화로 인해 장례를 주관하는 이가 혈연관계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죽음의 국면에서마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례 수행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인식이 작동한데서 비롯된 변화다. 무엇보다도 의례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서 여전히 강고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공영장례의 성립은 증명해내고 있다. 공영장례가 기리는 무연고사망자의 개별성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약화되어 있으나 이는 곧 죽음이 비가시화된 현재 상황에서 죽음을 직시할 수 있는 장으로도 공영장례 현장을 자리매김 시키는 바다. 더구나 법적으로 연고자로 승인되지 않은 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고인을 보내게 되는, 제도적 연고자와의 위계가 확인되는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상호부조가 집약되어 펼쳐지는 장이 되기도 했다.

공영장례 제도가 무연고사망자로 통칭되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도출과 심리적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은 이 제도에 내재한 모순을 드러낸다. 기존 장사법의 한계 때문에 혈연관계의 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도가 박탈된 이들이 분투해온 현실과 경제적 사정이나 관계 단절로 시신을 위임한 연고자가 비난을 받게 되는 현실이 드러나는 문제적 현상으로서 공영장례 현장이 기술되기도 했다. 기존의 분석들이 정치하게 드러내온 문제들이 던고 있는 전제에 집중함으로써 연구자는 공영장례 현장을 다른 식으로 기술(記述)해보고자 한다. 공영장례 현장의 존립 자체가 ‘사람들 간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지되

는지에 대한 하나의 도상으로서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이다.

죽음 의례의 공간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 가족 혹은 마을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던 상장례 전통에 있어서 형식적 단절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상신을 모시는 죽음 의례의 목적에서 조상이 표상하던 종법제도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회관계를 아우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장례 비용은 혈연관계의 친족이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당위는 남은 상황이다. 여기서의 혈연이란 자연발생적인 정치적 성격을 띠기 이전의 혈연이 아닌, 조상신을 위계의 정점에 놓고 상징적으로 재편되는 사회의 관계망이다. 즉 장례에서 혈연관계란 곧 상징체계를 작동시키는 단위으로써 규범력을 지녀왔던 것이다. 또한 혈연관계 내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상정하고 고인과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 의례 내 위계질서가 규정됐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종법구조가 강제하는 윤리적 규범은 상업화된 장례 문화 속에서 직계가족의 도리가 '제 돈으로' 장사를 치르는 것이 도리라는 관념과 교차된다. 이러한 윤리적 규범이 여전히 강제성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 이 규범을 이행할 단위의 급속한 해체는 곧 무연고사 증가로 이어졌다. 종족 체계 내의 법도가 구속하지 않는 이들, 즉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죽음 의례가 성립함으로써 앞으로의 죽음 의례는 종족 이념을 대체할 새로운 이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영장례 현장은 이 새로운 이념을 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법과 제도상의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으로 귀착시키기보다 공영장례가 사회관계 변화양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바로미터이자 격전지로서 현장성을 지니고 있다고 정리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죽음 의례에 대한 기존의 이념은 기존의 체계가 승인하는 관계망 바깥에서 상호부조를 통해 상호의 취약성을 공동으로 극복하는 연대 관계를 가시화시키는, 정치적인 공영장례 지향과 겨루게 된다. 공영장례에서는 죽은 자의 넋에 인사를 건네는 행위가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 안에서 자리를 빼앗긴 존재를 환대함으로써 다시 자리를 마련해주는 상징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공영장례 현장에 한정된 연구로 국내 지자체마다

다른 공영장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21년부터 서울 이외의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의 인구구조, 공영장례 제도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다른 만큼 공영장례 현장은 일괄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역마다 다른 공영장례 현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로써 장례에서 공공성이 구축되는 과정의 실제적 문제들이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연고사’라는 범주를 파생시킨 혈연 중심의 ‘연고자’ 개념의 문제성을 뛰어넘어 현재 ‘무연고사’라고 지칭되는 죽음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집계와 연구가 추후에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강정원, 2002, “근대화와 동제의 변화-부천 먼마루 우물고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5(1): 41-71.
- 강정원·이도정, 2017, “무연고묘와 죽음권 서울과 화성, 평택, 진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민속학』 4: 7-51.
- 강정원, 2023, “지역민속학과 시민기록,” 『경기민속학』(5), 미발표
- 강정원, 2011, 『질적 연구 방법 입문』,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
방법론상담실
- 강정원, 2020, “현대화와 민속문화, 민속세계-한국종교와 민속종교를 중
심으로,” 『한국민속학』 71: 7-45.
- 계넉, 반(전경수 역), 1992[1909],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
- 기어츠, 클리퍼드(문옥표 역), 2020[1973],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 김명희, 2003, “매장에서 화장으로: 죽음의 처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21, “공통존재감과 철학실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석, 2023, 『애도하는 게 일입니다』, 경기: 지식의 숲
- 김수경, 2020, “무덤과 금기의 경계: 부산 비석문화마을의 형성과정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 김시덕, 2001,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역사민속
학』 12: 81-107
- 김시덕, 2008, “장례식장의 의례 민속과 장례 서비스,” 『실천민속학 연
구』, 12(0) :91-119.
- 김시덕, 2012, 『한국의 상례문화』, 서울: 민속원
- 김시덕, 2005, “현대 도시공간의 상장례 문화,” 『한국민속학』 41:
51-94.
- 김시덕, 2010, “현대 한국사회 전통 상례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
0(17): 435-462, 2010.

- 김시덕, 2007, “현대 한국 상례문화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40(2): 321-349.
- 김유리, 2016, “조선시대 재난상황과 사자 인식에 관한 연구: 여제의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유리, 2017, “조선시대 여묘(廬墓)의 지속과 그 근거,” 『종교학연구』 35: 21-45.
- 김재석, 2021, “인정국가의 형성과 감은의 정치,” 『비교문화연구』 27(1): 101-141
- 김재석, 2016, “중국적 통치성과 자기규율적 노동주체성의 형성,” 『비교문화연구』 22(1): 227-264
- 김재석, 2019,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의 민간(民間)의 역동성과 선행성(先行性): 중국 레이저우만과 북한 신의주 지역 비교 연구,” 『통일과 평화』 11(2): 217-268,
- 김진선, 2019,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의 실천과 그 의미: 서울시 NPO 단체의 무연고 장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루인, 2013, “규범적 슬픔, 젠더의 재생산 장례식, 트랜스젠더, 그리고 감정의 정치,” 『진보평론』 57: 235-255
- 박진옥, 2019, “무연고사망자 장례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인문사회』 21(10): 1099-1114.
- 박진옥, 2022, “비혈연 관계 지인의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버틀러, 주디스(조현순 역), 2005, 『안티고네의 주장』, 서울: 동문선.
- 버틀러, 주디스(윤조원 역), 2018, 『위태로운 삶』, 서울: 펠로소픽.
- 벨, 캐서린(류성민 역), 2007, 『의례의 이해 -의례를 보는 관점들과 의례의 차원들-』,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사.
- 송병기, 2023, 『각자도사』, 서울: 어크로스.
- 송현동, 2004, “의례와 사회 변화: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35: 313-338.
- 송현동, 2004, “한국 장례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문화인류학』

37(2): 30~113.

- 송현동, 2018, “한국 죽음문화의 변화와 그 의미-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1: 161-185
- 송현동, 2006, “현대 한국의 장례의식에 나타난 죽음관,” 『종교연구』 43: 139-166.
- 양종민, 2017, “신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재구조화 연구, 1985-201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엘리아스, 노르베르트(김수정 역), 2012, 『죽어가는 자의 고독』, 파주: 문학동네.
- 이광규, 1989, “한국문화의 종족체계와 공동체체계,” 『두산김택규박사회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37-54.
- 이도정, 2023, “계보적 조상에서 집합적 조상으로: 전라남도 진도의 조상 의례와 친족조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도정, 2015, “망자의 공간, 그 재편과 의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를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윤, 2022, “한국사회 무연고사망자의 상주되기와 장례실천을 둘러싼 가족정치,”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유, 2022, “노환의 민속문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범, 2009, “한국 전통 죽음의례의 변화 : 유교 상장례와 무속의 죽음의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6: 22-53.
- 이욱, 2001, “조선전기 원혼을 위한 제사의 변화와 그 의미,” 『종교문화연구』 3: 169-187.
- 이을상, 2003, “죽음의 성찰: 한국인의 죽음관, 영혼관, 신체관.” 『철학논총』 2(32): 437-460.
- 이창익, 2020, 『죽음을 사색하는 시간: 어떤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진다』, 서울: 인간사랑
- 임돈희, 로저 L. 자넬리, 2002, “한국 가족 변화의 의미,” 『비교민속학』

- 22: 321-336.
- 임규철, 2020,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자기결정권에서 바라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20(3): 153-186.
- 정진홍, 2011, “죽음의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생각,” 『종교문화비평』 16: 13-21.
- 정택진, 2021, 『동자동 사람들: 왜 돌봄은 계속 실패하는가』, 서울: 빨간소금.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창작과 비평사.
- 최길성, 1983, “한국 조상숭배의 연구: 연구사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15: 81-92.
- 최길성, 2010, 『한국인의 조상숭배와 효』, 서울: 민속원.
- 터너, 빅터(장용규 역), 2020[1970], 『상징의 숲1』,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3, 『죽음의례 죽음 한국사회』, 서울: 모시는 사람들.
-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서울: 민속원.
-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2015, 『죽음 의례와 문화적 기억』, 서울: 모시는 사람들.
- 히데유키, 세키네, 2001, “한국인과 일본인 영혼관의 연원에 관한 일고찰-초혼재생, 정화, 탈혼-,” 『일본문화연구』 4: 95-119.
- Buch, E. D. 2018. *Inequalities of Aging : Paradoxes of Independence In American Home Care*. New York University Press.
- Jieun Kim, 2016. “Necrosociality isolated death and unclaimed cremains in Japan”,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N.S.)22(4), 843~864.

Abstract

The Unclaimed Dead and Public Funeral Services:

A Case Study on the Public Funeral Services in
Seoul

Kim, Sujie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us, context, and implications of public funerals for unclaimed bodies, or the unclaimed dea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e city with the highest number of the unclaimed dead in the country, established the Ordinance on Public Funeral Support in 2018. For five years since then, the Seoul Public Funeral Services have been hosted at the Seoul Crematorium, serving as a potential model for other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its system and procedures. The study incorporates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field studies at the Crematorium and on in-depth interviews

with its stakeholders and visitors. The study also explores the cultural context of public funerals through literature reviews on death culture, which encompasses beliefs about and rituals for death. The study then identifies public funerals as a place that shows how individuals are connected in today's society, while pointing out a tension therein: between traditional kinship-oriented death rituals and institutions, and the call for new kinds of social relations and funeral cultures.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 belief that spirits of the deceased who have not undergone proper death rituals might pose a risk to the living, led people to perform separate rituals for the deceased who were believed to be unable to transform into ancestral spirits. Among such rituals were “Yo-je(厲祭)” and “Dong-je(洞祭)”, which were held regularly and village-wide, respectively. Here the subject of fear, namely the dead who have not undergone proper rituals, has some relevance to this study's subject—the unclaimed dead who lacked the funeral ceremonies before the support of public funerals. Public funeral services today, however, are not founded on such a fear of spirits. Instead, they have been systematized and institutionalized as a result of non-governmental and public efforts led by a belief that everyone's death ritual should be taken care of,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of the deceased.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unclaimed dead had been discussed only in the context of the disposal of their bodies. Absence of death rituals and reliance on direct cremation had remained a common problem, which was publicly recognized only recently in the 2010s, when the number of unclaimed deaths surged.

What becomes significant at the Seoul Public Funeral Services is not whether the ritual is traditionally authentic, but the fact itself that the ritual is performed as an institutionally created one. Unlike conventional funerals, the Public Funeral takes around three hours, with a ceremony

for the deceased followed by post-mortem religious rites, cremation, and scattering or enshrinement of cremains. This process often involves weekly volunteers and religious volunteers, leading to a blend of various religious characteristics at public funerals. As volunteers, who had no prior connection to the deceased, frequently take on the role of “Sang-Ju(喪主)” of the unclaimed, this also gives rise to unique characteristics inherent to public funerals.

Public funeral services are aimed towards the unclaimed dead and low-income individuals. However, these services primarily commemorate the unclaimed dead. The category of unclaimed deaths arises from a concept of kinship that is centered on legally recognized relationships and blood relations. A deceased person is determined to be an unclaimed death after a process that verifies the existence and willingness of any relatives to claim the body, follow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Consequently, the bodies of unclaimed deaths are typically kept in a morgue for at least 14 days after death, intensifying the liminality or threshold state of the deceased.

Even if there are legal or blood relatives as recognized by the Act on Funeral Services (also referred to as the Jangsa Act), the deceased can still be considered an unclaimed death if these relatives do not claim the body. People who are not recognized as relatives under the Act had to let the deceased be considered as unclaimed deaths, even if they wished to personally conduct the funeral. The normative expectation that a funeral should be conducted by the deceased one's family is strongly enforced, not just by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but also by cultural norms,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funeral systems. These norms stem from the Korean kinship structure, which is based on a clan system that has ancestral worship at its core. These norms have persisted despite modern shifts in death culture and

societal relationships, laying the foundation for concerns voiced about the expansion of public funerals. As public funerals are predicated on the need for anyone, whether they are family or not, to undergo rituals in the face of death, they embody a new value in death rituals and demonstrate the power of rituals within human interaction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Seoul have been advocating for the right of everyone to mourn and to be mourned and have suggested concrete strategi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funerals and funeral welfare, even before official regulations for public funerals were established. It has also initiated reviews and revisions to address the problems caused by the concept of kinship based on legal marriage and blood relations, as stipulated by the existing Jangsa Act. In this manner, public funerals have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death rituals for unclaimed deaths while simultaneously revealing and addressing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funeral law.

At public funerals, elements from which to discern the individuality of the deceased are often not apparent. It is rare for portrait photos to be placed in the mourning hall, and the personal histories of the deceased are usually not disclosed due to privacy concerns. Consequently, while the aim of public funerals is to commemorate unclaimed deaths as individuals, those not acquainted with the deceased before typically encounter the deceased as an embodiment of death or unclaimed death, prompting them to reflect on its concept and associated emotions. In cases where community members known to the deceased are present, public funerals can become spaces where solidarity and mutual aid among socially vulnerable people are made evident.

This way, public funerals serve as death rituals that create and

manifest beliefs that can replace traditional clan ideologies. Changing social relations have necessitated new forms of funerals, ones that are possible not only by social relations that are institutionally recognized and accepted. As such, public funerals mark a shift in death culture, illuminating and propelling these changes.

keywords : the unclaimed dead, public funeral service, death rituals, death culture

Student Number : 2021-21531